

2018

정책연구 2018-02

전북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 방안

연구진 이주연 · 조경옥 · 최지훈

Jeonbuk Institute

정책연구 2018-02

전북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 방안



연구진

연구책임 이주연 ·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 조경욱 ·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최지훈 ·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자문위원 김완진 ·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강란희 · 전라북도 아동복지 담당 주무관

연구관리 코드 : 17JU33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1. 연구개요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연구 필요성

-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가 여러 차례의 변천 과정(아동복지법 전면개정,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등)을 거쳐 왔음에도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건수 및 아동학대·재학대 사례는 지속 증가하고, 학대피아동의 보호는 사후 임시 보완책 수준으로 매우 취약함
- 아동복지법 근거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의 핵심기관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함. 기관은 아동학대 예방부터 신고접수, 사건조사, 피해아동 보호 및 사례관리, 임상심리치료까지 아동학대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처벌법 제정(2014) 이후 급증한 신고와 함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부담이 이전보다 더욱 과중되고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서비스의 비전문성, 불연속성, 파편성 및 종사자의 높은 이직률이란 핵심적인 문제와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냄
- 특히, 전북은 2016년 기준 아동학대 신고가 2006건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높고, 아동학대 사례는 1,447건으로 경기도(4,353건), 서울(2,268건) 다음으로 많음. 또 아동 천 명당 피해 아동발견율 4.66건, 재학대 비율 13.6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음. 전북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동학대 신고와 학대·재학대 사례가 급증했음에도 2006년부터 현재까지 3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담·관리하고 있음. 이로 인해 그 어느 시·도보다 전북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종사자들은 과중한 업무로 힘든 상황임
- 아동학대 발생 및 예방과 보호체계는 그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 인프라, 행정체계 및 사회 환경적 특성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음. 때문에 그 지역만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차원의 전반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지역 사회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 제시가 필요함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전북지역의 아동학대가 높은 발생배경과 현황분석, 더불어 3개 권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현행의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진단을 통해 전북지역의 차별성을 반영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및 운영 방향, 보다 실효성 있는 전북 아동학대 예방·보호체계를 위한 지원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및 정책자료 분석
 - 아동학대 관련 논문 및 연구보고서, 단행본 등 검토, 제·개정된 법률 및 조례 검토로 아동학대 관련법과 조례 분석
- 통계자료 분석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전북 통계자료 및 연도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분석
- 개별심층면접 및 의견조사
 - 개별심층면접조사 : 전북 3개 권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10명
 - 의견조사 : 아동학대 업무(신고의무, 조기발견, 사례 및 사후관리)관련 유관 기관 실무자 10명
- 전문가 자문회의 및 담당부서 의견수렴

3. 연구의 제한점

- 본 연구의 아동학대 현황 통계자료는 연도별 아동학대현황보고서 및 전북지역 3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 내부 자료로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사건들 중 학대사례로 판정되어 집계된 자료를 기반으로 재가공함. 때문에 실제 학대 받는 아동의 규모를 모두 포함하지 못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소수의 고위험 아동학대만을 나타내고 있음
- 본 연구 아동학대 통계자료는 2016년(2015년 12월)까지 집계된 자료임

II. 연구결과

1. 전북 아동학대 관련 자원현황 및 지역사회 특성

□ 전북도와 군산만 아동학대 관련조례 제정, 아동보호전문기관·쉼터는 각각 3개소

- 전라북도는 2009년 10월에 「전라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전북 14개 시·군 중 군산만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2015년 4월에 제정한 상태
- 전북 14개 시·군 지역 중 단 3개소(전주, 익산, 남원)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어 있음(2018년 2월 군산에 분소 개소예정). 이에 각 아동보호전문기관은 4~5곳의 관할지역을 가지고 있음. 전북의 모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굿네이버스가 운영
- 그 외 가정위탁지원센터, 16개의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14개, 자립지원시설과 보호치료시설 각 1개), 지역아동센터 2016년 말 기준 4,104개소가 운영 중이며, 드림스타트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각 시군에 있음. 전북의 학대전담경찰은 2017년 12월 기준 총 19명임

□ 아동 권리지수 및 삶의 질 최하위, 1인당 전북지역내총생산과 재정자립도 하위권

- 2016년 아동권리 지수를 16개 시·도별로 살펴본 결과 전라북도 아동권리 지수는 93.7로 최하위이며, 하위영역별(참정권, 발달권, 생존권, 보호권)로도 평균 이하로 나타남.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 삶의 질 연구 결과 전라북도 아동의 삶의 질 지수 또한 83.71점으로 16개 시·도 중 최하위이며 2012년부터 2015년 3년 기간 동안도 최하위에 머물러 있음. 아동권리 지수 및 삶의 질은 아동학대 발생률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임
- 1인당 전북지역내총생산은 줄곧 전국평균보다 낮았으며, 2016년에는 25,569(천원)로 16개 시도 중 12위, 경제적 상태가 낮은 지역에 속함. 전북 재정자립도는 2016년(결산) 기준 30.89%로 가장 낮음

□ 전북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상대적으로 높고 한부모·조손가족 및 이혼건수 지속증가

- 2016년 기준 전국평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3.2%이나 전북은 2.1%p가 더 높은 5.3%(99,708명)로 지역별 인구 대비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이 16개 시·도 중 전북이 가장 높음. 한부모가구 및 조손가구 모두 전년 대비 각각 1.1%와 2.9% 증가하였고, 이혼건수도 전년대비 전북은 6.0% 증가함. 전북의 가족관계만족도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불만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2. 전북 아동학대 발생현황 및 특성

□ 전북 아동학대는 1,446건 전국 세 번째, “중복학대 > 정서학대 > 방임” 순

- 2016년 기준 전국 아동학대는 총 18,700건 발생. 경기도 4,353건, 서울 2,268건, 전북 1,446건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함. 전북 아동학대 유형은 중복학대, 정서학대 및 방임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전북의 중부권은 중복학대 비율이 높고, 서부권은 신체/정서학대, 동부권은 방임 비율이 높음
-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총 2,006건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높고 이중 41.8%는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접수함. 신고건수의 24.8%는 신고의무자, 75.2%는 비신고의무자가 신고함

□ 피해아동발견율 4.66% 전국에서 가장 높고, 방임은 연령 낮을수록 신체/정서학대는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

- 2016년 전국 피해아동 발견율 2.15%, 전북 4.66%로 가장 높음. 학대 피해 아동 중 만 13~15세가 23.6%로 가장 많고, 7세 미만 아동도 24.7%임. 방임은 연령이 낮을수록 증가, 신체/정서/성 학대는 연령 높을수록 증가
- 학대 가해자의 83.1%가 부모이며 40대 37.8% 가장 많고, 30대(34.5%), 50대(13.5%) 순임. 한편 동부의 경우 50대(22.6%)와 60대(9.6%)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음. 아동학대 발생빈도는 거의 매일 발생이 32.7%로 가장 높음
- 가해자 직업으로 무직이 34.4%로 가장 많고, 단순노무직(16.6%), 서비스

및 판매직(13.8%) 순임. 가해자의 아동학대 원인은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38.2%로 가장 높고 스트레스 및 고립(15.8%), 부부 및 가족갈등(13.9%) 순으로 나타남

□ 피해아동 최종조치 원가정 보호 70%, 가해자 최종조치 지속관찰 71.6%

- 전북 피해아동 초기조치로 원가정보호 75.7%(1,094건), 분리보호 24.3%로 전국보다 분리보호 비율이 높음. 이는 피해아동 발견 시 분리해야할 정도로 아동학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피해아동 최종조치는 원가정보호 69.9%로 전국평균(72.6%)보다 낮고 가정복귀 5.5%로 전국평균(7.2%)보다 낮음
- 가해자 최종조치는 지속관찰이 71.6% 전국평균(62.7%)보다 높고 고소·고발 조치 또한 22.9%로 전국 평균(32.2%)보다 낮음

3. 전북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진단

□ 개별심층면접 및 의견조사 개요

- 전북지역의 현행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진단을 위해 3개 권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대상(총 10명) 개인심층면접 조사 및 아동학대 업무(신고의무, 조기발견, 사례 및 사후관리) 관련 유관 기관 실무자 대상(총 10명) 의견조사를 실시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 및 인력충원과 유관기관 연계를 위한 컨트롤타워 필요

- 전북 3개 권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대상 개별심층면접조사 결과,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부모 대상 부모교육의 어려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미신고 시 처벌 강화, 특례법 시행 이후 행정처기와 서류 작업 많아짐, 학대피해아동의 일시보호를 위한 시설(전용쉼터) 부족과 장애아동 시설 부재, 일반 일시보호 및 양육시설 내 학대피해아동의 문제행동 해결을 위한 전문상담·임상치료사 부재, 각 기관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기준 부재로 업무의 혼선 발생, 종결되지 않고 지속 누적되는 사례건수 및 업무의 과부화, 거부적인 가해자에 대한 상담·교육의 어려움, 지리적

접근성 한계로 인한 학대사례관리와 임상심리치료의 어려움, 가족 기능과 역량강화 중심의 서비스 제공 확대 등이 필요함

□ 학대·훈육 범위의 모호함, 기관 간 정보공유 한계로 반복적 업무 시행 등 문제

- 신고의무자 및 유관기관 종사자 대상 의견조사 결과,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교육에 있어 실효성과 체계가 없다는 문제, 아동학대의 명확한 개념이 알려져 있지 않고, 신고의무자의 신분과 직군의 익명성 보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유관기관간의 연계·협조에 있어 그 역할·범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 유관기관의 의무·강제성의 부재로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점 등이 나타남

Ⅲ. 전북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1. 주요 결과에 따른 논의

□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출처 전환 필요

- 가장 근본적으로 전라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아동학대 관련 사업 운영 예산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될 필요 있음. 아동학대 관련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지만 현재까지 예산재원은 보건복지부 예산(일반회계)이 아닌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무부)과 복권기금(기획재정부)에서 충당하고 있음
- 이에 아동학대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구조가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로 전환되어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효율적인 재정 운용 및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며, 나아가 심각해지는 아동학대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임

□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관련 물적·인적 인프라 부족

- 과도한 업무량 대비 부족한 인력으로 복잡하고 전문적이며 시급성을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다보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들은 야근이 잦고 심리적·신체적 과도한 스트레스와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이직률이 높음. 이러한 이직률로 인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처리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지고 있음
- 또한 현장조사 시 응급과 임시조치로 가해자와 학대피해아동을 분리하여 피해아동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일시보호시설(전용쉼터)도 부족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뿐 만 아니라 기관 내 1명씩 배치되어 있는 임상심리치료사의 업무도 과중하여 피해아동 및 가해자에 대한 임상심리치료에 대해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개입이 힘든 상황임. 이에 전라북도의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운영하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추가적인 증설 및 인력 충원이 필수적임. 지리적 접근

성, 아동인구의 수 및 아동학대 신고와 사례건수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수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전문 인력의 충원이 무엇보다 가장 시급함

□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신속 대응의 취약

-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의 부재로 아동학대 판정에 대한 관점이 기관마다 다르며, 아동학대 업무관련 협력 기관간의 역할 및 범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한계로 유관기관간의 아동학대 업무 처리 방법과 범위, 역할이 제 각각이어서 사건 처리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재지 이외 접근성이 취약한 관할지역 내, 수면 아래에 잠재되어 있는 아동학대 사례를 수면 위로 끌어 올릴 수 있는 예방 및 조기발견 체계와 신고의무자 대상의 아동학대 관련 의무교육이 내실화 되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더불어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일시보호시설과 정원 확대 및 아동학대 협력기관과의 아동학대 개념, 각 기관의 업무 역할과 범위 등을 협의 조정 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서비스의 제약

- 학대피해아동 및 가해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리적 접근성 한계에 대한 제약들을 제거하고, 개인 중심에서 가족의 기능과 역량강화 중심의 서비스로 방향이 전환되어야 할 것임
- 피해아동과 가해자의 최종 사례관리의 목적은 원가정 복귀 후 원활한 가족기능으로 가정 내에서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이라 할 때, 가족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 가족의 기능과 역량 강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 인력 충원이 필요함. 무엇보다 가족기능과 역량을 강화시키고 다각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인프라 또한 갖춰져야 하며 이 기관들 간의 연계·협조도 필요함

□ 아동학대 관련 기관간의 연계·협력체계 강화 및 조정기능 필요

- 전라북도의 아동학대 예방, 위험군 발굴, 조기발견과 함께 아동학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가해자의 아동학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이외 지역사회 내 다양한 유관 기관간의 연계·협력체계의 구축 및 강화가 필요함
- 아동학대 발생 시 신고접수 후 초기조치 및 신속한 보호, 서비스 제공이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개입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함. 아동보호전문기관 뿐만 아니라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일시보호시설, 아동양육시설 및 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등 포함한 지역사회 유관기관간의 통합 지원체계의 구축도 필요함. 무엇보다 행정기관 특히 도와 시군구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거점기능을 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필요함

□ 아동학대 인식개선 제고

-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며 재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과 부모교육이라는 주장이 강함
- 가해자 특성 중 아동학대 원인으로 가장 큰 요인이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 사회경제적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와 고립을 경험하는 경우, 부부갈등으로 나타남. 즉 실업, 무직 등 낮은 경제적 수준과 이혼 및 이혼위기, 재혼, 한부모, 부부불화 등 가족 구조상의 문제를 지닌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 높은 고위군 가정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부모교육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단순한 부모교육에서 더 나아가 상담과 심리치료 등 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2. 전라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 세부 추진 사업

정책방향	세부 사업	추진기관
아동학대 조기발견 체계 강화	부모교육 실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북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학대 신고 및 발생이 저조한 지역 중심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미신고시 처벌 강화	시·군·구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 증설 및 인력 충원	전라북도
	요보호 아동(학대피해아동 등)을 위한 일시보호 전담시설 전환 및 확충	전라북도
	권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내에 임상심리치료사 추가 배치	전라북도
아동학대 서비스 전문성 강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소진예방 프로그램	전라북도
	이동식 사례·사후관리 및 심리·상담치료 버스 도입	전라북도 전북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학대전담 경찰관 파견 및 상주	전라북도, 전북경찰청
	상담·심리치료 및 수감명령 교육·상담 예산 보조지원	전라북도, 전주지방법원
통합관리지원 체계 구축	거점기능 전담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전라북도
	공공중심의 아동보호서비스 컨트롤타워 기능 마련 및 강화	전라북도

■ 목 차 | Contents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내용	3
제2절 연구방법 및 절차	6
제3절 연구의 제한점	8
제2장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11
제1절 아동학대의 이해	11
가.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11
나. 아동학대의 발생원인	13
제2절 아동학대 관련법 및 최근 정책동향	16
가. 아동학대 관련법	16
나. 아동학대 관련 정책동향	19
제3절 아동학대 사건 처리과정 및 협력기관	23
가. 아동학대 사건 처리과정	23
나. 아동학대 관련 협력기관	27
제4절 국내외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사례분석	30
가. 국외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30
나. 국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40
제3장 전북 아동학대 관련 자원현황 및 지역사회 특성	49
제1절 전북 아동학대 관련 자원 현황	49
가. 전북 시군별 아동학대 관련 조례	49
나. 전북의 아동학대 관련 예산 및 정책 현황	51
다. 전북지역 아동학대 관련 시설 현황	53

제2절 전북 아동학대 관련 지역사회 특성	62
가. 전북 시군별 아동현황	62
나. 전북의 아동권리 수준	64
다. 전북의 경제적 특성	69
라. 전북의 복지환경적 특성	73
마. 전북의 가족환경적 특성	74
제3절 소결	81
제4장 전북 아동학대 현황 및 예방·보호체계 진단	89
제1절 아동학대 발생현황 및 특성	89
가. 전북지역 아동학대 발생현황	89
나. 전북지역 아동학대 관련 특성	102
제2절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진단	128
가. 아동학대 예방·보호체계 진단: 아동보호전문기관 대상	128
나. 아동학대 예방·보호체계 진단: 아동학대 관련 유관기관 실무자 대상	148
제3절 소결	156
제5장 전북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방안	163
제1절 주요결과 및 논의	163
제2절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및 세부사업	170
참고문헌	203

표목차 | Contents

〈표 2-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사건 처리과정	23
〈표 2-2〉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를 위한 협력기관 및 지원내용	29
〈표 3-1〉 전북 시군별 아동학대 관련 조례 현황	50
〈표 3-2〉 전북 아동학대 관련 사업 예산	51
〈표 3-3〉 전국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53
〈표 3-4〉 전북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55
〈표 3-5〉 전북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업무량	56
〈표 3-6〉 전국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현황	57
〈표 3-7〉 전북 아동복지시설 현황	58
〈표 3-8〉 전북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현황(2016년 12월말 기준)	59
〈표 3-9〉 드림스타트 사업 개요	59
〈표 3-10〉 전국 드림스타트 설치 현황	60
〈표 3-11〉 전국 학대전담경찰과 배치 현황(2017년 12월 기준)	60
〈표 3-12〉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현황	61
〈표 3-13〉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현황	61
〈표 3-14〉 전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현황	61
〈표 3-15〉 전북 지역별 아동인구	62
〈표 3-16〉 전국과 전북의 연도별 아동인구 및 추이	63
〈표 3-17〉 전북 연도별 아동학대 발생 관련 추이	64
〈표 3-18〉 시도별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 순위	67
〈표 3-19〉 시도별 인구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73
〈표 3-20〉 시도별 우선돌봄 차상위수급자 수	74
〈표 3-21〉 전북 한부모 및 조손가구 현황	75
〈표 3-22〉 전북 미성년자녀 유무별 이혼건수 현황	77
〈표 4-1〉 전국 시도별 아동학대 발생 현황(2016년)	89

〈표 4-2〉 아동학대 유형별 발생 현황(2016년)	90
〈표 4-3〉 전북 시군별 아동학대 사례유형 현황(2016년)	91
〈표 4-4〉 전북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유형(2008~2016년)	93
〈표 4-5〉 전북 시군별 신고 건수(2016년)	94
〈표 4-6〉 전국 및 전북의 신고자 유형별 신고 건수 비교(2016년)	95
〈표 4-7〉 전북 시군별 신고의무자유형(2016년)	96
〈표 4-8〉 전북 시군별 비신고의무자유형(2016년)	98
〈표 4-9〉 전국 및 전북 권역별 신고접수 경로(2016년)	98
〈표 4-10〉 전북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판정 결과(2011~2016년)	100
〈표 4-11〉 전북 시군별 아동학대 사례판정 결과(2016년)	101
〈표 4-12〉 전국 지역별 피해아동 발견율(2016년)	103
〈표 4-13〉 전국 및 전북의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2016년)	104
〈표 4-14〉 전국 및 전북의 학대 피해아동의 가족유형(2016년)	106
〈표 4-15〉 전국 및 전북의 아동학대 발생장소(2016년)	107
〈표 4-16〉 전국 및 전북의 학대 피해아동과 행위자와의 관계(2016년)	108
〈표 4-17〉 전국 및 전북의 아동학대 발생빈도(2016년)	109
〈표 4-18〉 전국 및 전북의 학대 행위자의 연령(2016년)	110
〈표 4-19〉 전국 및 전북의 학대 행위자의 직업유형(2016년)	111
〈표 4-20〉 전국 및 전북의 학대 행위자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유무(2016년)	112
〈표 4-21〉 전국 및 전북의 학대 행위자의 개인특성(2016년)	113
〈표 4-22〉 전국 및 전북의 피해아동 초기조치 결과(2016년)	114
〈표 4-23〉 전국 및 전북의 피해아동 최종 조치결과(2016년)	115
〈표 4-24〉 전국 및 전북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 결과(2016년)	115
〈표 4-25〉 전국 및 전북의 학대행위자 고소·고발·사건처리 조치건수(2016년)	116
〈표 4-26〉 전국 지역별 재학대 비율(2016년)	117
〈표 4-27〉 전북 연도별 재학대 비율(2010~2016년)	118
〈표 4-28〉 전국 및 전북의 재학대 사례의 학대유형(2016년)	119
〈표 4-29〉 전국 및 전북의 재학대 피해아동의 연령(2016년)	120
〈표 4-30〉 전국 및 전북의 재학대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와의 관계(2016년)	121
〈표 4-31〉 전국 및 전북의 재학대 사례 발생장소(2016년)	122
〈표 4-32〉 전국 및 전북의 재학대 가해자의 직업유형(2016년)	123

〈표 4-33〉 전국 및 전북의 재학대 가해자의 소득수준(2016년)	124
〈표 4-34〉 전국 및 전북의 재학대 가해자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유무(2016년)	124
〈표 4-35〉 전국 및 전북의 재학대 행위자의 특성(2016년)	125
〈표 4-36〉 전국 및 전북의 재학대 발생시기(2016년)	126
〈표 4-37〉 전국 및 전북의 재학대 피해아동 조치결과(2016년)	127
〈표 4-38〉 전국 및 전북의 재학대 행위자 조치결과(2016년)	127
〈표 4-39〉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대상 심층면접 조사내용	129
〈표 4-40〉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일반적 현황	130
〈표 4-41〉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대상 면접내용 주요결과	131
〈표 4-42〉 아동학대 관련 유관기관 실무자 대상 면접조사 내용	150
〈표 4-43〉 아동학대 관련 유관기관 실무자의 일반적 특성	150
〈표 4-44〉 아동학대 관련 유관기관 실무자 대상 면접조사 주요결과	151
〈표 5-1〉 전라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 방안 제시	170

그림목차 | Contents

〈그림 1-1〉 연구 추진 절차	7
〈그림 2-1〉 아동학대 근절시스템 추진도	21
〈그림 2-2〉 처벌법 이후 변경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사건 처리과정	24
〈그림 2-3〉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협력기관	28
〈그림 2-4〉 일본의 아동학대 관련 법률의 변천	31
〈그림 2-5〉 일본의 아동학대보호체계	31
〈그림 2-6〉 일본 시정촌과 아동상담소의 지원활동 체계	32
〈그림 2-7〉 아동상담소 규모별 조직 구성	34
〈그림 2-8〉 일본 동경도 아동가정지원 네트워크	35
〈그림 2-9〉 미국의 전통적 아동보호체제와 차등적 대응체제의 비교	37
〈그림 2-10〉 미국의 아동학대 대응시스템 모형	38
〈그림 2-11〉 미국의 지역사회기반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의 목적	39
〈그림 2-12〉 미국의 지역사회기반 단계별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39
〈그림 2-13〉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의 주요사업	41
〈그림 2-14〉 부산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조직도	43
〈그림 2-15〉 부산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흐름	43
〈그림 2-16〉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조직	45
〈그림 3-1〉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이용현황	59
〈그림 3-2〉 시도별 아동권리 지수 및 전라북도 영역별 아동권리 지수	65
〈그림 3-3〉 시도별 아동권리지수와 지자체 재정자립도·사회복지예산비율 간의 상관	66
〈그림 3-4〉 시도별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 및 전라북도 영역별 아동 삶의 질 지수	67
〈그림 3-5〉 피해아동 발견율(아동인구 천명당)과 아동 삶의 질 간의 관계	68
〈그림 3-6〉 피해아동 발견율(아동인구 천명당)과 아동권리 지수 간의 관계	68
〈그림 3-7〉 전북 연도별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추이	69
〈그림 3-8〉 전북 2016년 지역소득 현황	70
〈그림 3-9〉 시도별 2016년 재정자립도 현황	70

<그림 3-10> 전북 시군별 2016년 재정자립도 현황	71
<그림 3-11> 시도별 경제활동참가율	72
<그림 3-12> 시도별 실업률	72
<그림 3-13> 시도별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72
<그림 3-14> 전국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역별 분포	73
<그림 3-15> 전북 한부모 및 조손가구 현황	76
<그림 3-16> 전북 한부모가족지원법 수급자 추이	76
<그림 3-17> 전북 시군별 한부모가족지원법 수급자 현황	77
<그림 3-18> 전북 연도별 미성년자녀 부모의 이혼건수	78
<그림 3-19> 전북 가족관계 만족도	79
<그림 3-20> 전북 소득구간별 전반적 가족관계 만족도	79
<그림 3-21> 전북 상황별 스트레스 정도	80
<그림 3-22> 전북 가정폭력 상담건수	80
<그림 4-1> 전북 아동학대 연도별 유형별 건수(2008~2016년)	90
<그림 4-2> 시도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2016년)	92
<그림 4-3> 전북 아동학대 신고접수 증가 추이(2008~2016년)	93
<그림 4-4>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2016년)	95
<그림 4-5> 시도별 아동학대 의심사례 1건당 현장조사 실시 횟수(2016년)	99
<그림 4-6> 시도별 아동학대 사례판단 결과(2016년)	101
<그림 4-7> 시도별 아동학대 사례관리 종결 현황(2016년)	102
<그림 4-8> 전북 피해아동 연령별 아동학대 유형(2016년)	105
<그림 4-9> 전국 및 전북의 아동학대 발생빈도(2016년)	109
<그림 4-10> 전국 및 전북의 학대 행위자 직업유형(2016년)	111
<그림 4-11> 전국 및 전북의 학대 행위자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유무(2016년)	112
<그림 4-12> 전국 및 전북의 학대 행위자 최종조치 결과(2016년)	116
<그림 4-13> 연도별 재학대 사례 건수 및 비율(2010~2016년)	118
<그림 5-1> 3개 권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기반 파견근무(안)	179
<그림 5-2>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안)	180
<그림 5-3> 아동학대 단계에 따라 연계협력이 필요한 유관기관	200
<그림 5-4> 지역자원 연계·협력체계 구축	200

장

서론

-
- 제 1 절 연구 필요성 및 내용
 - 제 2 절 연구방법 및 절차
 - 제 3 절 연구의 제한점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내용

가.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지금까지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체계가 여러 차례의 변천 과정(아동복지법 전면개정,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등)을 거쳐 왔으나, 여전히 아동학대 사례 및 재학대 사례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피해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은 사후 임시 보완책 수준으로 매우 취약함
-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 관련 업무수행 핵심기관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함. 이 기관은 아동학대 예방부터 신고접수, 사건조사, 피해아동 보호 및 사례관리, 임상심리치료까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체계 전반에 대한 업무를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처벌법 제정(2014) 이후 매년 신고건수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부담이 이전보다 더욱 과중되고 있음. 그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관련 서비스의 비전문성, 불연속성 및 높은 이직률이란 핵심적인 문제와 공급자 중심의 아동보호서비스체계가 갖는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2015년 아동학대 업무가 국가사무로 전환되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과 상담원 증원이 이뤄졌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전국 29,673건의 신고 건수가 2015년에 비해 54.5%정도가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는 마비수준으로 체계적인 사례관리와 피해아동 보호가 어려운 상황임. 또한 매우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우수인력의 높은 이직률과 함께 아동학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축적되기 어려운 상황임
 - 아동학대처벌법 제정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법체계의 강조로 현장 조사의 기능은 커졌으나 피해아동, 행위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과 치료 등의 가족보전과 재결합을 위한 기능은 위축될 위험에 있음

- 특히, 전라북도는 2016년 기준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06건으로 전국에서 4 번째로 높고,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1,447건으로 전국에서 경기도(4,353건), 서울(2,268건) 다음으로 많음. 또 아동 천 명당 피해 아동발견율 4.66건, 재학대 비율 13.6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음. 이와 같이 전라북도는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동학대 신고와 학대 및 재학대 사례 건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2006년부터 현재까지 3개 권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이 타 시도와 동일한 예산과 인력으로 전라북도의 아동학대 사례를 전담·관리하고 있음. 이로 인해 그 어느 지역보다 전북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들은 과중한 업무로 힘든 상황임
- 아동학대 발생원인 및 그에 따른 예방과 보호체계는 그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 인프라, 행정체계 및 사회 환경적 특성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지역만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차원의 전반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지역 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전북지역의 아동학대가 높은 발생배경과 현황분석과 더불어 3개 권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현행의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에 대한 실태 파악과 문제점 진단을 통해 전북 지역적 차별성을 반영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및 운영 방향, 보다 실효성 있는 전라북도 아동학대 예방·보호체계를 위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나. 연구 내용

- 본 연구는 전북지역의 아동학대가 높은 발생배경과 현황,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의 실태 파악과 문제점 진단을 통해 지역적 차별성을 반영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및 운영 방향과 보다 실효성 있는 전라북도 아동학대 예방·보호체계를 위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내용과 방법 및 연구절차를 제시함
- 제2장에서는 아동학대에 관한 아동학대의 개념·원인·유형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아동학대 관련 법률적·제도적·정책적 및 아동학대 대응 처리 절차를 살펴보고, 국내외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관련 사례분석 및 시사점을 제시함
- 제3장에서는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전북지역만의 차별적인 내용을 분석하고자 자원현황(예산 및 정책현황, 시설현황)과 아동학대 발생 관련 지역 사회·환경적 특성을 살펴봄
- 제4장에서는 현행의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실태 파악과 문제점·한계점 등의 진단을 위해 연도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및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전북자료를 중심으로 전라북도의 아동학대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분석과 더불어 전라북도 내 3개 권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와 신고의무자 직군의 종사자 및 아동학대 관련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관계에 있는 유관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함
- 마지막 제5장에서는 3장의 전북 지역적 차별적 내용분석과 4장의 현행의 전라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실태 및 문제점과 한계점 분석을 토대로 전라북도형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및 운영 개선 방안을 제시함

제 2 절 연구방법 및 절차

가.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및 행정자료 분석

- 아동학대 관련 논문 및 연구보고서, 단행본 등의 검토로 아동학대 개념, 유형, 발생원인, 사후결과 등의 내용 고찰
- 제·개정된 법률 및 조례 검토로 아동학대 관련법과 조례 분석
- 보건복지부 및 전북도, 시·군의 행정자료 검토로 아동학대 정책동향과 제도·정책 현황, 도내지역의 아동학대 관련 인프라 현황 파악

(2) 통계자료 분석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된 통계자료 중 전북지역 통계자료 및 연도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분석으로 전북지역의 아동학대 관련 현황 분석

(3) 개별심층면접 및 의견조사

- 개별심층면접조사
 - 조사대상 : 전북 3개 권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 10명
 - 조사내용 : 전북의 아동학대 경향·유형·높은 발생원인 및 지역적 특성, 현행의 아동보호 예방 및 보호체계의 실태,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등
- 의견조사
 - 조사대상 : 아동학대 업무(신고의무, 조기발견, 사례 및 사후관리)관련 유관 기관 실무자 10명
 - 조사내용 : 신고의무자 직군을 대상으로는 아동학대 관련 직·간접적인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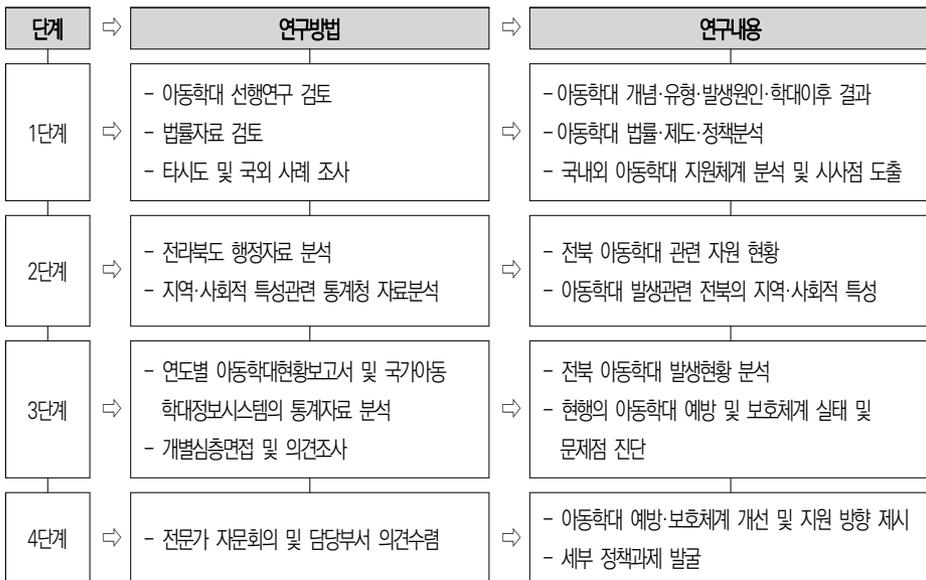
아동학대 예방교육 경험 및 문제점,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과 기능 수행 시 문제점과 필요 지원 사항 등을 조사했고, 유관기관 실무자 대상으로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연계·협력 시 어려운 점, 문제점, 개선되어야 할 사항 및 아동학대 인식개선정도와 아동학대 예방·조기발견·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안 등

(4) 전문가 자문회의 및 담당부서 의견수렴

-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방향, 연구범위와 방법 및 연구결과에 따른 타당성, 정책 제언의 효과성 등 연구관련 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한 자문
- 전북도 담당부서 의견수렴: 연구방향과 내용 및 제안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견수렴

나. 연구 추진 절차

- 위와 같은 연구방법에 따라 연구 추진 절차를 도식화 하여 단계별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음



(그림1-1) 연구 추진 절차

제 3 절 연구의 제한점

- 본 연구의 아동학대 관련 현황 통계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간한 연도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및 전북지역 3개 권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사건들 중 학대사례로 판정되어 집계된 자료를 기반으로 재가공하였음. 때문에 본 연구의 아동학대 현황에는 실제로 학대받는 다수의 아동을 포함하지 못했고,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은 많은 아동학대 규모가 아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소수의 고위험 아동학대만을 나타내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 그리고 본 연구의 아동학대 통계자료는 2016년(2015년 12월)까지 집계된 통계자료로 2017년 이후의 통계자료는 담고 있지 않음
- 전라북도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 2018년 2월에 군산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분소를 개소할 예정에 있으나, 본 연구의 수행기간의 제한으로 그에 관련된 진행 내용과 통계 현황은 반영하지 못하였음

2

장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Jeonbuk Institute

-
- 제 1 절 아동학대의 이해
 - 제 2 절 아동학대 관련법 및 최근 정책동향
 - 제 3 절 아동학대 사건처리과정 및 협력기관
 - 제 4 절 국내·외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사례분석

제 2 장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 본 장에서는 아동학대의 이해를 위해 아동학대 개념·유형·발생원인 및 아동학대 이후의 후유증에 대해 살펴보고, 아동학대 관련법과 지원정책의 동향 분석 및 현재 추진되고 있는 아동학대 전달체계, 학대사건 처리과정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서비스 등을 살펴보고자 함
- 다음으로 국내외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지원 정책 관련 선진 사례들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제 1 절 아동학대의 이해

가. 아동학대 개념과 유형

1) 아동학대 개념

-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만 18세 미만의 아이)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

2) 아동학대 유형*

- (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학대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금지 행위 명시됨
-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는 아동학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면서 외관으로 학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음. 즉, 신체적 학대란 보호자 및 성인이 아동에게 의도적으로 행하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http://www.korea1391.go.kr/new/page/type.php>) 내용 참고로 작성함

직접적 혹은 도구나 신체에 유해한 물질을 가해하는 행위, 또 힘을 이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등이 있음. 구체적으로인 손, 발로 때리거나 짓밟기, 꼬집고 물어뜯기, 조르고 비틀거나 손톱으로 핏줄기 등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하는 행위와 도구를 사용하여 때리거나 흉기나 뾰족한 도구로 몸을 가해하는 행위, 성인의 힘으로 아동을 강하게 흔들거나, 신체 일부 묶기 혹은 벽에 밀어붙이거나 떠밀기, 내던지기 등과 화학물질이나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처를 입히는 행동 등이 있음

- 정서적 학대(Emotional Abuses)는 아동학대 유형 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으로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아동학대로 사례판정 내리기도 어려운 유형. 아동학대 사례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피해정도 등을 파악하기 어렵기에 보다 중요하게 다뤄야함. 보호자 혹은 성인이 아동에게 폭언과 욕설, 인격 및 감정 무시나 모욕하는 행위 및 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비교하여 차별·편애·왕따 시키는 모든 행위임. 구체적으로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경멸적인 언어폭력에서부터 잠 못 자게 하기, 벌거벗겨 내쫓기, 가정폭력 목격, 시설 등에 버리겠다는 위협,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및 미성년자출입금지 업소에 데리고 다니는 행위, 정서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감금, 악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등) 등이 있음
- 성적 학대(Sexual Abuse)는 보호자 및 성인이 아동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행에서부터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모든 성적 행위임. 구체적으로 아동 옷을 벗겨서 관찰하는 관음행위, 성관계 장면 및 나체·성기·자위행위·음란물 노출 및 강요, 아동 대상으로 구강·성기·항문추행 및 기타 신체부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아동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는 행위, 성교(성기삽입, 구강성교, 항문성교 등) 하는 행위, 성매매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이 있음
- 방임(Neglect)은 보호자가 아동을 버리거나 물리적·교육적·의료적으로 방치하는 것으로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것

에서부터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학교에 보내지 않고 무단결석 시키는 행위, 의료적 처치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 등 임. 종류별로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면, 물리적 방임은 의식주 제공하지 않기,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 방치하기, 출생신고 하지 않는 행위, 아동을 가정에 두고 가출하는 경우와 시설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및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등이 있음. 교육적 방임은 학교 보내지 않기 등의 행위를 말하며, 의료적 방임은 필요한 의료적 치료를 하지 않는 행위를 말함

- 중복학대는 한 가지가 아닌 두 가지이상의 학대 유형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임. 중복학대 유형은 단일 유형의 학대보다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고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복합되어 나타나는 유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며 다음으로 정서적 학대와 방임이 복합적으로 나타남. 중복학대의 경우는 학대 후유증이 더욱 심각하고 그 피해 또한 더 큼

나. 아동학대 발생원인*

- 아동학대 발생원인 설명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 발생 원인을 부모요인, 아동요인, 가족과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음. 아동학대를 발생시키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① 부모요인

- 80%이상이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아동학대임. 부모의 낮은 연령,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부족, 양육스트레스, 과거의 학대받은 경험, 심리·성격적 문제 등(이현기, 2005; 이재연·한지숙, 2003)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함. 즉 부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미성숙하면서, 자녀양육에 대한 경험의 부족이나 지식의 부족으로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받아 아동을 학대할 수 있음.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내용과 김미숙 외(2016)년 보고서를 참고로 작성함

- 또한, 음주와 부부 불화 및 폭력, 가구소득이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고(오승환, 2011), 부부간의 폭력이 심할수록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학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배화옥, 2015). 그 외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 정서적 욕구불만, 사회적 고립, 알코올 중독·약물 중독, 빈번한 가족의 위기상황, 잘못된 자녀관 및 양육·교육관, 원치 않는 아동, 부모의 불안과 우울증 및 기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아동학대가 발생 함

② 아동요인

- 아동의 경우 건강상태나 장애가 있는 경우 혹은 기질적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돌봄을 필요로 경우 부모는 양육 스트레스 및 정신적·신체적 에너지 소진으로 아동학대를 할 가능성이 높음. 즉 미숙아 혹은 기형아, 만성 혹은 급성질환을 가진 아동, 신체·정신·기질적으로 특이하거나 장애아동, 운동 및 언어 발달이 늦은 아동, 심하게 보채거나 밤에 잘 자지 않는 아동, 음식을 잘 먹지 않으려는 아동 등에게 부모의 학대 가능성이 높아짐
- 또한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학대당할 확률이 높고, 학대의 재발도 높은 경향이 있음(보건복지부·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 이외 아동의 고집스런 성격, 무반응, 겁 많음, 적대적인 행위, 충동적인 특성, 폭력적 행동, 주의산만, 거짓말 등은 부모의 신체적·심리적 부담감을 가중시키고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아동을 학대할 가능성이 높음. 반대로 피해 아동에 큰 특성이 없는 경우에도 학대가 일어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음(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③ 가족적 요인

- 먼저는 가족 구조 상 문제(미성년가족, 한부모가족, 이혼·재혼가족 등)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빈곤한 가족일 경우 가족원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스트레스 상황이 유발되어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짐(오승환, 2001; 2003). 또한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사회적 지지체계가 결여되어 있

고, 체벌에 대해 허용적인 인식, 자녀에 대한 소유 의식 등이 강할 경우 아동에 대한 학대할 가능성이 높아짐

④ 사회·경제적 요인

- 폭력과 학대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 정도와 체벌·훈육에 대한 문화 등이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며(김미숙 외, 2016), 아동빈곤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조이혼율, 경제적 불평등과도 관련 있음(김선숙·유민상, 2012). 또한 지역사회에 자본이 많을수록 아동학대 발생률이 낮아지며 환경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빈곤가정이 밀집된 지역일수록 아동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김광혁·김정석, 2012).

제 2 절 아동학대 관련법 및 최근 정책동향

가. 아동학대 관련법

- 아동학대에 대한 대표적인 근거 법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으며, 그 외에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보호 심판 규칙, 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및 민법과 형법 등이 있음
- 이상의 아동학대에 관해 직접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많은 관련법 중 아동학대 현행법 중 대표적인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연혁 및 그 주요 내용을 살펴봄

1) 아동학대법

- 1916년 12월 제정된 「아동복지법」이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명칭 변경
- 2000년 1월 전면개정으로 아동학대를 사회문제로 규정,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및 학대피해 아동의 보호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있음을 명시함
 - 아동학대 정의, 긴급전화 설치,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와 의무,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응급조치 의무 등의 아동학대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 2006년 아동학대 신고자의 범위에 유치원, 학원, 교습소 운영자와 교직원 등을 포함하여 확대함.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가 있을 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친권행사 제한 또는 친권상실 신고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2008년 개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 시행, 연구, 교육, 홍보 및 실태조사 실시, 학대 신고체계 구축과 운영 등의 의무를 부과함. 중앙과 지역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구분 및 역할 분담토록 함

- 2011년에는 친권상실의 신고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 및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범위 확대와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에 관한 홍보영상 제작·송출, 보수교육과정에 신고의무자들의 교육, 신고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용설명서 배포
- 2014년 1월 개정으로 올바른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근거 마련, 경찰관이 아동학대 의심사례 발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무적 통보, 아동보호시설 및 의료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아동 인수 거부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피해아동에 대한 취학지원 및 사생활 보호근거 마련,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의 아동관련 기관 취업 및 운영 10년간 제한 등의 아동보호 강화와 함께 가해자 처벌관련 내용을 추가
- 2015년 9월 개정으로 정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임을 고지할 수 있고, 신고의무 교육 실시할 수 있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 실시해야 하며, 미이행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2015년 10월 개정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시간·방법을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조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장교육 의무 대상기관에 종합병원과 아동복지시설 추가, 과태료 부과기준 항목추가 (신고의무자 직장교육 미실시, 피해아동 응급조치를 위한 피해아동 인수 거부 등)
- 2016년 9월 개정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후관리 업무 수행 시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됨.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명칭을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으로 변경, 행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해야 함.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피해아동 상담·조사를 위한 진술 녹화실 설치·운영 추가, 학대피해 아동쉼터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구체화 함

- 2017년 8월 개정으로는 지자체의 아동보호 책임성 강화, 시설이 아동학대 사실 은폐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 강화, 아동학대정보시스템 입력·관리를 위한 사용자 면제 등을 제시함
- 2017년 10월 공포, 2018년 4월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피해아동의 신체·정신치료를 전담하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근거 마련으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발견 및 대응방법 숙지할 수 있도록 모든 신고자에 대해 소속기관 및 시설의 장이 교육 실시
 - 국가 및 공공기관 등에서 매년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 인식 제고
 - 학대의 조기발견과 보호를 위해 기관간 연계체계 구축 및 정보 공유
 -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법률 상담 지원

2)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014년 1월 제정 및 9월 시행으로 아동학대를 범죄로 규정, 아동학대 범죄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신설, 아동학대 중상해 및 상습 아동학대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검사의 친권상실 청구 의무화, ‘아동학대 범죄 알게 된 경우’외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제 부과,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24개 직군으로 확대,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아동학대 현장출동 시 응급조치 후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학대행위자에 대한 친권의 제한·정지 등 임시조치 근거규정 마련, 신고전화 112로 통일

- 2016년 11월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해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입양기관의 직군 종사자 신고의무자 추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학대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하도록 신고기간 명확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신고자 비밀엄수의무 위반에 대한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 상향조정,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에게 아동학대 범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되고 위반 시 형사 처벌하는 규정 신설,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피해아동이 부모를 직접 고소할 수 있는 특례 마련, 피해아동과 합의가 있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라도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상담 등이 필요할 경우가 있으므로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도록 함, 피해아동을 보호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피해아동이 가해자인 부모와 함께 있길 원하더라도 분리 보호할 수 있도록 함

나. 아동학대 최근 정책동향

- 정부는 2014년 1월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및 9월 시행 이후에도 2015년 12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의료·복지·법적 대응을 신속하게 하는 '권역별 아동폭력 근절센터' 설치 등 대응책 마련
 - 아동학대사건 대응에 있어서 유관기관 협의체 형태로 실효성 없이 운영되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해바라기 아동센터를 합쳐 권역별로 아동폭력 근절센터 구성, 이에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보다 신속한 의료·복지·법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
- 2016년 1월에는 보건복지부가 필수 예방접종 미접종 아동, 어린이집 혹은 초등입학을 시키지 않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가정방문 조사 추진.
 -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찾아낸 아동의 가정에 각 지역사회의 복지사, 보건소 관계자가 찾아가 예방접종 권고 및 아동 상태도 확인하는 방식으로

‘아동학대 조기 발굴’강화 발표. 즉 교육부는 무단결석 3일 이상 시 가정 방문 의무화, 보건복지부는 예방접종 및 진료기록 없는 4-6세 아동의 가정방문(전수조사)으로 학대여부 조사

- 또한 2016년 2월에는 서울중앙지법과 경찰청이 아동학대 사건을 다룰 전담 재판부 조직을 결성함. 인천지방법원에 이어 서울중앙지법이 가정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에 아동학대 사건을 처리하는 재판부 설치함. 경찰청의 여성 청소년과에 ‘학대 대책계’를 신설해 아동학대 범죄수사 강화, 학대 전담 경찰관의 배치도 늘릴 계획
- 2016년 3월 29일에는 제8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수립·발표함. 아동학대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생애주기별 아동학대 예방체계 강화

- 결혼 전부터 자녀 학령기까지 주요 계기별 부모교육 시스템 구축
- 어린이집·유치원·학교 통해 아동권리와 아동학대 예방 교육 강화 및 지역 사회 자원 활용하여 아동학대 예방 활동 강화
- 신고의무자 확대 및 보호강화 및 ‘아동학대 신고 집중 홍보 기간’ 운영 정례화와 캠페인 전개

둘째, 조기발견 강화

- 아동 연령과 특성별로 위기아동 조기 발굴하기 위해 정부합동 발굴시스템 구축, 빅 데이터 활용한 상시 발굴시스템(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

셋째, 신속대응 및 처벌 강화

-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의 동행 출동으로 가해자로부터 피해아동 신속히 분리, 분리된 아동 및 그 형제자매에 대해 즉시 긴급복지지원 대상으로 선정
- 구속 수사와 사건처리 기준 강화, 중상해·상습범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 적극 활용, 가해자에 대한 친권 제한·정지 등이 엄격히 이루어지도록 개입

* 2017. 3. 27. 아동학대 대책 1년 보도참고자료 참고

-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 계획을 정부예산안 편성 시 반영, 2016년 하반기에 우선 긴급한 현장대응 조직 및 인력 충원



자료 :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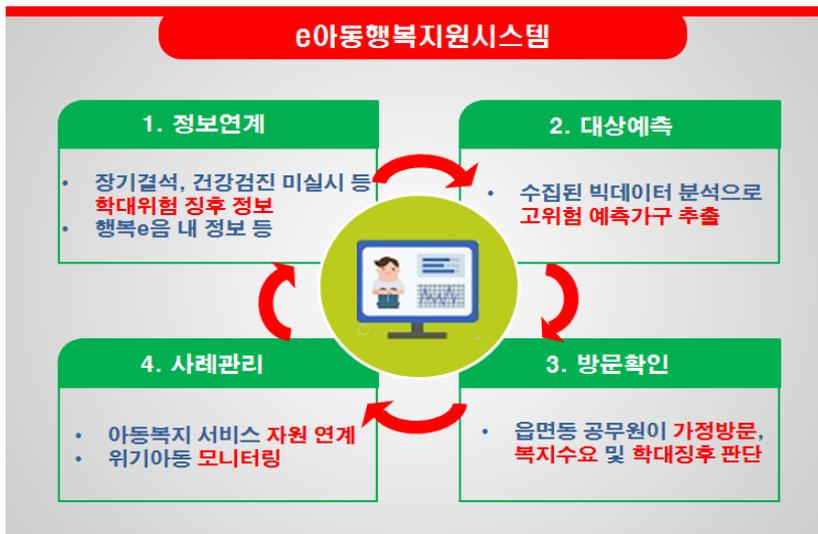
〈그림 2-1〉 아동학대 근절시스템 추진도

넷째, 학대 피해아동 보호 지원 및 재학대 방지

- 중증 피해아동에 대하여 대형병원의 '학대아동보호팀' 통한 의료·심리치료 지원
- 가정복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아동의 경우 민간의 자발적인 가정위탁제도를 활성화해 나가면서 장애·다문화 아동 등을 위한 전문가정위탁제도의 도입 방안 검토
- 재학대 방지를 위한 지속적 사후관리,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소득·취업·건강·돌봄 등 종합적인 지원 강화

○ 2017년 3월「아동학대 대책(16.3월)」이후의 1년간 과제 추진 및 검토

- (성과)아동학대 조기발견의 중요성 강화(위기아동 1망 7천여명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 실시 및 학대 사례 90여건 발견, 피해아동 보호조치), 아동학대 신속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전국 4개 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신설, 59개 검찰청과 252개 경찰서에 전담 검사와 여성청소년수사팀 배치, 아동보호전문기관 5개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7개 추가 확충)
 - (한계 및 보완) 아동학대 사각지대 보안을 위한 노력 필요, 학대예방을 위한 인권보호관 도입,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용 신고함 설치 등 외부감시 대폭 강화 필요, 산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강화, 조기발견 체계 구축 강화 등
- 2017년 하반기부터 아동학대 조기발견체계를 한층 강화시킨 ‘e 아동행복 지원시스템’ 시범 운영



자료: 2017. 3. 27일 아동학대 대책 1년, 보도참고자료

제3절 아동학대 사건 처리과정 및 협력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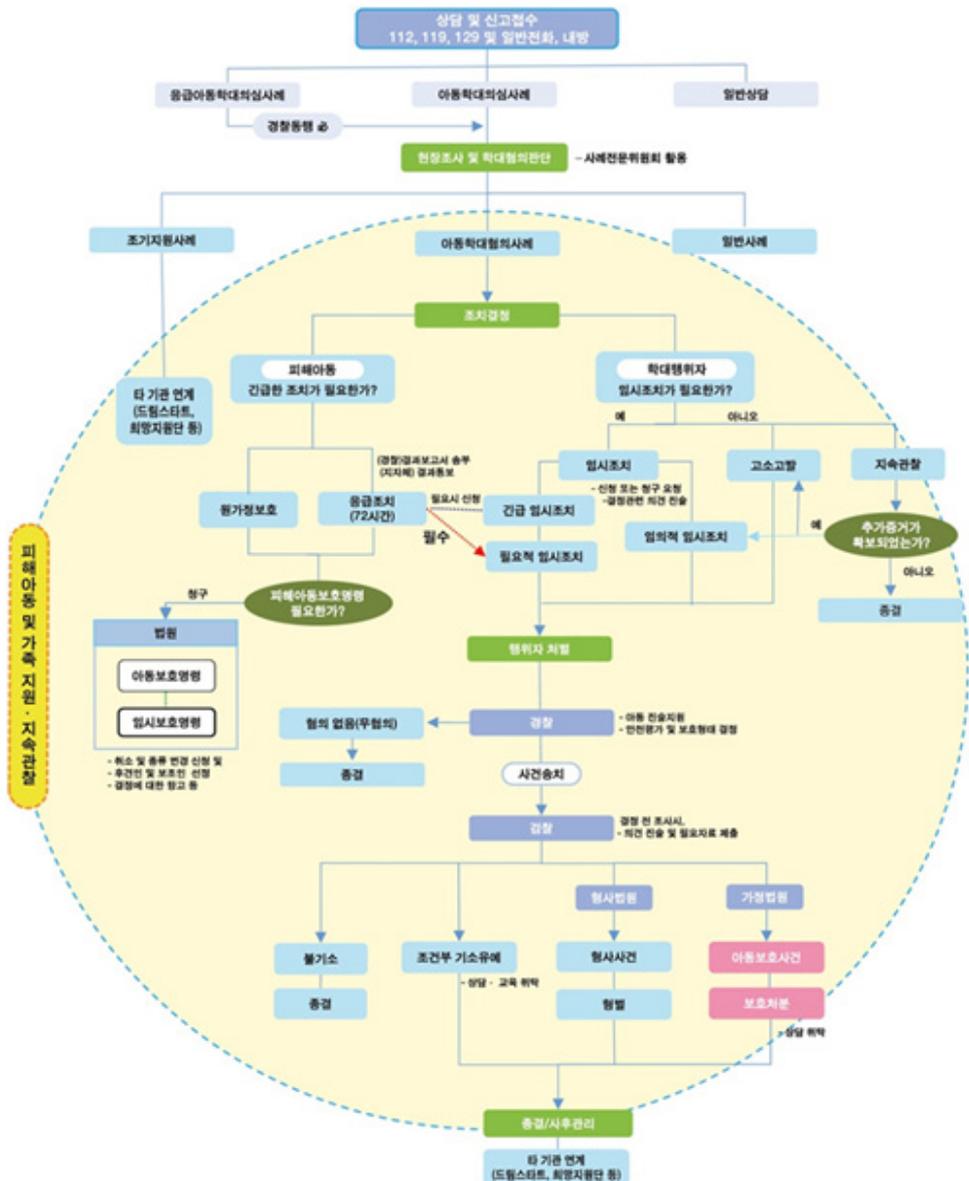
가. 아동학대 사건 처리과정

-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대응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과 협력을 통해 통합적으로 제공, 아동학대사례 사건처리 과정을 단계별로 요약 하면 <표 2-1>과 같음

<표 2-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사건 처리과정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관련 상담 및 의심사례 신고 ▫ 경찰청 범죄신고 전화 112로 통일
↓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한 위기개입을 위해 24시간 접수 ▫ 접수된 신고사건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의심사례인지, 일반상담인지 구분 하여 현장조사 필요 여부 결정
↓	
현장조사 및 초기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의심사례일 경우 현장조사(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경찰) 실시 ▫ 응급아동학대사례는 12시간, 단순아동학대사례는 48시간 이내 현장조사 실시 ▫ 피해아동의 신변보장과 안전조치 등 보호조치, 가해자의 임시조치 ▫ 사건의 응급성, 피해아동의 안정성, 학대의 지속성과 심각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정보 및 증거자료 수집 ▫ 가정 사정 및 학대 위험정도 파악
↓	
사례판정 및 조치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아동학대 사례·단순아동학대사례·잠재위험사례·일반사례로 구분하여 사례 판정, 각 사례에 따른 적절한 개입 계획 세우기 ▫ 아동학대 사례의 경우 가정 내 보호·격리보호 등 조치, 잠재위험사례 및 일반사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학대예방 교육 실시
↓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대 유발 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 수립 ▫ 피해아동, 가해자, 가족에 대한 상담·치료·교육 등 제공 ▫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경제 및 가사지원 등) 제공
↓	
사례종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재발 가능성 희박하다 평가될 시 종결 (아동양육환경 향상, 아동 안전·보호되고 있다고 판단 시)
↓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종결 이후 최소 6개월간 매월 1회 이상 전화상담·방문 등으로 아동과 가족 접촉하여 학대 재발방지 모니터링 ▫ 상담원 통해 아동·가족이 필요로 하는 도움과 지원을 위해 기관 연계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처리과정이 아동학대처벌법 이후 변화. 즉 현장조사 시 경찰 동행 및 학대 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 시 시군구청의 의뢰에서 사법경찰이 조치 취하여 가정법원에 직접 의뢰할 수 있도록 변화



자료 : http://korea1391.org/new_index/images/m22.jpg

〈그림 2-2〉 처벌법 이후 변경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사건 처리과정

1) 아동학대 신고와 접수

-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를 위해 신고전화는 2014년 9월에 범죄 신고전화 112로 통합됨
-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접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진행. 신고로 인해 접수된 사건이 학대의심사례인지 일반상담사례인지 구분하여 현장조사 실시 여부 결정
- 접수된 사건이 아동학대의심사례라면 사건의 응급정도와 피해아동의 안전성 여부, 학대의 지속성과 심각성 여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대처방안 등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기초정보 수집

2) 현장조사 및 초기사정

-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현장조사에 동반 출동. 현장에서 아동학대 여부 확인, 학대 위험정도 파악,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신변보장과 안전조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충분한 기초자료 및 정보 조사

3) 사례판정 및 조치결정

- 아동학대사례 여부 결정과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 위해 서비스 계획 수립. 사례판정은 현장조사에서 조사된 객관적으로 확보된 근거 내용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자체 내 사례회의,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등을 걸쳐 아동학대 사례, 조기지원사례(아동학대는 아니지만 학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례), 일반사례로 구분
- 조치결정은 사례판정의 결과를 근거로 학대 피해아동에게 필요한 가장 적절한 서비스를 취하는 것
- 학대 피해아동 조치결정 유형: 원가정보호, 분리보호, 사망으로 구분

- 학대 피해아동 대부분은 원가정보호로 친부모가 대부분 학대 가해자로 재학대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음
-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할 능력과 의지가 없거나 재학대 발생 위험이 높을 경우 분리보호를 실시. 친인척에 의한 보호, 연고자에 의한 보호, 가정위탁·일시보호·장기보호·병원 입원 등으로 구분. 분리보호를 위한 협력 및 지원기관으로는 가정위탁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그룹홈, 아동양육시설 등이 있음
-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결정 유형: 지속관찰, 아동과 분리, 고소·고발·사건처리, 만나지 못함 등이 있음

4) 서비스 제공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서비스를 피해아동, 가해자, 학대가정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 학대 피해아동에게는 아동학대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을 극복하도록 돕고, 가해자는 학대를 유발시킨 요인 감소와 재학대 발생을 예방하고, 학대가 발생한 가정 대상으로는 다양한 간접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기능 강화를 도모함
- 서비스 유형으로는 상담·의료·심리치료서비스, 가족기능강화서비스(가정지원서비스, 기관연결, 공적지원연결 등), 일시보호서비스, 아동응급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행위자 임시조치·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지원서비스, 학대행위자 수탁프로그램 등이 있음
- 서비스 제공 기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이외 지역사회의 기관과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으로 제공(가정위탁지원센터, 입양기관, 아동양육시설, 지역 아동센터, 병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드림스타트, 병원 등)

5) 사례종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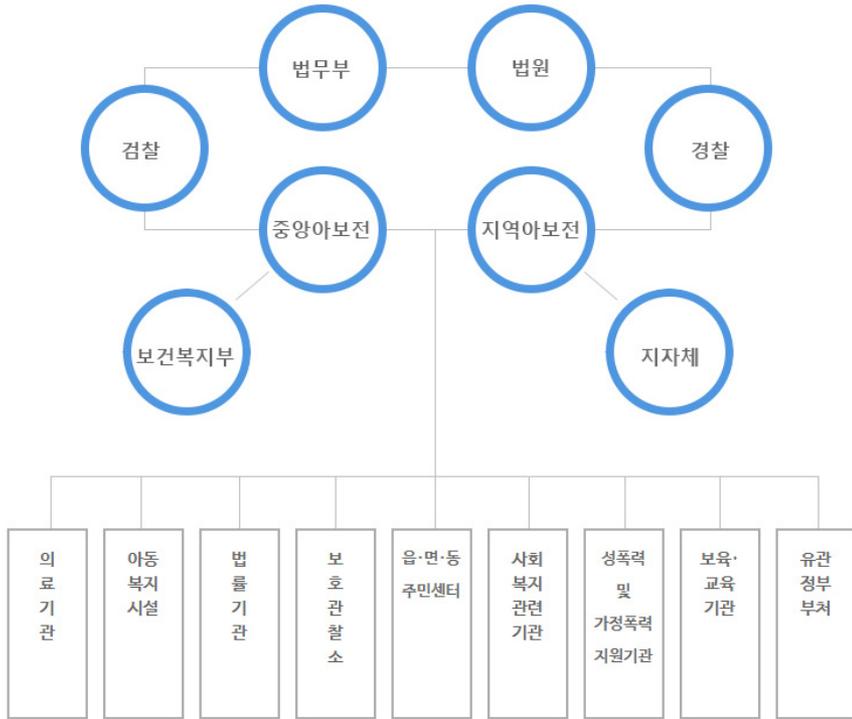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학대 피해아동, 가해자, 학대가족과 관계를 종료하는 과정. 직원은 먼저 피해아동, 가해자 및 학대가족과 함께 사례종결을 해도 될지에 대해 사정하여 피해아동과 학대가족이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해서 재학대의 위험이 감소되거나 제거되었다면 사례가 종료됨

6) 사후관리

- 종결된 사례에 대해 재학대 예방과 학대가족의 안정유지를 위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사후관리 실시. 매월 1회 이상 직접 방문 및 전화 상담을 통해 피해아동, 가족, 주변 관계자 등으로부터 재학대 여부 모니터링 실시. 그 외 피해아동과 가족이 필요로 하는 도움이 있을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을 통해 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음

나. 아동학대 관련 협력기관

-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관련 협력기관은 중앙의 법무부, 검찰, 중앙부처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및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법원, 경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복지시설,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관련기관, 보육·교육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자료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그림 2-3〉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협력기관

-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를 크게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에 따른 협력 기관들을 살펴보면 먼저 1단계인 예방 및 조기발견 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동주민센터, 어린이집, 유치원과 초중고학교,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및 병원 등에서 협력하고 있음. 2단계인 신고 및 조사단계에서는 해바라기 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과 검찰 및 병원의 협력 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마지막 서비스지원 및 사례관리 단계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많은 역할을 하며 그 외에 쉼터, 가정위탁, 일시보호, 가정위탁 및 각종 서비스지원을 할 수 있는 연계기관들이 협력하고 있음

〈표 2-2〉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를 위한 협력기관 및 지원내용

단계	협력기관	지원 내용
1	<p style="text-align: center;">예방 및 감시 단계 학대위험 아동 발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주민센터, 지방자치단체 : 해당지역 내 아동보호시설 관리 및 사업운영 • 어린이집(보건복지부) : 아동학대 신고 의무 • 학교/유치원(교육부) : 아동학대 신고 의무 • 지역아동센터(민간) : 기초수급대상/차상위/다문화/한부모가정 등 요보호 아동 보호 및 상담 • 병원(민간) : 아동학대 신고 의무
2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 및 조사단계 신고 현장조사와 사례판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바라기아동센터(여성가족부) : 아동 성폭력 피해 업무 • 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 민간위탁) : 아동학대 사례관리, 교육홍보 • 경찰/검찰(법무부)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동행 • 병원(민간) : 아동학대보호팀 설치
3	<p style="text-align: center;">서비스 지원 및 사례관리 단계 피해아동, 가해자, 가족대상 서비스 지원 및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 민간위탁) : 지속적인 사후관리 • 각종 쉼터/그룹홈/가정위탁 지원센터(보건복지부) : 원가족 복귀하지 않을 경우 시설보호

자료 : 조범근 외(2017). 아동학대 보호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20(4), 269-298

제 4 절 국내·외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관련 사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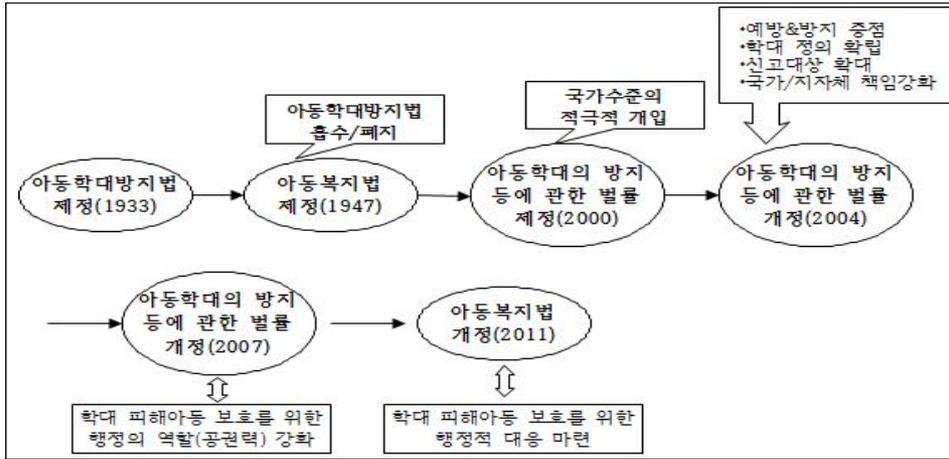
가. 국외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분석: 일본, 미국

1) 일본*

① 아동학대 관련 법률

- 아동학대 관련 법률은 1933년 「아동학대방지법」으로 최초 제정되었고, 그 후 「아동복지법(1947년)」이 제정되면서 동법 제34조에 규정이 흡수되었음
- 하지만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고, 기존의 아동학대 관련 정책이 아동학대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兒童虐待の防止等に關する法律(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이 2000년에 제정되었음(이하 아동학대방지법으로 표기). 이는 아동학대에 대해 독립된 법률로 만들고, 국가수준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아동학대방지법은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과 방지,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 확립, 아동학대 신고대상의 확대, 국가/지자체의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여 2004년 개정됨. 특히, 기존의 아동상담소에 더해 시정촌의 기능을 더하여 역할 분할을 하는 이원체계(Two-Track) 구축이 눈여겨 볼 부분임
- 이후 2007년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행정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짐.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유관기관 간 상호연계체계 구축을 명료하게 규정하였으며,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의무교육 지시 권한과 각종 조사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권한들을 강화하였음
- 2011년에는 아동복지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아동학대 예방을 포함하여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정방문육아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였고, 위탁모 제도를 확대하였음. 이를 통해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행정적 대응 마련을 이루고자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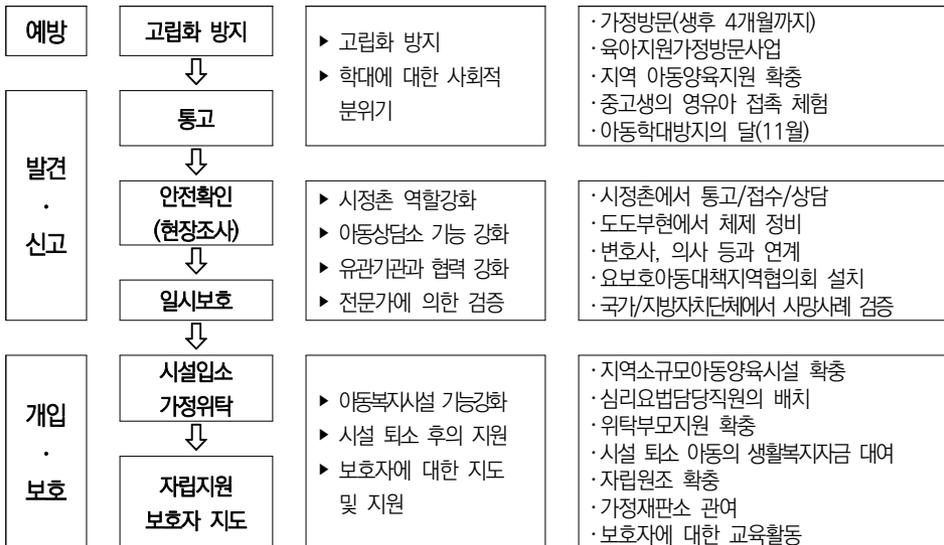
* 본 내용은 선행연구(강은영·김희균, 2015; 배상균, 2015; 오미희, 2015; 정용석, 2014)를 참고하여 재정리하였음.



〈그림 2-4〉 일본의 아동학대 관련 법률의 변천

②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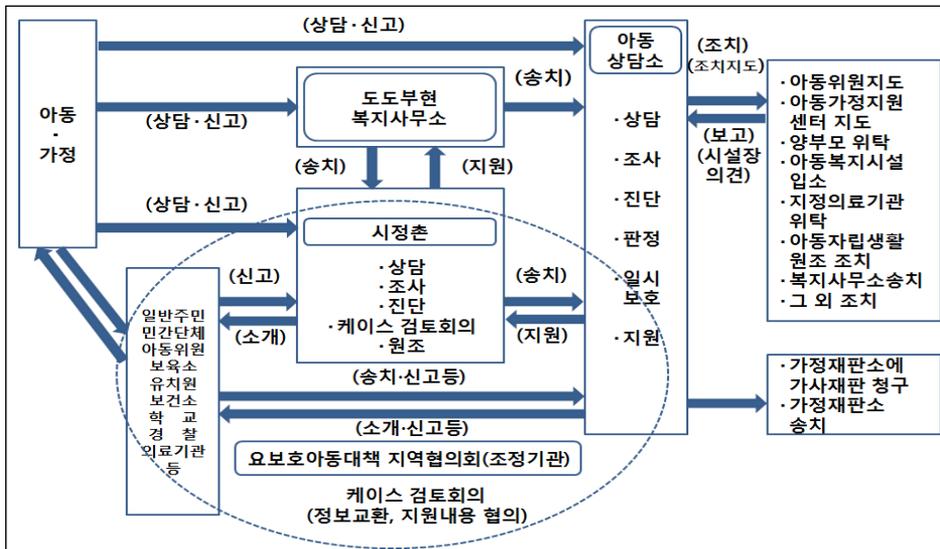
- 일본의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체계의 포괄적 구분은 크게 3단계(예방-발견 및 신고-개입 및 보호)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림 2-5〉와 같음



자료: 이봉주 외(2016).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아동보호체계의 개선방안 연구」에서 재인용.

〈그림 2-5〉 일본의 아동학대보호체계

- 우선,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1차적 단계는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임. 이에 아동학대 예방에 방점을 두고 신고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내 가족의 고립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서 출발함. 예를 들어, 생후 4개월 이내 영아를 대상으로 가정방문지도사업을 실시하고, 학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매년 11월을 아동학대 방지 추진의 달 시행)을 진행하고 있음
- 2단계의 주요 키워드는 조기발견과 대응이라 할 수 있음. 이를 위해 모든 사람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였고, 업무상 아동과 관련 있는 직업군은 조기발견의무를 부과함. 즉, 아동학대를 발견·의심한 모든 사람은 기초자치단체를 의미하는 市町村(시정촌) 혹은 광역자치단체를 이르는 都道府縣(도도부현) 산하 아동상담소* 또는 복지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함. 한편, 기관에 신고가 접수되면 반드시 48시간 이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함과 동시에 해당 가정에 대한 지원이 진행됨. 만약 학대가정이 비협조적일 시, 강제로 문을 열고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자료: 김미숙 외(2016). 「아동학대 피해아동 지원 체계 구축 방안 연구」에서 재인용.

〈그림 2-6〉 일본 시정촌과 아동상담소의 지원활동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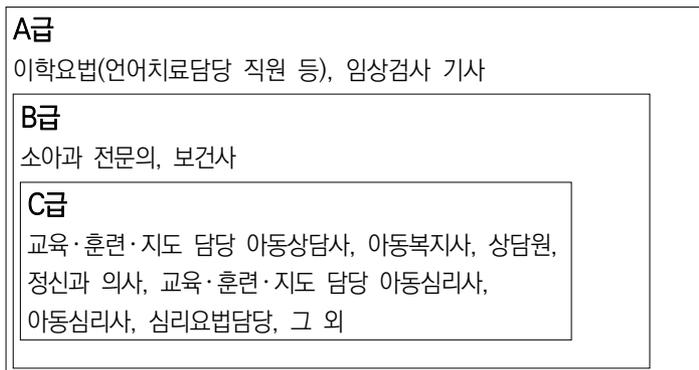
* 연중무휴 24시간 지원체제로 운영되며, 양육 상담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한 가족기능 강화를 지원함.

- 3단계는 학대사건에 대한 처리와 보호로, 원가족에서 아동을 분리하고 시설에 입소한 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 짐. 이는 학대 피해 아동의 가정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과는 차이가 있음. 한편, 부모가 아동 상담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친권상실 청구가 가능하며, 가정위탁 보다는 주로 시설입소를 하게 됨. 아동이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학대 행위자를 위한 지원은 아동상담소에서 담당하고, 아동의 돌봄과 지원은 시설이 담당하게 되며, 이에 대한 일련의 과정은 법원의 정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이어짐. 아동상담소의 서비스 내용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법, 주거환경개선, 분노조절 방법 등에 대한 서비스가 이루어짐

③ 아동학대에 대한 행정 전달체계

- 일본의 아동학대 관련한 행정의 전달체계는 중앙정부-도도부현(광역단위)-시정촌(기초단위) 등의 행정기관, 그리고 아동상담소와 아동가정지원센터 등의 유관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관련 업무를 수행함
- 먼저, 중앙정부 기구인 후생노동성(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으로, 국민의 생활 보장 및 사회복지, 건강/위생, 노동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행정기관임. 이 중 아동학대를 비롯하여 가족에 관한 전반적인 복지행정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아동복지 기능을 수행하는 국 소속의 학대방지 대책추진실(虐待防止對策推進室)은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아동학대 발생 예방, 조기발견 및 대응, 아동과 그의 가정을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시행함. 또한,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방지대책본부를 발족하고, 아동학대에 관한 각종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유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강화함
- 도도부현(都道府縣)은 아동복지사업의 기획, 예산편성, 시설 지도감독, 아동 상담소와 복지사무소 설치운영 등 큰 틀에서의 아동복지 사업을 추진함. 특히, 도도부현은 아동상담소를 설치하여 아동학대 뿐만 아니라, 아동기 전반에 관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시정촌(市町村)은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며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으로 아동복지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도감독, 보육, 건강검진, 각종 정보의 제공, 아동학대 신고접수 등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특히, 아동상담소에서 전담하던 아동상담 업무가 아동복지법 개정(2004년)으로 1차적 상담역할을 시정촌에서 수행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상담과 법적조치가 요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아동상담소가 수행하도록 업무기능이 조정됨
- 우리나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유사한 형태인 아동상담소(兒童相談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으로 요보호 아동의 발견/구조, 치료 및 지원 등을 수행함. 설립초기에는 일반적인 양육상담이나 일시보호의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아동학대와 관련한 상담 업무로 기능이 진화함. 정부의 예산으로 전액 지원되며, 상담소의 규모는 인구수에 따라 A급(150만 명 이상), B급(150만 명 미만), C급(그 외)으로 구분할 수 있음. 인력구성은 소장, 아동복지사(전문직 공무원), 심리치료사, 의사, 아동지도자, 보육사 등으로 구성됨



〈그림 2-7〉 아동상담소 규모별 조직 구성

- 아동가정지원센터(兒童家庭支援)는 각각의 시정촌에 설치되어 있으며 지역사회 내에서 가장 가까워서 위기아동을 위한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임. 주요 기능으로는 전화방문상담, 재가서비스, 일시보호 등을 제공하며, 지역

2) 미국*

① 아동학대 관련 법률

- 미국은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등의 아동학대 문제가 거론되면서 이를 모두 포함하는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을 1974년 법제화하여 아동학대 신고를 규정하였음. 이로서 아동보호체계(Child Protective Services)를 구축함
- CAPTA는 연방정부의 역할, 주(State)정부 정책 지침 등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아동보호체계의 근간이 되는 법률이라 할 수 있음
- 각각의 주(State)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과 조치를 위한 법률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규정한 지침을 수행해야함
- 이 외에 아동학대 관련 법률로는 입양부조와 아동복지법(The Adoption Assistance and Child Welfare Act, 1980), 입양 및 가족안전법(Adoption and Safe Families Act, 1997)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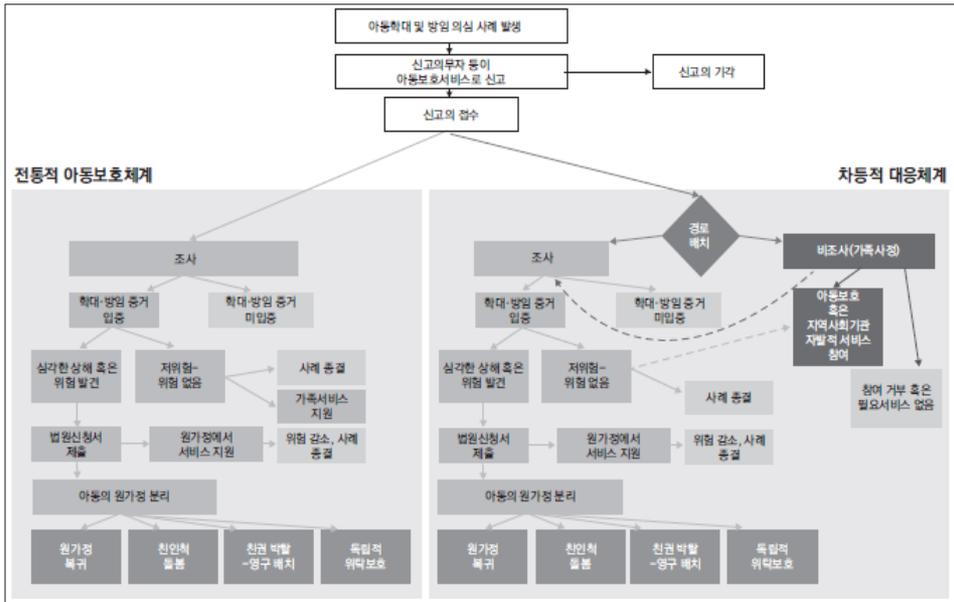
②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체계

- 미국의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체계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먼저 전통적 아동보호체계는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사례에 대해 모두 동일하게 접근함. 즉, 아동보호서비스 종사자에 의해 신고·접수부터 조치까지 단일체계로 이루어짐. 이를 통해 학대피해 아동을 원가정에서 분리하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됨
- 하지만 이러한 보호체계는 몇 가지 제한점이 제기되기 시작함. 이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대응방식이 조사에 초점을 두어 획일적이고, 가족 전체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 서비스 대상자를 과대 혹은 과소 포함하여

* 본 내용은 선행연구(김미숙 외, 2016; 이봉주 외, 2015; 이주연, 2016; 임동호, 2008; 전민경, 2017)를 참고하여 재정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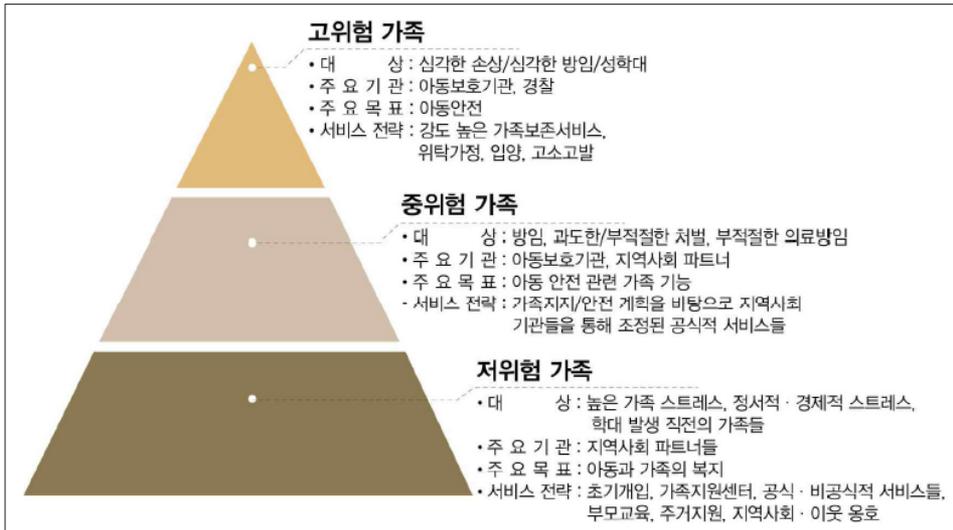
아동보호체계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점, 아동학대 신고 증가에 대해 이에 대한 대응기관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처벌과 분리가 아닌 가족기능 강화에 초점을 두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됨

-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차등적 대응 시스템(Differential Response System)을 도입하게 됨. 이 방식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사례를 조사와 비조사(가족사정)으로 분류함. 즉, 심각한 사례의 경우 전통적 방식의 프로세스가 이루어지고,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례의 경우 비조사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차등화 하였음



자료: 이주연(2016). 「미국의 학대아동보호를 위한 차등적 대응체계와 시사점」에서 재인용.
 <그림 2-9> 미국의 전통적 아동보호체계와 차등적 대응체계의 비교

- 이는 상대적으로 아동학대 위험도가 낮은 사례를 분리함으로써 아동보호서비스의 업무 손실을 줄이고, 위험도가 높은 사례에 대해 깊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이러한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은 기존의 전통적 보호체계의 문제의식을 구체화한 것이라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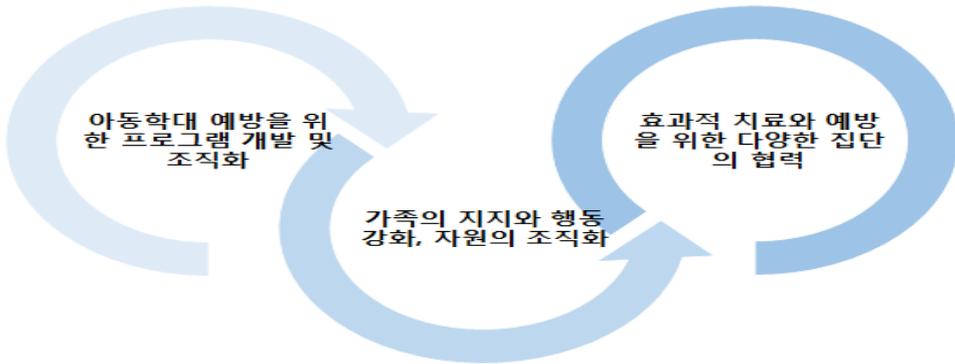


자료: 이봉주 외(2015).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아동보호체계의 개선방안 연구」에서 재인용.

〈그림 2-10〉 미국의 아동학대 대응시스템 모형

③ 아동학대에 대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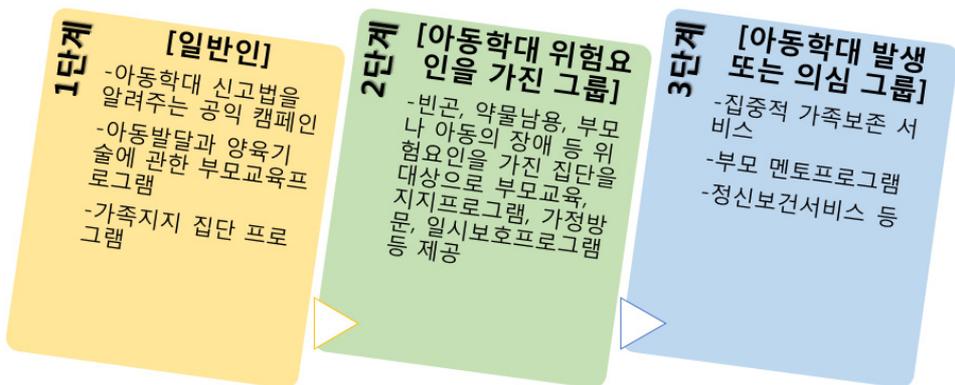
- 미국의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체계는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모형의 대표적 국가로 평가됨. 특히, 아동학대의 예방적 접근에 따라 가족이라는 큰 틀에서 초점을 맞추고, 이를 위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이러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Community-Based Child Abuse Prevention Program : CBCAP)은 모든 주(State)에서 시행중이며, 프로그램 역시 다양하게 존재함
- 국외 선행연구들(CDSS, 2016; Thomas, Leicht, Hughes, Madigan, & Dowell, 2004)에서 아동학대 예방 서비스(CBCAP)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후대처 방식보다 비용-편익(cost-benefit)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한편, 효과적인 예방적 접근을 위해서는 단편적 예방서비스만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증거 기반 서비스를 실행을 위한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함(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3)



자료: 김미숙 외(2015). 「아동학대 피해아동 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에서 재구성.

〈그림 2-11〉 미국의 지역사회기반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의 목적

- CBCAP는 부모-자녀 관계 강화, 부모의 양육기술 향상과 사회적지지 체계 확립, 가정방문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구성은 3단계로 접근하는데 그 내용은 〈그림 2-11〉과 같음
- 1단계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신고 캠페인, 부모교육프로그램, 가족지지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2단계는 아동학대 관련 위험요인을 가진 그룹(약물남용, 빈곤 등)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지지프로그램, 가정방문, 일시보호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3단계에서는 현재 아동학대가 발생한 그룹을 대상으로 가족보존서비스, 정신보건서비스 등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짐



자료: 김미숙 외(2015). 「아동학대 피해아동 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에서 재구성.

〈그림 2-12〉 미국의 지역사회기반 단계별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나. 국내 아동학대 사례관리 중심의 아동보호전문기관 : 서울, 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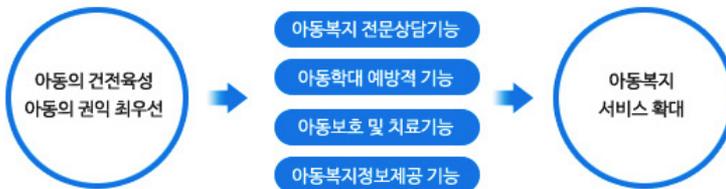
1) 서울

□ 서울 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과 서울시아동복지센터 내 아동학대예방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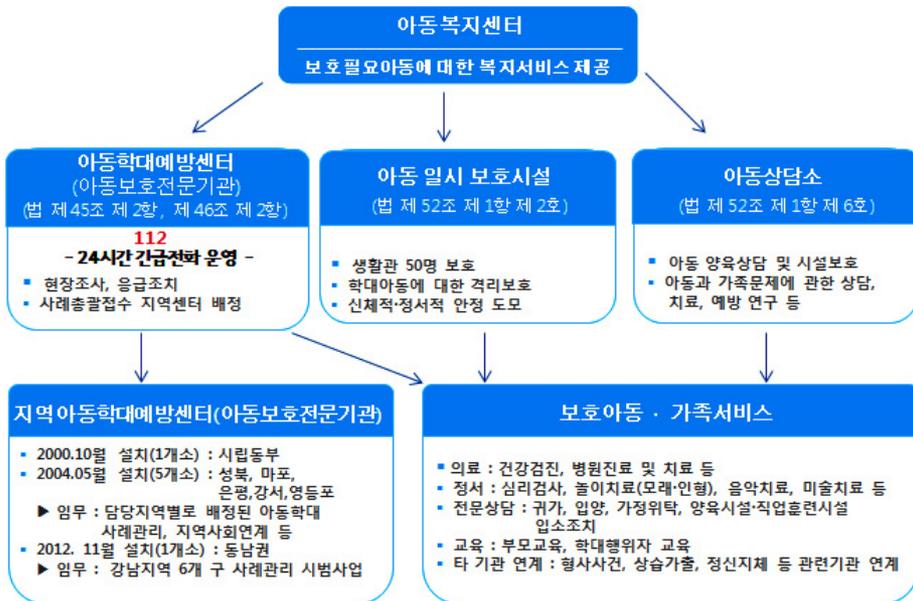
- 서울시의 아동보호전문기관 9개 중 2013년 설치된 서울특별시아동학대예방센터와 2012년 개소한 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으로 나누어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들임
- 서울 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 최초로 아동학대 사례관리만을 전담하는 민간 기관으로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에 의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굿네이버스 법인기관이 위탁 수행
- 현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강동구, 송파구의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조치결정까지는 서울특별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동복지센터 내 서울시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진행하고, 학대피해아동 보호치료 및 사례관리와 아동학대예방 업무는 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
- 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저소득 가정 및 학대피해아동들을 위한 방과 후 및 방학 교실, 사례관리, 아동지킴이, 학대예방 홍보사업, 신고의무자교육, 피해아동 및 가족 전담치료 보호사업 등을 통해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그 외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들,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들과 협력 중임. 동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지역을 관할하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관 간 연계할 수 있는 기회도 늘고 이들 자원을 파악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됨
- 서울특별시 아동학대예방센터는 공공기관으로 조사관(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응급조치, 사례판정과 조치결과를 확정하면, 서울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담당지역별로 아동학대 사례를 배정하고 지역사회에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즉 서울시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으로 피해아동, 가해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과 교육, 치료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재학대 발생을 방지하는 기능을 대폭 강화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음

- 2017년 기준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내 아동학대예방센터 직원은 총 7명으로 서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7개소 운영을 지원하며, 아동학대 사례전문위원회 운영, 아동학대예방 홍보 및 교육, 아동학대교육지침서 발간 등의 업무도 함께 수행



추진체계



자료: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홈페이지(<http://child.seoul.go.kr/>).

〈그림 2-13〉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의 주요사업

□ 서울 노원구 아동보호전문기관

- 2017년 12월 서울시 노원구가 직영으로 노원아동복지관 및 노원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개소함. 노원구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8년 1~2월간 시범운영을 통해 3월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 노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 최초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개설해 아동학대 조사 및 사후관리까지 담당하게 됨
- 즉,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조사, 사례조치, 관리, 학대예방 교육, 홍보 등을 수행, 검사실, 치료실, 상담실 등을 갖추고 학대피해 아동과 가족, 학대행위자 상담, 치료, 교육까지 담당(노원 아동복지권)하고 지역 내 아동복지전달 체계 구축함. 민간부문 전달체계와의 효율적 네트워크를 포함해 노원구 아동복지 핵심 수행기관이자 컨트롤타워로 역할로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에 공공성 강화에 힘을 부가함. 건립비는 국사·구비 약 25억원 규모임
- 노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직구성을 살펴보면 노원구 체육청소년과의 총 5명의 공무원(아동학대 조사원 4명 이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관리 등의 관리자 1인)이 담당할 예정임

2) 부산

□ 부산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부산아동보호종합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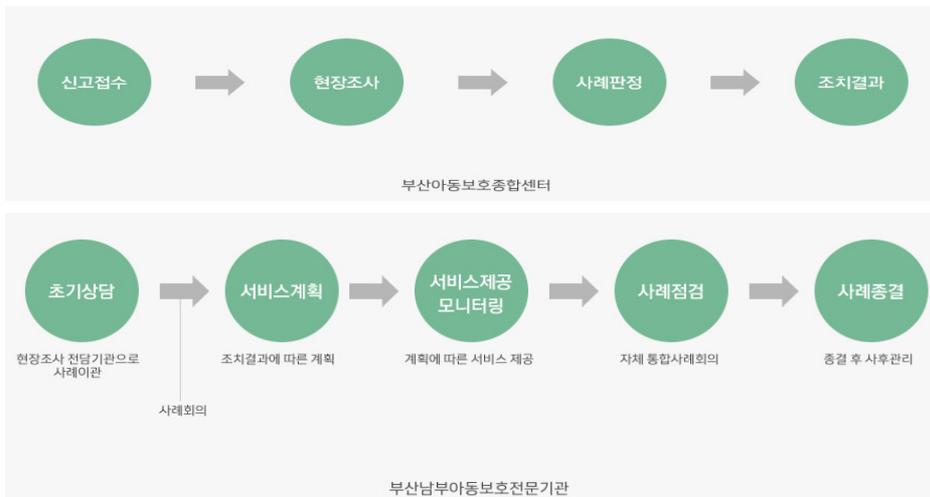
- 사회복지법인 동성원에서 운영하는 부산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아동학대 사례관리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임. 아동학대 사례관리에 집중함으로써 아동학대에 신속하고 세밀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부산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부산광역시 16개구와 군 중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사하구, 서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총 9개구에 대한 아동학대 사례를 관리함

- 부산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부산아동보호종합센터에서 9개구의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받아 현장조사 및 아동학대 사례판정과 조치결과가 결정된 이후 아동학대 사례만을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초기 상담부터 서비스 계획,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및 연계를 추진하여 사례 점검과 종결 등까지 전반적인 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자료: 부산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bnc1391.or.kr>).

〈그림 2-14〉 부산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조직도



자료: 부산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bnc1391.or.kr>).

〈그림 2-15〉 부산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흐름

-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피해아동과 그 가족 대상으로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가족기능 강화, 학대후유증 감소를 위한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검사·심리치료 실시, 아동학대 사례관리 종결 이후 지속적인 사후관리 등 재학대 방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다음으로 자체 사례회의 및 아동학대 사례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전문적인 사례 개입 방향 설정, 아동학대 사례별 위험정도(고위험군, 아동학대, 조기지원사례 등) 파악 후 차별적인 사례관리 등으로 맞춤형 사례관리를 진행하며, 마지막으로 학대피해아동 가정에 대한 지원방향 및 연계방향 논의와 사례 종결여부 판단, 종결사례 사후관리와 서비스 연계방안 논의를 위해 사례회의를 추진 중에 있음
- 또한, 학대가정의 학대피해아동·행위자·가족원 대상 전문적인 심리평가 및 치료와 신고의무자 및 일반인 대상 아동학대예방교육,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사진전·신문·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아동학대 인식 제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 등이 추진 중
- 그 외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가족기능강화사업(가족문화체험, 가족체험프로그램, 찾아가는 동화구연), 부모코칭사업(자녀양육, 양육스트레스 해소, 보호자와 자녀관계 향상, 자녀와의 효과적 대화방법, 훈육관련 상담 및 양육코칭 등), 원가족복지지원사업(원가족복지전 면접교섭 → 복귀전 가족 맞춤형 프로그램 → 복귀 후 가족맞춤형 프로그램), 홈케어플래너 서포터즈 사업(많은 문제가 있는 가정에 방문하여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 등의 특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현 직원(2018년 1월 홈페이지 상 기준)은 총 18명으로 팀장 2명 및 상담원 12명, 임상치료사 1명, 지역관리자 1명, 사무원 1명 등이 근무하고, 이외 사례전문위원으로 행정·의료·법률분야 각각 2명, 복지분야 7명, 교육분야 1명으로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부산광역시 직영의 아동보호종합센터는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운영 조례」에 의거 부산시 아동의 복지증진 및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됨. 아동보호종합센터 내에는 아동 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아동과 가족문제 상담·심리치료, 아동양육 전문상담실(아이사랑콜) 운영, 아동의 건전육성 도모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시설아동 지원사업, 아동전문도서실운영, 국내입양사업, 대관사업 및 아동의 복지 증진 및 권익보호에 관한 주요사업들을 하고 있음

- 부산시아동보호종합센터 내 부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이외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거점 기능·역할을 수행중이며, 아동학대예방 컨트롤 타워 기능강화 및 민간 아동 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심리치료 등 사례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아동보호팀의 조직을 살펴보면 신고 및 현장조사 관련 일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약 7명이며 이외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협의회, 시설운영위원회, 아동학대 홍보 및 교육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약 3명 등이 있음



자료: 부산광역시 2017년 아동보호종합센터 업무계획

〈그림 2-16〉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조직

3

장

전북 아동학대 관련 자원현황 및 지역사회 특성

Jeonbuk Institute

-
- 제 1 절 전북 아동학대 관련 자원현황
 - 제 2 절 전북 아동학대 관련 지역사회 특성
 - 제 3 절 소결

제3장 전북 아동학대 관련 자원현황 및 지역사회 특성

제1절 전북 아동학대 관련 자원현황

가. 전북 시·군별 아동학대 관련 조례

- 전라북도의 경우 「전라북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2009년 10월 제정하고, 2015년 5월 일부개정을 통해 현재 시행 중. 본 조례의 목적은 아동복지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의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및 치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조례내용에 의하면, 전라북도 도지사는 도내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및 치료를 위해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및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와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하고, 3일 이상 장기격리 및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피해아동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및 기타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의료, 심리)를 위한 사업을 신속히 시행해야 함. 또한 지역 내 아동수와 지리적 위치 등을 고려한 시군구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운영(제4조),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및 치료 시책에 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전라북도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구성·운영(제7조~11조), 도교육청, 영유아보육시설, 아동보호관련기관, 사법경찰, 아동위원, 의료기관, 법류기관 등 아동학대 관계 기관 간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성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제12조), 매년 아동학대예방과 보호 및 치료에 관한 시행계획(아동학대 예방 등에 필요한 시책, 신고의무자 교육 및 홍보, 자원 조달방법, 협력체계 구축관련 사항 등) 수립 시행(제13조) 등이 명시됨
-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아동학대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표 3-1〉), 전라북도과 군산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는 아동·여성보호 연대구성 운영 및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만이 제정·시행되고 있음

- 전라북도와 군산시의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아동복지법과 관련되어 제정된 조례로 아쉽게도 전라북도 시군에서는 아동학대특례법과 관련된 조례는 찾아볼 수 없었음.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시군의 아동학대 조례 제정 및 시행여부는 그 지역의 아동학대 관련 관심도, 예산편성의지, 사업의 양 등을 나타내줄 때 전라북도 시군의 아동학대 관련 관심은 여전히 부족함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표 3-1〉 전북 시군별 아동학대 관련 조례 현황

	조례명	제정일	근거법 및 주요내용
전라북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2009.10.	아동복지법
전주	아동·여성보호 연대구성에 관한 조례	2010.0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군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2015.04.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 주민대상 연1회 이상 교육, 아동학대 관련 정책 모니터링,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19일) 및 주간 지정
	아동·여성보호 연대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2010.02.	가정폭력방지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등에 관한 법률
익산	아동·여성보호 연대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2010.01.	가정폭력방지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등에 관한 법률
정읍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0.02.	가정폭력방지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등에 관한 법률
남원	아동·여성보호 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2009.12.	가정폭력방지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등에 관한 법률
김제	아동·여성안전 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2010.05.	가정폭력방지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등에 관한 법률
완주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 조례	2009.12.	가정폭력방지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등에 관한 법률
진안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2013.11.	가정폭력방지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등에 관한 법률
무주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2010.04.	
장수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 조례	2015.12.	가정폭력방지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임실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운영 조례	2009.12.	가정폭력방지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순창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2010.02.	가정폭력방지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등에 관한 법률
고창	아동·여성보호 연대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2010.03.	가정폭력방지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등에 관한 법률
부안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	2012.12.	가정폭력방지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등에 관한 법률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2018. 01월 기준

나. 전북의 아동학대 관련 예산 및 정책 현황

1) 아동학대 예방 관련 예산 현황

- (보건복지부) 2018년의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관련 예산은 총 254억 3200만원임. 이는 2017년 266억 2900만원(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비 포함)과 비교하여 약 4.5%가량의 11억9700만원이 축소된 것임
 - 2018년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관련 예산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무부)이 187억3300만원, 복권기금(기획재정부) 47억900만원, 일반회계 11억 600만으로 구성됨
 - 현재 아동학대 관련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지만,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을 주요 예산으로 하며 중앙 및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비로 쓰임
 -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에 의존하는 아동학대 관련 현재의 재원구조로는 아동복지법 근거의 모든 시군구에 1곳 이상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하는 힘들며, 2017년에도 증설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없었음

〈표 3-2〉 전북 아동학대 관련 사업 예산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보건복지부	159억원	135억원	232억원	265억원	252억원	203억원	266억	254억
전라북도	1,087,476천원	1,084,851천원	1,084,601천원	1,094,401천원	1,745,936천원	1,923,605천원	2,027,641천원	2,424,298천원

자료: 보건복지부 및 전라북도 세입세출자료

- (전라북도) 2018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예산은 총 2,424,298천원으로 전년 대비 약 396,657천원(약 19%)이 증가함
 - 2018년 총 예산 2,424,298천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지원으로 1,729,988천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사업 지원으로 351,254천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464,310천원, 아동학대예방 통합교육 20,000천원으로 지출될 예정

- 2018년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군산분소는 순지방비(도비 105,000천원, 군비 105,000원)로 증설하여 운영·지원할 예정임

2) 전북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 지원 사업 현황

- 전라북도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운영 : 15인 이내의 당연직과 위촉직을 구성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아동의 치료와 보호를 추진하고 아동보호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마련
-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
 - 아동학대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 성학대 예방 인형극, 아동권리교육, 아동 대상 성교육, 고위험아동 특별관리 프로그램, 일반 성인교육 및 부모교육, 양육시설 입소아동과 종사자 교육 등
 - 아동학대 예방 홍보사업 운영 : 인쇄홍보물과 물품홍보물, 언론홍보, 예방 및 특별 캠페인, 홍보행사
-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신고의무자교육 강화 : 24개 직군의 신고의무자 대상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교육 이수 의무 부과
- 아동학대 신고활성화 : 시 및 시군의 공익신고 방법과 포상금 지급제도에 대한 홍보 리플렛 제작·배부 등
-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소관부서별 시설종사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이행 독려 및 미이행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등 지도감독 강화
- 전라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방안 추진

다. 전북지역 아동학대 관련 시설 현황

1) 전북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 2000년 국가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시작할 때는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사용했으나, 피해아동 낙인, 행위자 저항 심화 및 피해의식 등의 문제 발생으로 2006년부터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명칭 변경
- 전국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0년 17개소를 시작으로 2018년 1월 현재 총 62개소가 운영 중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이외에 지역별로 61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어 있음
- 전국평균 61개 기관이 139,024명을 담당하고 있으며, 강원도가 1개소 당 아동인구 58,866명으로 가장 적고, 대전광역시가 263,207명으로 가장 많았음. 전북의 경우, 1개소 당 100,827명의 아동을 담당하며 이는 전국에서 5번째로 적은 아동을 담당하고 있음

〈표 3-3〉 전국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지역	기관 수	아동인구 수 (기관당 아동수)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기관	관할 지역	비고
서울	9	1,404,967 (156,107)	서울특별시	2000년	서울시아동복지센터	6곳	서울시 직영 현장조사중심
			서울동부	2000년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6곳	
			서울강서	2004년	굿네이버스	2곳	
			서울은평	2004년		3곳	
			서울영등포	2004년		3곳	
			서울성북	2004년		2곳	
			서울마포	2006년	세이브더칠드런	3곳	사례관리중심
			서울동남권	2012년	굿네이버스	6곳	
서울노원	2017.12.	노원구 직영	1곳				
부산	4	491,887 (122,972)	부산광역시	2000년	아동보호종합센터	7곳	부산시 직영 현장조사중심
			부산동부	2015년	인천사회사업재단	4곳	
			부산서부	2015년	인천사회사업재단	3곳	사례관리중심
			부산남부	2016년	사회복지법인동성원	9개	
대구	3	399,139 (133,046)	대구광역시	2000년	어린이재단	2곳	
			대구남부	2013년	굿네이버스	3곳	
			대구북부	2016년	한국SOS어린이마을	3곳	
인천	3	490,472 (163,491)	인천광역시	2000년	세이브더칠드런	5곳	
			인천북부	2004년	굿네이버스	3곳	
			인천남부	2015년	홀트아동복지회	2곳	

광주	2	272,417 (136,209)	광주광역시	2000년	어린이재단	2곳
			빛고을	2016년	사회복지법인동명회	3곳
대전	1	263,207 (263,207)	대전광역시	2000년	굿네이버스	5곳
울산	2	208,500 (104,250)	울산광역시	2000년	세이브더칠드런	3곳
			울산남부	2017년		2곳
경기	12	2,313,378 (192,782)	경기도	2005년	굿네이버스	4곳
			경기북부	2003년		5곳
			경기성남	2004년		4곳
			경기고양	2004년		2곳
			경기부천	2004년	세이브더칠드런	2곳
			경기화성	2006년	굿네이버스	2곳
			경기남양주	2007년	대한불교조계종	3곳
			안산시	2009년	세이브더실드런	1곳
			경기용인	2013년	굿네이버스	3곳
			경기사흥	2013년		2곳
			경기평택	2015년	동방사회복지회	2곳
경기수원	2016년	굿네이버스	1곳			
강원	4	235,464 (58,866)	강원도	2000년	어린이재단	5곳
			강원동부	2003년	5곳	
			강원서부	2004년	굿네이버스	4곳
			강원남부	2015년	4곳	
충북	3	262,948 (87,649)	충청북도	-	굿네이버스	5곳
			충북북부	2004년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	3곳
			충북남부	2006년	사회복지법인 명지원	3곳
충남	3	429,129 (143,043)	충청남도	2000년	굿네이버스	4곳
			충남남부	2007년		6곳
			충남서부	2014년		6곳
전북	3	302,482 (100,827)	전라북도	2000년	굿네이버스	4곳
			전북서부	2004년		5곳
			전북동부	2006년		5곳
전남	3	295,837 (98,612)	전라남도	2000년	어린이재단	7곳
			전남서부권	2004년	굿네이버스	7곳
			전남중부권	2012년		8곳
경북	4	408,233 (102,058)	경북남부	2000년	우봉복지재단	6곳
			경북북부	2004년	그리스도의 교육수녀회	6곳
			경북동부	-	굿네이버스	5곳
			경북서부	2005년	대한불교조계종	6곳
경남	3	579,947 (193,316)	경상남도	2000년	인재복지재단	10곳
			경남서부	2004년		7곳
			김해시	2015년		1곳
제주	2	122,440 (61,220)	제주도	-	어린이재단	1곳
			서귀포시	2006년	사회복지법인 제남	1곳
소계	61	8,480,447 (139,024)			-	

주 : 아동인구 수 = 0~17세 아동인구 수(2017년 12월 기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수 = 2018년 1월 기준
 자료 : 보건복지부 및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참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 전북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7년 총 3개로 2000년 전북, 2004년 서부, 2006년 동부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소됨. 2018년 2월에는 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분소가 군산에 도비와 군비로 마련될 예정임
- 전북지역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법인이 굿네이버스로 모두 동일하며, 3개 권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총 직원의 수는 39명(전북 14명, 서부 15명, 동부 10명)으로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장 적은 인원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전북지역의 서부와 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5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고, 전북(중부)은 4개의 시·군을 관할하며 2018년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군산 분소는 군산시 1개 지역을 담당할 예정임
- 전북지역의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군산 분소를 제외한 3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기금 50%, 지방비 50%(도비 25%+시군25%)으로 지원되는데, 적은 예산이 중 인건비가 80%를 차지하고 있어 기관운영과 사업운영에 어려움이 많음

〈표 3-4〉 전북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기관명	개소일	운영법인	소재지	관할구역	직원 (계약직)	신고건수	
						2015년	2016년
중부	2000년	굿네이버스	전주	전주, 정읍, 진안, 완주	14명	514건	855건
서부	2004년		익산	익산, 김제, 부안, 고창	15명	555건	811건
동부	2006년		남원	남원, 순창, 임실, 장수, 무주	10명	259건	340건
분소	2018년		군산	군산	-	-	-

자료: 2017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2016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바탕으로 전북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업무량 현황을 살펴보면, 상담원 1인당 실질 연간 가용 근무시간(Lyc)은 1인당 연간 가용 기본근무시간(Ly)에서 상담원 1인당 연 평균 업무손실 등을 차감하여 재산정한 실질적인 업무 가능 시간으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경우 약 231일(1,851시간), 임상 심리치료전문 인력은 약 231일(1,852시간)인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연간 업무처리 소요시간(Hp=T) 및 1인당 실질 연간 가용 근무시간(Lyc)을 적용하여 현실 타당한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적정 인력규모를 추정한 결과, 2016년 기준 전북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담원 적정인원은 약 75명으로 나타났고, 임상 심리치료전문인력의 경우 약 17명이 치료업무 수행에 필요했던 것으로 나타남. 즉, 상담원은 44명,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은 14명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음

〈표 3-5〉 전북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업무량

	상담원 수	상담원 총 업무량 (시간)	상담원 1인당 실질 가용시간	상담원 표준모형 적정 인원수	상근 임상심리치료 인력수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총 업무량(시간)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인당 실질 가용시간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표준모형 적정인원수
전북중부	12	35,491	1,961	18.1	1	11,663	1,852	6.3
전북서부	11	47,106	1,961	24.0	1	11,675	1,852	6.3
전북동부	8	65,553	1,961	33.4	1	8,422	1,852	4.5
소계	31	148,150		75.6	3	31,759		17.1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 학대 피해아동 쉼터 현황

- 학대 피해아동 쉼터는 학대 가해자로부터 피해아동을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호하는 곳으로 쉼터에서는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제공, 피해아동 생활지원(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심리검사, 개별심리치료, 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치료), 교육 및 정서지원(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쉼터 종사자는 보육사 3명 이상, 심리치료전문인력 1명 이상 배치해야 하며 보육사 3명 중 1명이 원장 직무를 수행함
- 2016년에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보호한 1,030명의 아동 중 2016년 이전에 입소하여 2016년에도 보호를 받은 아동은 175명(17.0%)이며, 2016년도에 입소한 아동은 855명(83.0%)으로 나타남

- 전국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2017년 8월 기준 5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경기도가 10개소로 가장 많고, 충북과 전남이 6개소로 많았음
- 전라북도는 학대 피해아동 쉼터가 3개소(전주, 익산, 남원)가 설치되어 있으나, 특정 성별로 입소가 제한됨. 즉, 피해아동의 성별과 쉼터 입소아동 성별 기준이 다를 경우 입소가 불가능하며, 특히 영아와 장애아동을 위한 쉼터는 전무한 실정임

〈표 3-6〉 전국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현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015	0	3	2	0	1	2	1	8	3	5	1	3	5	2	2	2	40
2017	0	4	2	2	2	2	2	10	4	6	3	3	6	4	3	2	55

자료: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3) 가정위탁지원센터

- 보건복지부는 부모의 질병, 가출, 이혼, 학대, 사망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위탁부모를 발굴·연계하고,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요보호 아동 및 위탁부모에게 상담·치료, 교육을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수행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정위탁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지정한 전문기관임
- 아동학대로 인해 친부모로부터 분리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치료의 목적을 가지며, 영구적인 양육환경이 제공되기 전까지 위탁양육을 실시함
- 전북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는 2003년 개소하였으며, 현재 2017년 세이브 더칠드런에서 위탁운영 중임. 조직의 구성은 관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상담원, 자립전담요원, 심리치료사, 사무원 등)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교육지원, 홍보지원, 운영지원 3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사업으로는 일반/예비위탁 부모교육, 전문위탁부모양성, 사례관리, 문화

정서지원 등의 교육사업, 자원개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홍보사업, 자립지
원계획과 교육, 심리검사치료 등의 운영지원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4) 아동복지시설

- 전라북도 아동복지시설 현황(2017)을 살펴보면, 양육시설 14개소, 자립
지원시설 1개소, 보호치료시설 1개소, 그룹홈 42개소, 지역아동센터 286개
소가 설치·운영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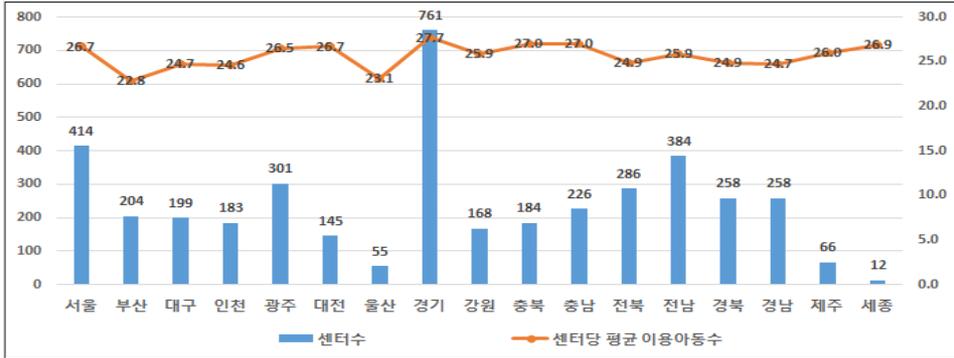
〈표 3-7〉 전북 아동복지시설 현황

	양육시설	자립지원시설	보호치료시설
시설수 (개)	14	1	1
입소자(명)	91명(남:40/여:51)	9	63
퇴소자(명)	149명(남:93/여:56)	9	39
연말현재 생활인원(명)	656명(남:386/여:270)	17	63

자료: 전라북도, 「전라북도 기본통계」.

5) 지역아동센터

-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지역사회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
성을 위해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8호)으로 설치되기 시작하였음. 2004년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 되었으며, 2005년부터 정부지원으로 급속한 양적성장을 이루었음
- 2016년 12월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는 총 4,104개소가 운영 중이며, 센터
당 평균 이용아동 수는 26.0명이었음. 전북의 경우 286개소가 설치·운영
중임. 전주시가 66개소로 가장 많고, 군산시 50개소, 익산시 46개소 순 이
었으며, 1시설 당 이용아동은 부안군이 30명으로 가장 많았음



〈그림 3-1〉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이용현황

〈표 3-8〉 전북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현황(2016년 12월말 기준)

구분	고창	군산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전주	정읍	진안	계
시설수 ^a	6	50	11	25	6	6	3	13	46	6	7	66	29	12	286
이용아동수 ^b	163	1,330	279	514	130	178	62	342	1,055	139	186	1,749	699	302	7,125
b/a	27	27	25	21	22	30	21	26	23	23	27	27	24	25	25

자료: 보건복지부(2017), 전국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 보고서.

6) 드림스타트센터

- 드림스타트 사업은 가족해체와 사회양극화 등의 사회문제에 따라 아동빈곤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아동과 가족에 초점을 둔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표 3-9〉 드림스타트 사업 개요

사업지역	시·군·구
사업대상	0세(임산부) ~ 만12세(초등학생 이하)로 아동 및 가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법정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피해아동 등에 대한 우선 지원
지원내용	가정방문을 통해 인적조사, 욕구조사,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 실시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가족에게 지역자원연계서비스 지원, 모니터링 등
인력구성	전담공무원 및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자료: 보건복지부드림스타트 홈페이지(<https://www.dreamstart.go.kr/>).

- 2015년 12월 기준 전국 230개소가 운영 중이며, 전북의 경우 2007년 정읍시 설치를 시작으로 2008년(완주), 2009년(고창/부안), 2010년(남원/군산/전주), 2011년(김제), 2012년(무주/순창/장수/임실/진안/익산) 등 14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음

〈표 3-10〉 전국 드림스타트 설치 현황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230	25	16	8	10	5	5	5	31	18	12	15	14	22	23	18	2	1

자료: 보건복지부드림스타트 홈페이지(<https://www.dreamstart.go.kr/>).

7) 전북지역 경찰서 내 학대전담 경찰(APO) 배치 현황²⁾

- 학대 예방 경찰관(Anti-abuse Police Officer: APO)은 2014년 3월 138명의 발대로 경찰서 중심으로 배치되기 시작함. 2015년 2월에 다시 여성·청소년수사과에서 전담하여 수사하는 체제로 변경됨
- 학대전담경찰관(APO)은 가정폭력과 함께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 학대 및 폭력에 대한 방비, 수사 및 수사연계, 사후관리 등을 총괄하여 폭력과 학대 관련 전반에 대한 현장조사 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체계
- 2017년 12월 여성·청소년수사과의 현원은 3,049명이며 이중 APO는 334명(정원 200명)으로 운영 중에 있음

〈표 3-11〉 전국 학대전담경찰과 배치 현황(2017년 12월 기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정원	30	15	10	9	5	6	4	42	9	9	12	9	11	12	14	3	200
현원	85	20	18	19	10	14	10	67	11	10	9	19	10	11	16	5	334

자료: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제출자료. 2018.

2) 조은주(2018).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8) 기타 유관기관

- 그 밖에 기타 유관기관을 살펴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전라북도에 총 7기관(전주/군산/익산/완주/남원/정읍/무주)이 설치·운영 중이며 이 중 완주/남원/정읍/무주 지역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통합 운영되고 있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전북지역 14개 시·군에 설치·운영되고 있음
- 한편, 정신보건 관련해서는 전북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를 비롯한 정신건강증진(복지)센터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부안 등에 설치·운영되고 있음
- 중독관리통합지원과 관련해서는 알코올·도박·인터넷·니코틴·약물 관련 중독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을 실시하며, 전국에 총 49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이 중 전북의 경우 전주시와 군산시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중독재활시설은 전주(7개소), 군산(2개소), 익산(4개소), 정읍·김제·남원·완주·임실·진안·장수 각각 1개소에 주거, 이용, 입소, 이용/입소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표 3-12〉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현황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187	26	10	8	9	5	2	5	32	18	7	12	7	17	12	14	2	1

자료: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familynet.or.kr/index.jsp>).

〈표 3-13〉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현황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218	24	9	7	9	4	5	5	30	18	12	14	14	21	23	20	2	1

자료: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홈페이지(<https://www.liveinkorea.kr/portal/KOR/centerIntro/centerList.do>).

〈표 3-14〉 전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현황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9	4	4	2	4	5	3	2	7	3	1	2	2	2	2	4	2

자료: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홈페이지(<https://www.liveinkorea.kr/portal/KOR/centerIntro/centerList.do>).

제 2 절 전북 아동학대 관련 지역사회 특성

가. 전북 시·군별 아동현황

1) 지역별·연도별 아동인구 및 아동인구 추이

- 전라북도 지역별 만 18세 미만의 아동인구 수를 살펴보면, 2017년 12월 기준으로 총 302,482명으로 이는 전체 인구의 16.3%임. 시군별로는 전주시가 119,09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는 전북아동인구의 39.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아동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은 장수군이 2,859명으로 가장 적었고, 전체인구 대비 아동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임실군(11.4%), 부안군·진안군(11.7%) 이었음

〈표 3-15〉 전북 지역별 아동인구

구분	전체인구 수(A)	아동인구 수(B)	아동인구 비율 (B/A*100)
전북 중부	884,986	154,753	17.5
전주시완산구	359,012	63,922	17.8
전주시덕진구	289,952	55,169	19.0
정읍시	113,776	16,358	14.4
진안군	26,271	3,071	11.7
완주군	95,975	16,233	16.9
전북 서부	778,668	122,219	15.7
익산시	300,187	49,150	16.4
군산시	274,997	48,168	17.5
김제시	86,926	10,916	12.6
부안군	56,086	6,551	11.7
고창군	60,472	7,434	12.3
전북 동부	190,953	25,510	13.4
남원시	83,281	12,317	14.8
순창군	29,698	3,888	13.1
임실군	30,162	3,433	11.4
무주군	24,809	3,013	12.1
장수군	23,003	2,859	12.4
소계	1,854,607	302,482	16.3

주 : 아동인구 수 = 0~17세 아동인구 수.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17년 12월 기준임.

- 다음으로, 전라북도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인구는 2017년 12월 기준 302,482명으로 전국 아동 수의 3.57%이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북 아동인구에 대한 변화 추이(2011년~2017년)를 살펴보면, 매년 아동의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감소폭은 전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표 3-16〉 전국과 전북의 연도별 아동인구 및 추이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아동인구	전국	9,921,012	9,691,876	9,431,699	9,186,841	8,961,805	8,736,051	8,480,447
	전북	369,200	359,087	347,912	336,820	326,202	315,083	302,482
	비율	3.72	3.71	3.69	3.67	3.64	3.61	3.57
아동수 변화량	전국	-	Δ229,136 (Δ2.3)	Δ260,177 (Δ2.7)	Δ244,858 (Δ2.6)	Δ225,036 (Δ2.4)	Δ225,754 (Δ2.5)	Δ255,604 (Δ2.9)
	전북	-	Δ10,113 (Δ2.7)	Δ11,175 (Δ3.1)	Δ11,092 (Δ3.2)	Δ10,618 (Δ3.2)	Δ11,119 (Δ3.4)	Δ12,601 (Δ4.0)

주 : 아동인구 수 = 0~17세 아동인구 수.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년도 12월말 기준임.

2) 전북 아동인구 및 아동학대 발생 관련 현황

- 최근 6년간의 전라북도 아동학대 현황을 아동인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관련하여 연도별로 살펴보면, 신고건수는 연 평균(2011~2016년) 29.0%의 증가율을 보이며,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되는 비율 또한 연 평균 34.5%씩 증가하고 있음
- 전국 평균 신고건수 대비 전라북도 신고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기준 6.8%이며 2015년부터 감소추세임. 아동학대 사례로 최종 판정되는 비율은 7.7%로 나타났으며, 2013~2014년 정점을 기록한 후 감소하였음. 그러나 전라북도 내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6년 이후 출공 3곳이며, 현재의 인력과 예산으로는 충분한 현장조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음

〈표 3-17〉 전북 연도별 아동학대 발생 관련 추이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국	아동인구	9,921,012	9,691,876	9,431,699	9,186,841	8,961,805	8,736,051
	신고	10,146	10,943	13,076	17,791	19,214	29,674
	학대사례	6,058	6,403	6,796	10,027	11,715	18,700
	아보전 기관	44	46	51	51	56	59
전북	아동인구	369,200	359,087	347,912	336,820	326,202	315,083
	신고	630(6.2%)	635(5.8%)	965(7.4%)	1,434(8.1%)	1,328(6.9%)	2,006(6.8%)
	학대사례	367(6.1%)	400(6.2%)	641(9.4%)	932(9.3%)	889(7.6%)	1,446(7.7%)
	아보전 기관	3(6.8%)	3(6.5%)	3(5.9%)	3(5.9%)	3(5.4%)	3(5.1%)

주 : 아동인구 수 = 0-17세 아동인구 수.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년도 12월말 기준임.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각년도.

나. 전북의 아동권리 수준

1) 전북 아동권리 지수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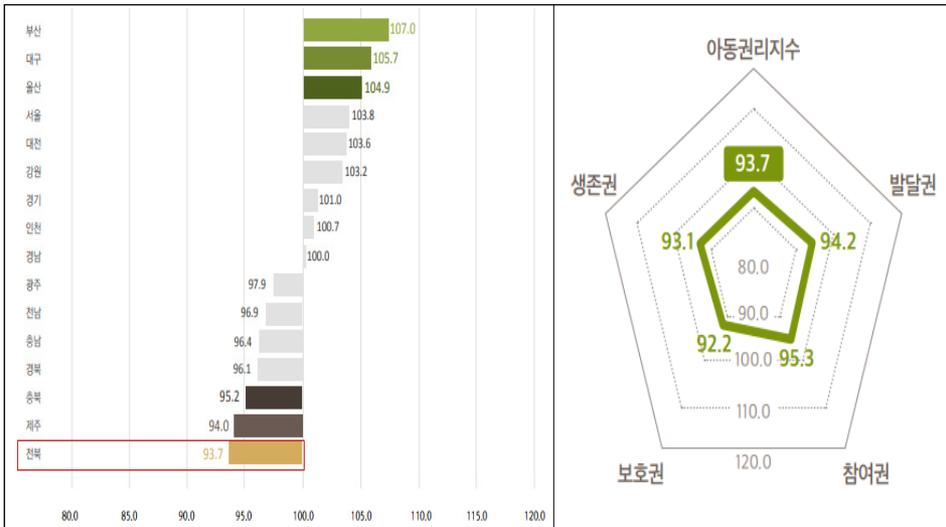
- 2016년 굿네이버스는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보장수준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함
- 아동권리지수 연구는 16개 시·도 초4·초6·중2 아동 및 부모(보호자) 각 8,915명(총 17,830명)을 대상으로 수행했으며 이중 전라북도 아동과 부모 353명이 참여함
- 16개 시·도의 아동권리 지수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대도시로 구성된 광역시와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을 포함한 광역자치도 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음. 이는 종합적인 아동권리 지수 뿐 아니라 아동권리의 각 영역별 지수(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들도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같은 양상을 보임
- 종합적인 아동권리 지수(2016)⁴⁾는 부산이 107점으로 시·도 중 가장 높은

3) 아동권리 이슈포커스 6호(2016. 12)_‘대한민국 아동권리의 현주소’내용 참조하여 작성

4) 아동권리 지수 : 아동의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아동이 기본적으로 노려야

점수를 받아 1위를 하였으며, 2위 대구, 3위 울산, 4위 서울, 5위 대전으로 나타났고, 6위에서 10위 지역은 강원, 경기, 인천, 경남, 광주였으며 11위에서 16위의 하위권에는 전남, 충남, 경북, 충북, 제주, 전북이 속하였음. 이중 전북은 16개 시·도중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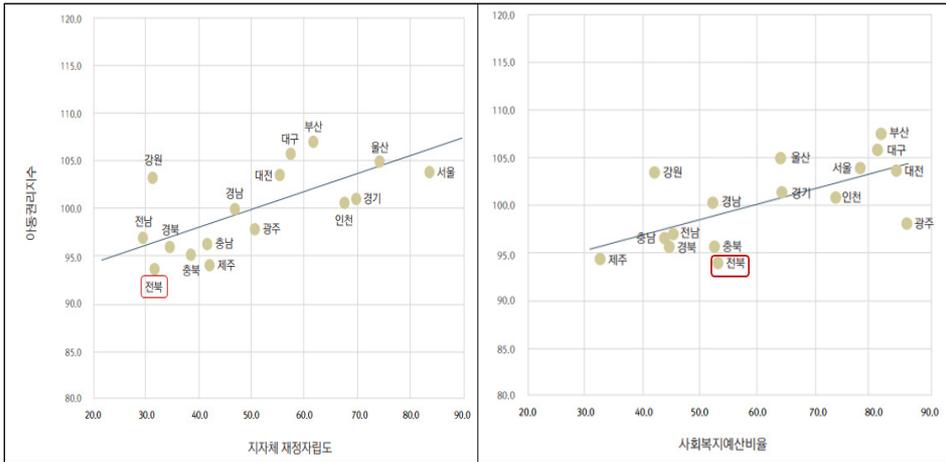
- 전라북도의 아동권리 지수는 93.7로 16개 시·도 중 최하위이며, 하위 영역 별로 살펴보면 참정권, 발달권, 생존권, 보호권 모두 평균 이하로 나타남
- 아동권리 지수가 지역별로 격차를 보이는 원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및 사회복지예산비율, 교육재정자립도 등의 상관관계를 통해 찾아볼 수 있음. 즉, 지역사회의 경제적 환경인 사회복지 예산비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아동의 권리 지수도 함께 높아짐을 알 수 있었음. 이런 결과는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는 아동관련 예산 확보와 다양한 아동복지정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함



〈그림 3-2〉 시도별 아동권리 지수 및 전라북도 영역별 아동권리 지수

- 할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측정해 지수로 산출한 것.
- 100점을 평균으로 변환하여 100점 이상은 아동권리수준이 평균 혹은 평균보다 높음 /
 - 100점미만은 아동권리수준이 평균보다 낮다고 해석

- 아동권리 지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및 사회복지 예산 비중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임. 즉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높을수록 아동권리 지수와 아동 삶의 질 지수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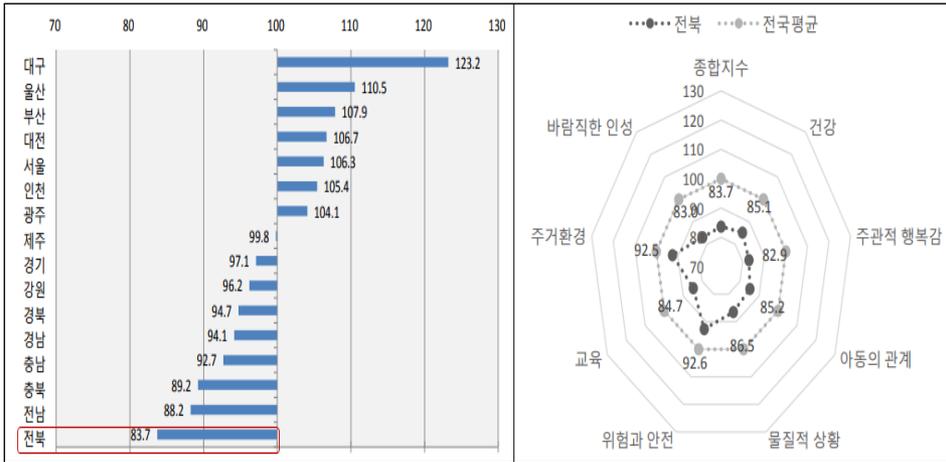
〈그림 3-3〉 시도별 아동권리지수와 지자체 재정자립도·사회복지예산비율 간의 상관

2) 전북 아동 삶의 질⁵⁾

- 아동 삶의 질 연구는 국제 아동지표 학자들의 모임인 Children's Worlds 에서 수행하는 International Survey of Children's Well-Being 연구의 일환으로 한국에서는 세이브더칠드런이 맡아 진행함
- 아동 삶의 질 지수(2015)는 건강, 주관적 행복감, 아동의 관계, 물질적 상황, 위험과 안전, 교육, 주거환경, 바람직한 인성 등의 8개 영역, 46개 지표를 이용해 산출한 것으로 전국 16개 시도의 초3, 초5, 중1 아동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총 8,685명이 조사됨
- 먼저, 아동의 삶의 질 지수를 16개 시도별로 비교한 결과, 2015년 기준 대구가 123.23점으로 1위인 반면, 전북은 83.71점으로 16위 최하위임. 아동 삶의 질 지수가 8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하위영역도 유사하게 평균

5) 이봉주, 김선숙, 안재진, 유조안, 유민상, 최창용, 이주연, 김윤지, 박호준(2016). 한국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 세이브더칠드런,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점수 이하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또한, 전북 아동 삶의 질 지수를 연도 별로 살펴보면, 16개 시·도 중 2012년 15위, 2013년 13위, 2015년 16위로 3년의 기간 동안 최하위에 머물러 있음



〈그림 3-4〉 시도별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 및 전라북도 영역별 아동 삶의 질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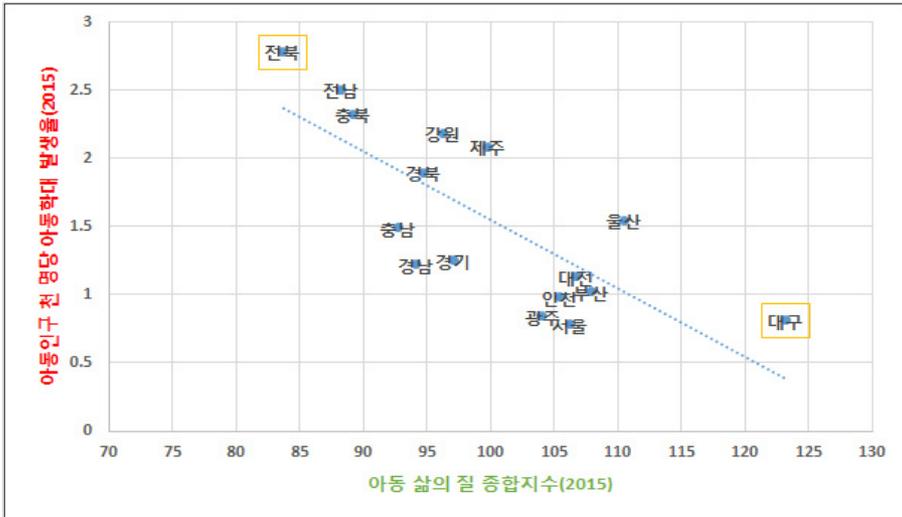
〈표 3-18〉 시도별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 순위

No	지역	종합 지수	건강	주관적 행복감	아동의 관계	물질적 상황	위험과 안전	교육	주거 환경	인성
1	대구	123.23	1	1	1	1	1	1	1	1
2	울산	110.52	6	3	2	2	12	7	3	2
3	부산	107.86	3	2	3	8	6	6	5	3
4	대전	106.69	7	7	8	3	3	3	8	6
5	서울	106.31	4	8	4	4	8	2	9	4
6	인천	105.41	8	4	6	6	4	9	4	5
7	광주	104.09	11	5	5	5	2	5	11	7
8	제주	99.81	14	6	7	13	13	4	7	8
9	경기	97.12	10	10	9	9	10	10	10	9
10	강원	96.21	2	9	11	10	5	13	16	10
11	경북	94.73	9	12	13	7	9	12	13	12
12	경남	94.15	13	11	14	12	11	11	6	14
13	충남	92.69	16	14	12	11	14	8	14	11
14	충북	89.24	5	13	15	14	7	16	15	15
15	전남	88.24	12	15	10	16	16	15	2	13
16	전북	83.71	15	16	16	15	15	14	12	16

자료: 이봉주 외(2016), 「한국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3) 전북 아동학대 발생과 아동권리 지수·아동 삶의 질과의 관계

- 아동 권리지수와 삶의 질은 아동학대 발생률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임.
즉, 아동 삶의 질과 권리지수가 높은 지역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 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수가 낮은 경향이 나타남



〈그림 3-5〉 피해아동 발견율(아동인구 천명당)과 아동 삶의 질 간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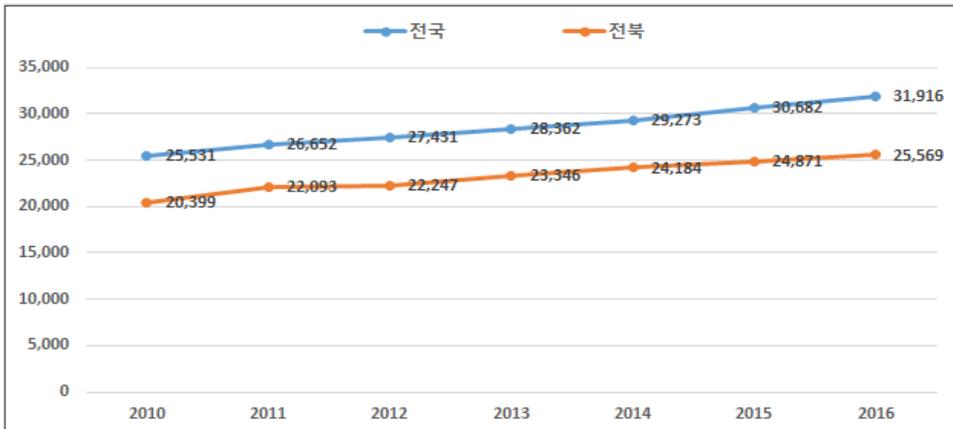


〈그림 3-6〉 피해아동 발견율(아동인구 천명당)과 아동권리 지수 간의 관계

다. 전북의 경제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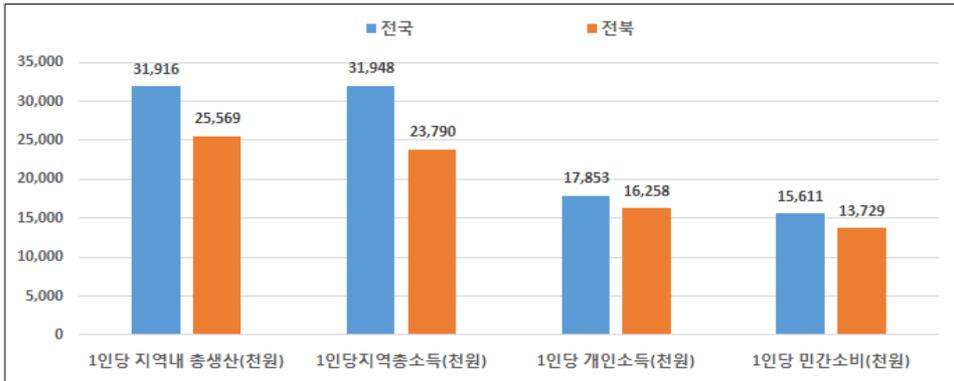
1) 1인당 지역 내 총생산(GRDP)

- 지역내총생산(GRDP)은 일정기간 일정지역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를 합한 시도 단위의 종합경제지표로서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가와 관계없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는 모두 계산되어 반영됨. 본 지표는 지역경제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통계라는 점에서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유용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음. 지역내총생산이 낮으면 그 지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지역내총생산을 지역 총인구로 나눈 1인당 전북지역내총생산은 줄곧 전국평균보다 낮았으며, 2016년 25,569(천원)으로 16개 시도 중 12위로 경제적 상태가 낮은 지역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7) 전북 연도별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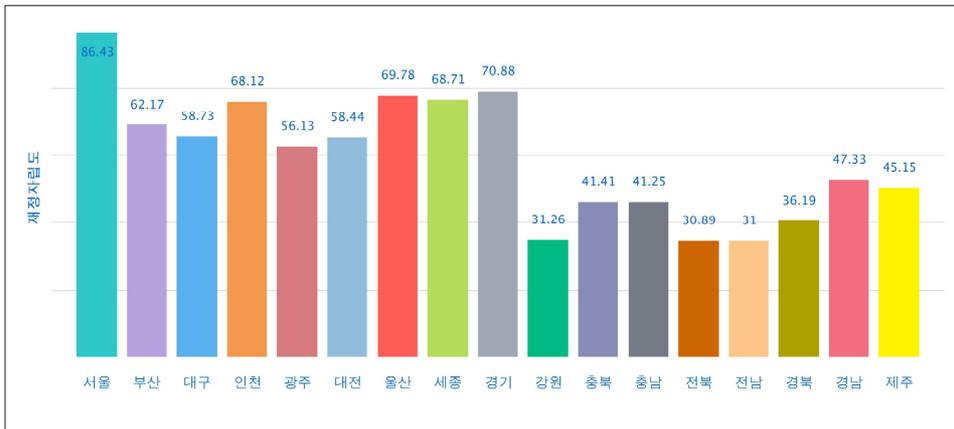
- 좀 더 구체적으로 전북의 2016년 1인당 지역총소득개인소득민간소비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평균보다 낮게 나타나며, 16개 시도 중에서 생산과 소득 그리고 소비 모두 하위권으로 분류되었음



〈그림 3-8〉 전북 2016년 지역소득 현황

2) 재정자립도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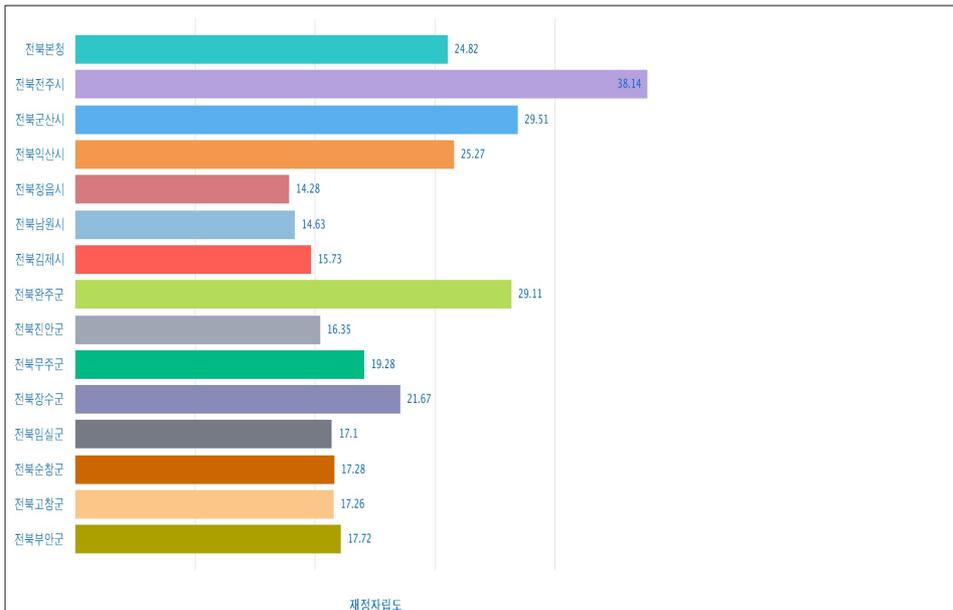
- 재정자립도의 활용은 재정지표상 다른 단체에 비하여 재정구조가 취약하거나 자구노력 등 정도가 미흡한 경우, 이의 개선을 위한 동기와 재정개선 목표 설정에 직·간접적 기준으로서 지방재정이 발전적으로 운영되도록 활용함



〈그림 3-9〉 시·도별 2016년 재정자립도 현황

- 6) ▶ 산정기준 = 일반회계, 결산.
- 전국평균 및 시도별 평균: 순계 기준
 - 자치단체: 총계기준
 - ▶ 산정공식 = $(\text{자체수입} \div \text{자치단체 세입결산규모}) \times 100(\%)$
 - 자체수입: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세외수입
 - 자치단체 세입결산규모: 자체수입 +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 + 지방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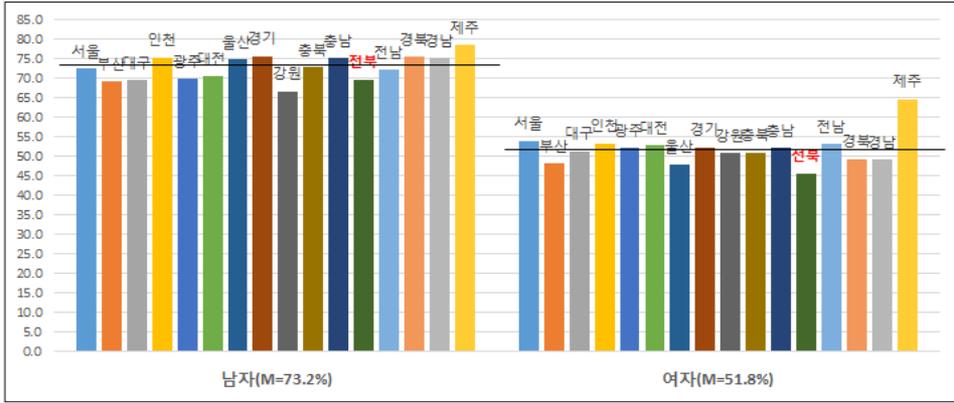
- 전북의 재정자립도의 경우, 2016년(결산) 기준 30.89%로 가장 낮게 나타남. 시·군별로는 전주시가 38.14%로 가장 높았고, 정읍시가 14.28%로 가장 낮았으며, 군 단위에서는 완주군이 29.1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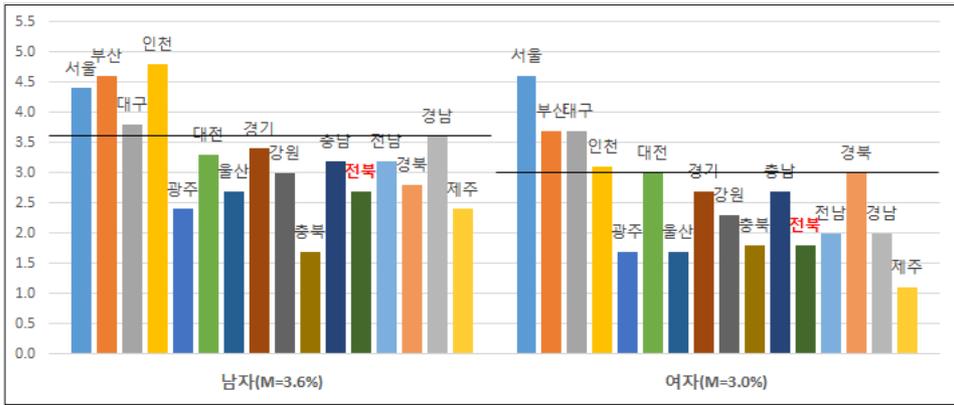
〈그림 3-10〉 전북 시군별 2016년 재정자립도 현황

3) 경제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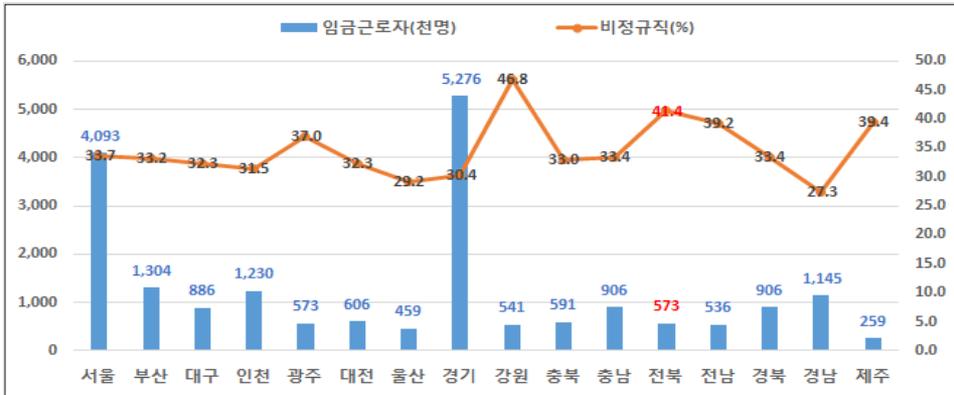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7)」를 통해 전북의 경제활동 상태를 살펴보면, 경제활동참가율(12월 기준)은 남성의 경우 72.1%로 전국평균(73.2%)보다 낮고, 여성은 53.1%로 전국평균(51.8%)보다 높게 나타남. 실업률(12월 기준)은 남성의 경우 3.2%로 전국평균(3.6%)보다 낮고, 여성 역시 2.0%로 전국평균(3.0%)보다 낮았음
- 한편, 전북의 임금근로자는 573천명으로 전국 임금근로자의 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8월 기준)는 41.4%로 강원도(46.8%)에 이어 2번째로 높게 나타남



〈그림 3-11〉 사도별 경제활동참가율



〈그림 3-12〉 사도별 실업률



〈그림 3-13〉 사도별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라. 전북의 복지환경적 특성

1)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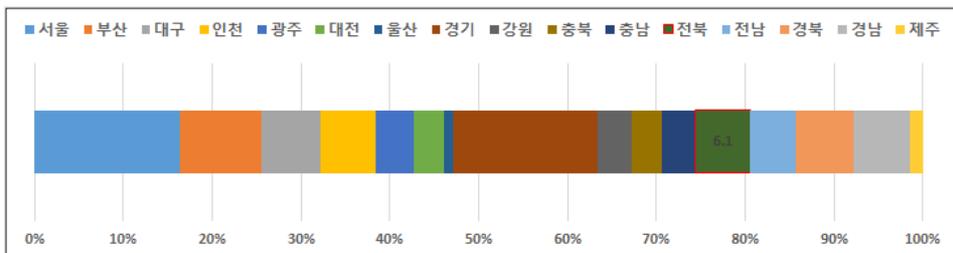
- 지역별 인구 대비 기초생활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전북은 2010년 5.9%에서 2016년 5.3%로 0.6%p 감소하였음. 그러나 2016년 기준 전국 평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3.2%로 전라북도에는 이에 2.1%p가 더 높은 5.3%(99,708명)를 나타냄
- 전북의 지역별 인구 대비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은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법정 빈곤인구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음

〈표 3-19〉 시·도별 인구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0	3.1	2.1	4.1	4.3	2.7	4.5	3.2	1.7	1.8	4.3	3.7	3.5	5.9	5.5	4.6	3.2	4.3
2011	2.9	2.0	4.0	4.2	2.6	4.3	3.1	1.5	1.7	4.1	3.4	3.2	5.5	5.0	4.2	3.0	4.1
2012	2.7	2.0	3.8	4.0	2.5	4.2	3.0	1.4	1.6	3.8	3.2	2.9	5.1	4.6	3.9	2.8	3.8
2013	2.6	2.0	3.7	3.9	2.5	4.1	2.9	1.3	1.5	3.6	2.9	2.7	4.8	4.2	3.7	2.7	3.6
2014	2.6	3.6	3.8	2.5	4.0	2.8	1.3	2.1	1.5	3.6	2.8	2.6	4.6	4.0	3.5	2.6	3.3
2015	3.2	2.6	4.3	4.5	3.3	4.9	3.6	1.8	2.1	4.1	3.5	3.1	5.5	4.6	4.1	3.2	3.9
2016	3.2	2.7	4.3	4.3	3.4	4.7	3.6	1.6	2.1	4.0	3.4	3.0	5.3	4.4	3.9	3.1	3.6

주 : 수급률 = (지역의 수급자수/지역의 주민등록인구통계)X100.
 자료: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각년도.

- 한편, 2016년 전국 기초생활수급자는 1,626,328명(세종 제외)이며, 이 중 전북의 구성비는 6.1%(99,708명)였음



〈그림 3-14〉 전국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역별 분포

2) 차상위 계층 비율

- 전북의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차상위 계층 인구(최저생계비 120%)를 살펴보면, 2015년 12월 기준으로 7,251명이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는 전국(127,217명)의 5.7%에 해당됨

〈표 3-20〉 시·도별 우선돌봄 차상위수급자 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30,013	30,398	30,816	30,785	29,948	28,994	28,902	28,733	28,655	28,528	28,222	26,487
부산	10,073	10,219	10,177	9,901	9,415	9,032	9,004	8,874	8,979	9,012	8,896	8,483
대구	4,691	4,716	4,675	4,440	4,044	3,854	3,830	3,999	3,978	4,051	4,073	3,932
인천	8,245	8,339	8,438	8,358	7,728	7,282	7,222	7,114	7,059	6,996	6,950	6,542
광주	4,822	4,893	4,794	4,568	4,373	4,121	4,050	4,020	3,979	3,959	3,904	3,676
대전	3,709	3,726	3,723	3,590	3,331	3,218	3,186	3,165	3,161	3,152	3,156	2,934
울산	1,786	1,88	1,784	1,710	1,581	1,555	1,529	1,536	1,538	1,538	1,503	1,431
세종	259	272	277	274	262	248	249	241	242	247	250	240
경기	18,391	18,638	18,869	18,507	17,609	16,449	16,400	16,256	16,246	16,201	16,044	14,946
강원	6,998	7,071	6,968	6,862	6,261	6,033	5,993	6,098	6,059	6,012	5,908	5,628
충북	5,718	5,761	5,689	5,360	5,068	4,901	4,837	4,789	4,754	4,756	4,621	4,609
충남	9,379	9,414	9,415	9,240	8,336	8,093	8,107	8,139	8,125	8,113	8,070	7,735
전북	8,521	8,586	8,491	8,383	7,983	7,743	7,706	7,641	7,584	7,529	7,431	7,251
전남	13,452	13,539	13,320	13,153	12,653	11,935	11,924	11,884	11,805	11,739	11,595	11,348
경북	13,179	13,259	13,193	12,881	12,290	11,477	11,521	12,072	12,161	12,096	12,010	11,771
경남	10,977	11,066	11,042	10,727	10,010	9,454	9,588	9,679	9,649	9,638	9,440	9,079
제주	1,280	1,277	1,238	1,184	1,184	1,159	1,105	1,128	1,127	1,164	1,151	1,125
계	151,493	152,899	152,909	149,923	142,076	135,548	135,153	135,368	135,101	134,731	133,224	127,217

자료: 보건복지부(2016).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마. 전북의 가족환경적 특성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에 의하면, 아동학대 행위자의 특성으로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19.0%), 부부가족갈등(11.0%) 등이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류하였음. 즉, 이혼/재혼이나 한부모 등

가족구조 요인(엄미선·정동일, 2006; 정선영, 2016; Sedlak et al., 2010), 그리고 부모의 스트레스와 같은 특성(박명숙, 2002; 이재연·한지숙, 2003) 등이 아동방임 및 학대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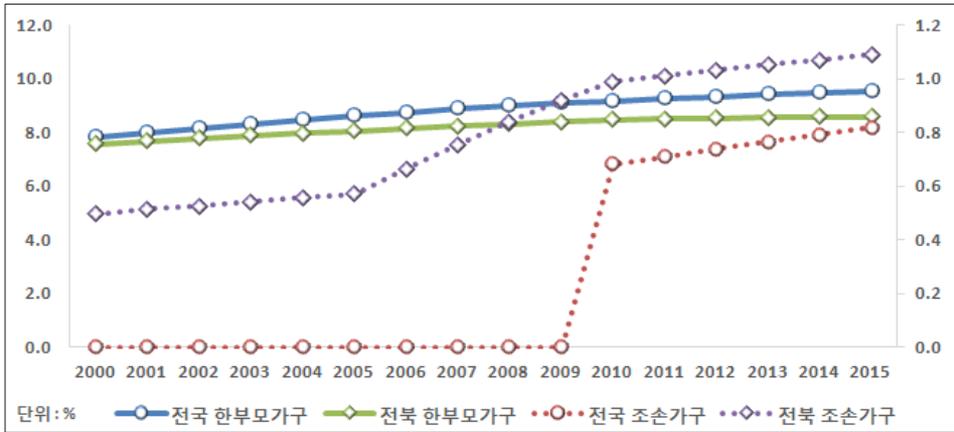
1) 한부모 및 조손 가족

- 전라북도의 「2016 사회조사」에 의하면, 2015년 한부모가구는 60,174가구, 조손가구는 7,644가구로 나타남
 - 한부모가구는 60,174가구로 전년(59,519가구)대비 1.1% 증가하였고, 조손가구는 7,644가구로 전년(7,431가구)대비 2.9%p 증가
 - 전국의 한부모가구(1,783,882명)와 조손가구(152,991명)는 전년대비 각각 1.9%p, 4.7%p 증가

〈표 3-21〉 전북 한부모 및 조손가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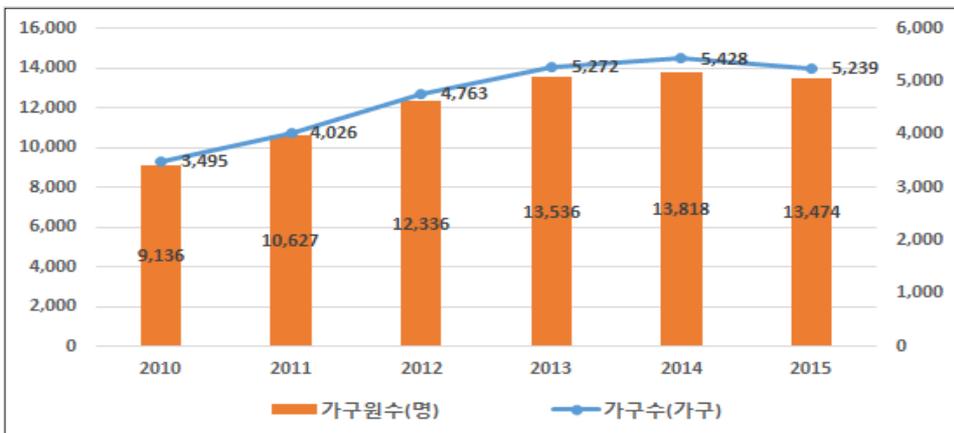
구분		한부모 가구			한부모 가구 구성비		조손가구 수
		계	부+자녀	모+자녀	부+자녀	모+자녀	
2010	전국	1,594,624	347,117	1,247,507	21.8	78.2	118,527
	전북	55,825	11,893	43,932	21.3	78.7	6,536
2011	전국	1,638,537	360,503	1,278,034	22.0	78.0	125,745
	전북	56,989	12,312	44,677	21.6	78.4	6,791
2012	전국	1,677,415	372,938	1,304,477	22.2	77.8	132,515
	전북	57,974	12,703	45,271	21.9	78.1	7,017
2013	전국	1,714,419	385,222	1,329,197	22.5	77.5	139,346
	전북	58,776	13,056	45,720	22.2	77.8	7,230
2014	전국	1,749,969	397,452	1,352,517	22.7	77.3	146,167
	전북	59,519	13,398	46,121	22.5	77.5	7,431
2015	전국	1,783,882	409,532	1,374,350	23.0	77.0	152,992
	전북	60,174	13,735	46,439	22.8	77.2	7,644

자료 : 전라북도, 「2016 사회조사」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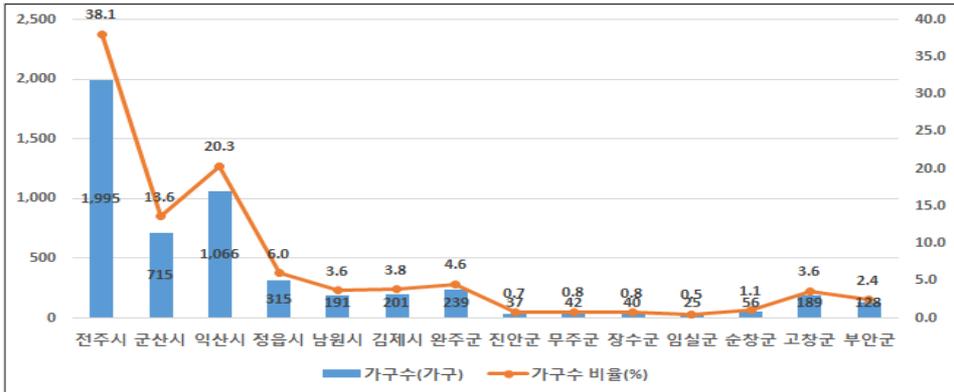


〈그림 3-15〉 전북 한부모 및 조손가구 현황

- 전북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수급자 추이(전라북도, 「전라북도 기본통계」)를 보면 2014-2015년도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냄
- 이를 시군별로 살펴보면(2015년 기준), 전주시와 익산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고창군과 부안군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그림 3-16〉 전북 한부모가족지원법 수급자 추이



〈그림 3-17〉 전북 시·군별 한부모가족지원법 수급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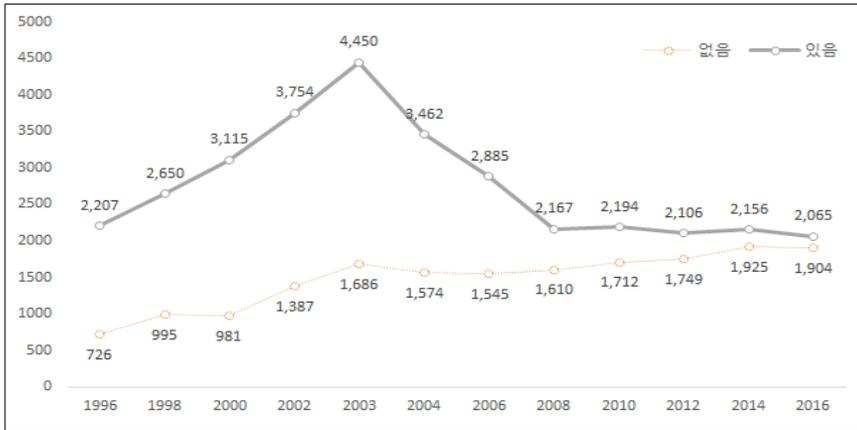
2) 미성년 자녀 유무별 이혼 현황

- 이혼당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 이혼 비중은 1996년 75.2%에서 2016년 51.9%로 감소하였으나, 이혼건수에 있어서는 1996년 2,207건, 2016년 2,065건으로 그 차이는 142건으로 작음
- 이혼이 가장 많았던 2003년에는 최소 4,400명 이상의 미성년자녀가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6년에는 최소 2,000명 이상의 미성년자녀가 부모의 이혼을 곁에서 함께 경험한 것으로 보임. 1996년부터 2016년까지 미성년자녀 최소 2,000명 이상 최대 4,400명 이상이 매년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22〉 전북 미성년자녀 유무별 이혼건수 현황

	1996	1998	2000	2002	2003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계	2,933	4,145	4,200	5,179	6,295	5,086	4,448	3,784	3,910	3,856	4,091	3,979(100.0)
미성년자녀 없음	726	995	981	1,387	1,686	1,574	1,545	1,610	1,712	1,749	1,925	1,904(47.9)
미성년자녀 있음	2,207	2,650	3,115	3,754	4,450	3,462	2,885	2,167	2,194	2,106	2,156	2,065(51.9)
- 1명	803	1,156	1,205	1,438	1,579	1,318	1,144	871	889	935	1,023	1,000
- 2명	1,137	1,664	1,596	1,878	2,332	1,725	1,428	1,023	1,044	945	919	836
- 3명 이상	267	330	315	438	539	419	313	273	261	226	214	229
미상	0	0	103	38	159	50	18	7	4	1	10	10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이혼통계)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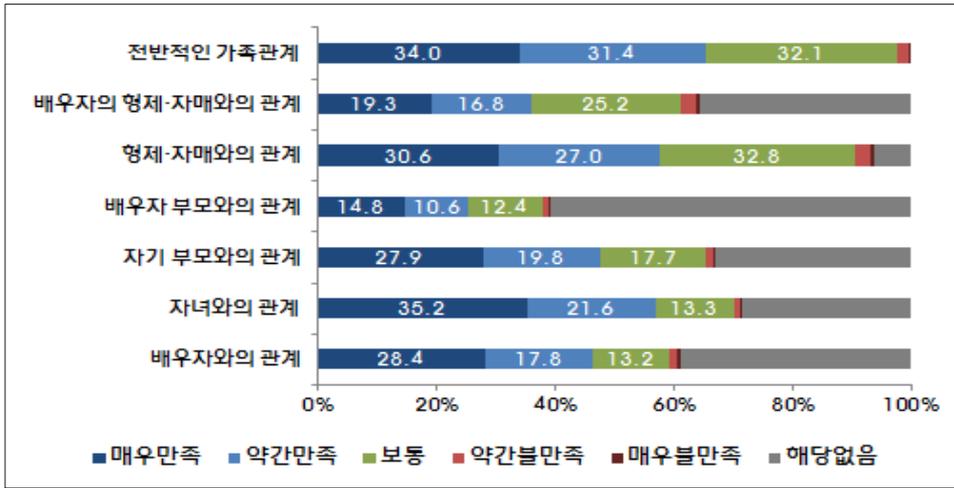


〈그림 3-18〉 전북 연도별 미성년자녀 부모의 이혼건수

3) 가족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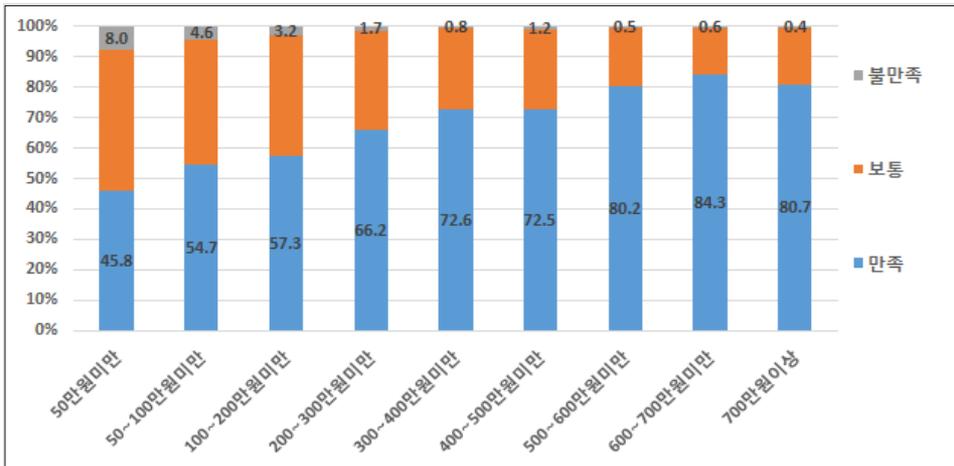
○ 2016년 전라북도 사회조사(전북연구원, 2016)에 의하면, 2016년을 기준으로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는 65.4%가 만족(매우+약간)으로 나타났고, 32.1%(보통), 2.5%가 불만족(매우+약간)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배우자와의 관계 : 만족 75.6%, 불만족 2.7%
- 자녀와의 관계 : 만족 79.2%, 불만족 2.2%
- 자기 부모와의 관계 : 만족 71.3%, 불만족 2.2%
-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 만족 64.6%, 불만족 3.8%
- 형제·자매와의 관계 : 만족 61.5%, 불만족 3.5%
- 배우자의 형제·자매와의 관계 : 만족 55.9%, 불만족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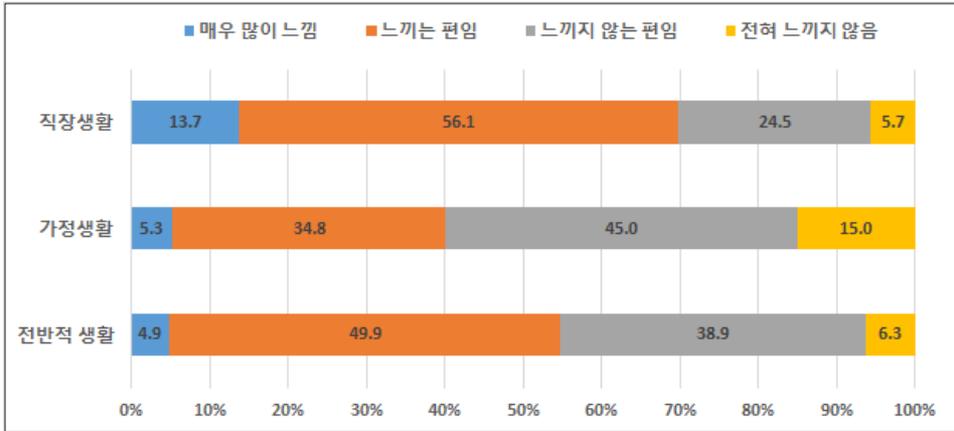
〈그림 3-19〉 전북 가족관계 만족도

- 한편, 전북의 전반적 가족관계 만족도에 대해 소득구간별로 살펴보면,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일 때 불만족 비율이 8.0%로 가장 높았으며, 700만 원 이상일 때 0.4%로 가장 낮게 나타남. 즉,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불만족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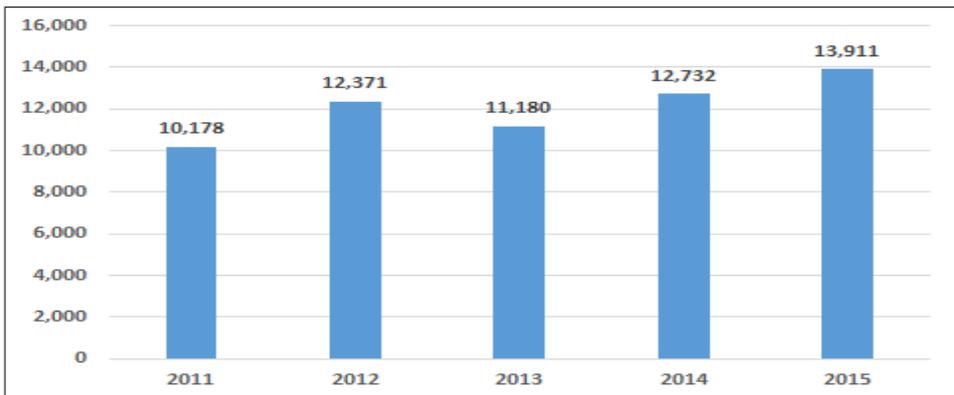
〈그림 3-20〉 전북 소득구간별 전반적 가족관계 만족도

- 전북 성인지 통계(조경욱정유리, 2017)에 따르면, 2016년을 기준으로 상황별 스트레스 정도는 직장생활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항목에서 응답자의 약 40%이상이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1〉 전북 상황별 스트레스 정도

- 전북 성인지 통계(조경욱정유리, 2017)에 따르면, 여성폭력 상담건수는 2015년 13,911건으로 2011년(10,178건) 대비 14.2%p 증가하였으며, 2015년 전체 여성폭력 관련 상담에서 가정폭력 상담이 차지하는 비율은 61.0%로 나타남



〈그림 3-22〉 전북 가정폭력 상담건수

제 3 절 소결

본 장에서는 전라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전북지역 내 관련 자원현황 및 지역사회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이를 위해, 아동학대 관련 조례를 시·군별로 검토하였고,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쉼터와 유관기관 현황, 아동인구와 학대 발생 현황, 전북아동권리수준, 전북의 경제·복지·가족 특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음. 이상에서 주목할 만한 특성을 바탕으로 소결하면 다음과 같음

가. 전북 아동학대 관련 자원현황

- 첫 번째로 시책 수립·시행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조례를 살펴보면, 전라북도는 아동복지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및 치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전라북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2009년 10월 제정하고, 2015년 5월 일부개정을 통해 현재 시행하고 있음. 조례내용에 의하면,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및 치료를 위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및 홍보와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하고, 3일 이상 격리 및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피해아동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및 기타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의료, 심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해야 함. 또한, 시·군구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제4조), 아동학대예방위원회 구성·운영(제7조~11조), 아동학대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제12조), 매년 아동학대예방과 보호 및 치료에 관한 시행계획(아동학대 예방 등에 필요한 시책, 신고의무자 교육 및 홍보, 자원 조달방법, 협력체계 구축관련 사항 등) 수립 시행(제13조) 등이 명시되어 있음
- 이와 같이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및 치료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시·군에서는 아동학대특례법과 관련된 조례는 찾아볼 수 없었음. 조례의 제정 여부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과

의지와 연결되며, 사업의 수행과 성패를 좌우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두 번째로 운영 예산을 보면, 2016년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총 185억원임. 이 중 156억원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29억원은 복권기금으로 구성됨. 이는 예산의 불안전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로의 편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물론 이는 중앙 차원에서의 노력으로 볼 수 있으나, 전북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요구와 노력이 시도될 필요가 있음. 또한, 전북 아동학대 관련 사업비는 2011년 1,087,476천원에서 2016년 1,923,605천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아동학대 관련 사업의 속성상 대부분 인건비로 소요되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 운영과 종사자의 직무안정성으로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세 번째로 아동학대 관련 시설 현황을 보면, 아동학대의 중추적 업무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 62개소(2018년 1월 기준)가 운영되고 있음. 전북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재 총 3개소로 2018년부터는 군산에 분소가 마련될 예정임. 현재 1개소 당 100,827명의 아동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이는 전국에서 5번째로 적은 아동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나,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연간 업무처리 소요시간($H_p = T$) 및 1인당 실질 연간 가용 근무시간(L_{yc})을 적용하여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전북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담원은 44명, 임상심리치료전문 인력은 14명이 부족한 실정임. 이는 전북의 아동학대 발생률이 높고, 사례 관리에 대한 사실상의 종결처리의 어려움에서 기인된 것이라 사료됨. 따라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의 인력 보강 혹은 여의치 않다면 과중한 업무로 인한 신체적·심리적 문제를 감소시켜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 학대피해 아동 쉼터의 경우는 2017년 8월 기준 5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경기도가 10개소로 가장 많았음. 특광역시와 경기도를 제외하고 충북과 전남은 6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반면, 전북의 경우 3개소(전주/익산/남원)에

불과함. 이 기관들은 피해아동의 성별과 쉼터의 성별 기준이 다를 경우 입소가 불가능한 제약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영아와 장애아동을 위한 쉼터는 전문한 실정이라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그 밖에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자립지원시설/보호치료시설), 드림스타트센터, 지역아동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 등이 설치운영되고 있음. 이와 같은 유관기관들의 서비스들이 중복되거나 분절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됨

나. 전북 아동학대 관련 지역사회 특성

- 첫 번째로 전라북도 지역별 만 18세 미만의 아동인구 수를 살펴보면, 2017년 12월 기준으로 총 302,482명으로 이는 전체 인구의 16.3%임. 시군별로는 전주시가 가장 많았고, 이는 전북아동인구의 39.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아동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은 장수군이 2,859명으로 가장 적었고, 전체인구 대비 아동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임실군(11.4%)이었음. 한편, 전북의 아동인구는 2017년 12월 기준 302,482명으로 전국 아동 수의 3.57%이며, 매년 아동의 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감소폭은 전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아동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와는 반대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연 평균(2011~2016년) 29.0%의 증가율을 보이며,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되는 비율 또한 연 평균 34.5%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앞서 기술하였던 바와 같이, 전라북도 내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6년 이후 줄곧 3곳이며, 현재의 인력과 예산으로는 충분한 현장조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음
- 두 번째로 전라북도의 아동권리지수를 보면, 전북은 93.7로 16개 시도 중 최하위이며, 하위영역별 참정권, 발달권, 생존권, 보호권 모두 평균 이하로

나타남. 이러한 권리지수는 지역사회의 경제적 환경인 사회복지 예산비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아동의 권리 지수가 정비례 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는 아동관련 예산 확보와 다양한 아동복지정책 마련이 병행되어야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이와 같은 아동의 삶의 질과 권리지수는 아동학대 발생률과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동 삶의 질과 권리지수가 높은 지역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 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수가 낮은 경향이 나타남. 이는 아동학대를 학대 자체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전북아동의 전반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음
- 세 번째로 전라북도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줄곧 전국평균보다 낮았으며, 2016년 25,569(천원)으로 16개 시도 중 12위로 경제적 상태가 낮은 지역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1인당 지역총소득/개인소득/민간소득 모두 16개 시도 중에서 하위권으로 분류되었음. 재정자립도 역시 2016년(결산) 기준 30.89%로 가장 낮게 나타남. 시군별로는 전주시가 38.14%로 가장 높았고, 정읍시가 14.28%로 가장 낮았으며, 군 단위에서는 완주군이 29.1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경제활동참가율(12월 기준)은 남성의 경우 72.1%로 전국평균(73.2%)보다 낮고, 여성은 53.1%로 전국평균(51.8%)보다 높게 나타남. 실업률(12월 기준)은 남성의 경우 3.2%로 전국평균(3.6%)보다 낮고, 여성 역시 2.0%로 전국평균(3.0%)보다 낮았음. 한편, 전북의 임금근로자는 전국 임금근로자의 2.9%(573천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8월 기준)는 41.4%로 강원도(46.8%)에 이어 2번째로 높게 나타남
- 전국평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2016년 기준으로 3.2%로 나타났으며, 전북은 이보다 2.1%p가 높은 5.3%로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법정 빈곤인구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차상위 계층 비율역시 전국의 5.7%에 해당됨
- 이와 같은 전라북도의 낮은 경제상태와 경제활동참가율, 반대로 높은 실업률,

비정규직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 계층 비율은 아동학대의 주요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음

- 네 번째로 가족환경적 특성의 경우, 전라북도의 「2016 사회조사」에 의하면, 2015년 한부모가구는 60,174가구, 조손가구는 7,644가구로 전년대비 증가하였음. 이를 방증하듯 전북의 2016년 이혼건수는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증감률은 6.0%로 제주에 이어 가장 높게 나타남. 한편, 한부모가족지원법 수급자는 2014-2015년도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전주시와 익산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이러한 가족의 해체와 낮은 경제적 수준은 그만큼 아동학대의 발생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예방과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 시 이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가족관계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불만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고, 개인의 스트레스 정도는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그리고 전반적 생활에서 응답자의 40%이상이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여성폭력 관련 상담에서 가정폭력 상담이 차지하는 비율은 61.0%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
- 이와 같은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환경적 특성은 선행연구들에서 지지되고 있기 때문에, 전북의 가족구조와 스트레스 그리고 사회적 고립 등의 특성에 기반하여 아동학대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

4

장

전북 아동학대 현황 및 예방·보호체계 진단

Jeonbuk Institute

-
- 제 1 절 아동학대 발생현황 및 특성
 - 제 2 절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진단
 - 제 3 절 소결

제 4 장 전북 아동학대 현황 및 예방·보호체계 진단

제 1 절 아동학대 발생현황 및 특성

가. 전북지역 아동학대 발생현황

1) 아동학대 발생 및 학대유형별 현황

- 전국 시·도별 아동학대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아동학대는 총 18,700건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경기도가 4,353건(23.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2,268건(12.1%), 전북 1,446건(7.7%), 전남 1,229건(6.6%), 인천 1,190(6.4%) 등의 순으로 나타남. 전북 아동학대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함

〈표 4-1〉 전국 시도별 아동학대 발생 현황(2016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18,700 (100.0)	2,268	880	736	1,190	346	359	685	4,353
	12.1	4.7	3.9	6.4	1.9	1.9	3.7	23.3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981	948	824	1,446	1,229	1,040	1,139	276
	5.2	5.1	4.4	7.7	6.6	5.6	6.1	1.5

자료: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아동학대 사례 유형 중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중복학대가 8,980건(48.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정서학대 3,588건(19.2%), 방임 2,924건(15.6%), 신체학대 2,715건(14.5%), 성학대 493건(2.6%) 순으로 나타남. 즉, 실제 아동학대가 발생할 때 한 가지 학대유형 보다는 두 가지 유형 이상의 학대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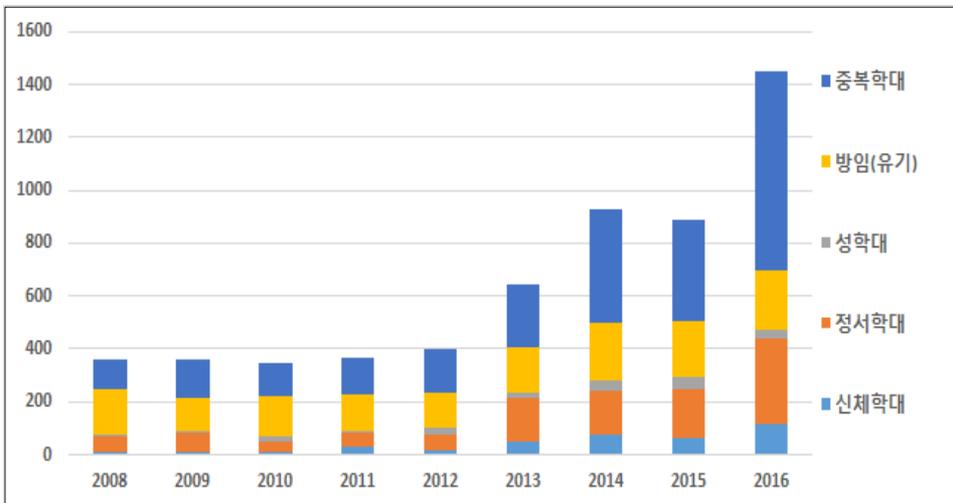
- 전북의 아동학대 사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중복학대가 51.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서학대 22.5%, 방임 15.8%, 신체학대 7.7%, 성학대 2.3% 순으로 나타남. 전북은 아동학대 유형 중 중복학대, 정서학대, 방임학대가 전국비율보다 높았음

〈표 4-2〉 아동학대 유형별 발생 현황(2016년)

구분	계	중복학대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전국	18,700 (100.0)	8,980 (48.0)	2,715 (14.5)	3,588 (19.2)	493 (2.6)	2,924 (15.6)
전북	1,446 (100.0)	747 (51.6)	112 (7.7)	325 (22.5)	34 (2.3)	229 (15.8)

자료: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전북의 아동학대 유형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매년 아동학대가 증가하는 가운데, 전체학대 중 중복학대와 정서학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림 4-1〉 전북 아동학대 연도별*유형별 건수(2008~2016년)

- 전북 아동학대 유형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중부권은 중북학대 비율이 높고, 서부권은 신체/정서학대 비율이 높으며, 동부권은 방임학대 비율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북 3개의 권역에서 아동학대가 많이 나타난 지역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위치해 있는 전주시, 익산시, 남원시에서 두드러짐. 반면 군산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미설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발생이 높아 아동보호전문기관 군산분소가 설치·운영될 예정임

〈표 4-3〉 전북 시군별 아동학대 사례유형 현황(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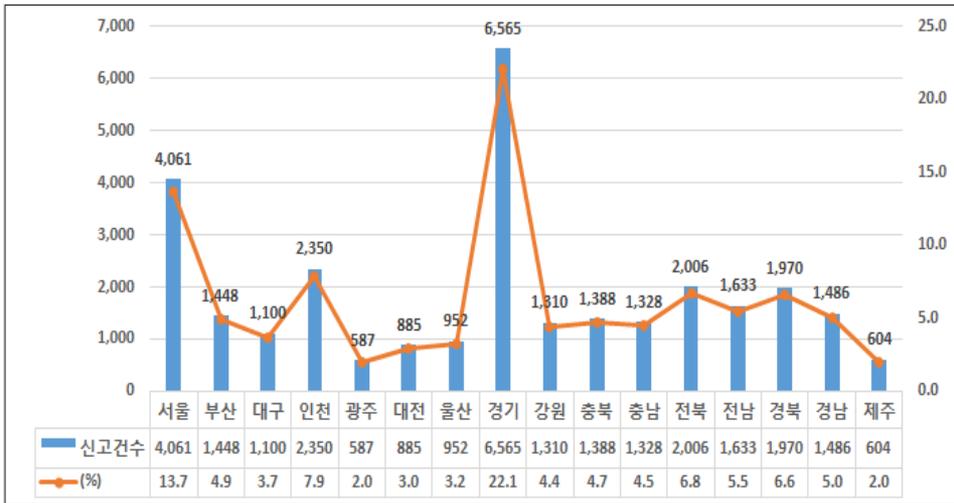
년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유기)	중북학대	계
전북 중부	28 (4.5)	127 (20.6)	12 (1.9)	84 (13.6)	367 (59.4)	618 (100.0)
전주시완산구	11	33	2	32	123	201
전주시덕진구	9	39	8	19	127	202
정읍시	3	32	2	13	59	109
진안군	0	3	0	1	7	11
완주군	5	20	0	19	51	95
전북 서부	66 (11.6)	147 (25.9)	15 (2.6)	92 (16.2)	248 (43.7)	568 (100.0)
익산시	22	77	8	45	108	260
군산시	39	48	4	36	96	223
김제시	5	13	3	4	26	51
부안군	0	9	0	7	18	34
고창군	0	0	0	0	0	0
전북 동부	18 (6.9)	51 (19.5)	7 (2.7)	53 (20.3)	132 (50.6)	261 (100.0)
남원시	11	41	6	36	96	190
순창군	1	0	0	2	8	11
임실군	0	6	1	6	8	21
무주군	4	3	0	2	7	16
장수군	2	1	0	7	13	23

자료: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내부자료.

2) 아동학대 신고 현황 및 신고자 유형

①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 2016년 전국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29,673건으로, 이 중 전라북도에 서는 2,006건이 접수되어 전체의 6.8%를 차지하여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비율을 나타냄
-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은 경기도 6,565건(22.1%), 그 다음은 서울 4,061건 (13.7%), 인천 2,350건(7.9%), 전북 2,006건(6.8%), 경북 1,970건(6.6%), 전남 1,633(5.5%) 순으로 이는 상위 5개 지역에 해당함



〈그림 4-2〉 시도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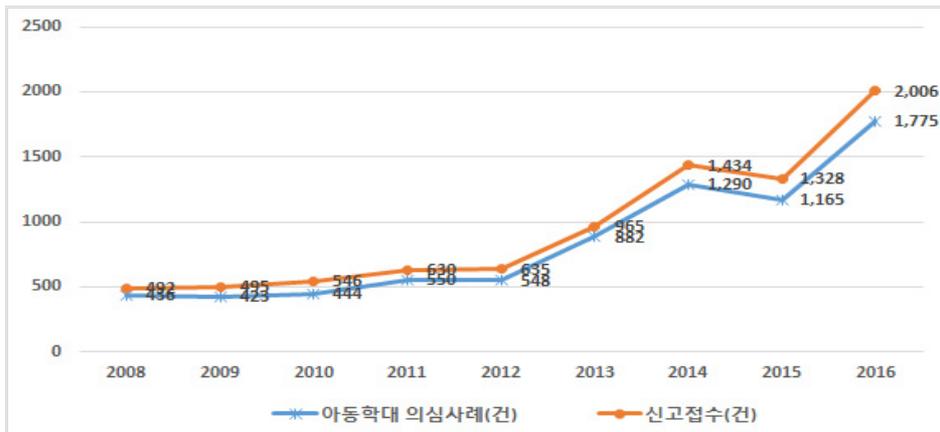
- 전라북도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09년 총 492건에서 2016년에는 2,006건으로 증가함. 이 중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는 같은 기간 436건에서 1,775건으로 증가함
- 전체 신고접수 중 일반상담을 제외한 아동학대 신고 사례는 2008년 88.6%에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여 2016년 88.5%로 나타남
-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응급사건과 단순처리로 구분되는데, 아동격리 등 응

급조치가 이루어진 학대신고는 2016년 기준 1,775건 중 10.1%(179건)로 나타나, 100건 중 약 10건은 응급조치가 이루어져야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였음

〈표 4-4〉 전북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유형(2008~2016년)

년도	아동학대 의심사례			일반 상담	동일 신고	총계	전년대비 증가율 ↑	
	응급 아동학대 의심사례	아동학대 의심사례	소계					
2016	(179)	(1,596)	1,775	214	17	2,006	51.1%	△
2015	(186)	(979)	1,165	162	1	1,328	7.4%	▼
2014	(279)	(1,011)	1,290	133	11	1,434	48.6%	△
2013	-	-	882	82	1	965	52.0%	△
2012	(71)	(477)	548	85	2	635	0.8%	△
2011	(48)	(502)	550	79	1	630	15.4%	△
2010	(30)	(414)	444	102	0	546	10.3%	△
2009	(34)	(389)	423	56	16	495	0.6%	△
2008	(27)	(409)	436	56	-	492	-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각 년도.



〈그림 4-3〉 전북 아동학대 신고접수 증가 추이(2008~2016년)

- 전라북도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2016년 총 신고 건수 2,006건 가운데 41.8%에 해당하는 555건이 서부권역(익산, 군산,

김제, 부안, 고창)에서 접수되었고, 그 다음으로 전주권역(전주, 정읍, 진안, 완주) 38.7%, 동부권역(남원, 순창, 임실, 장수, 무주) 19.5% 순으로 나타남

〈표 4-5〉 전북 시군별 신고 건수(2016년)

년도	아동학대 의심사례				일반 상담	동일 신고	총계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	아동학대 의심사례	소계	한 달 건수			
계	(179)	(1,596)	1,775	148건	214	17	2,006
구성율(%)	(8.9)	(79.6)	88.5		10.7	0.8	100.0
전북 중부	(84)	(658)	742	62건	98	15	855
전주시완산구	29	206	235	19.6건			
전주시덕진구	31	212	243	20.3건			
정읍시	9	137	146	12.2건	-	-	-
진안군	3	9	12	1건			
완주군	12	94	106	8.8건			
전북 서부	(59)	(654)	713	59.4건	96	2	811
익산시	15	301	316	26.3건			
군산시	30	261	291	24.3건			
김제시	8	60	68	5.7건	-	-	-
부안군	4	32	36	3건			
고창군	2	0	2	0.2건			
전북 동부	(36)	(284)	320	26.7건	20	0	340
남원시	27	211	238	19.8건			
순창군	3	9	12	1건			
임실군	3	20	23	2건	-	-	-
무주군	3	21	24	2건			
장수군	0	23	23	2건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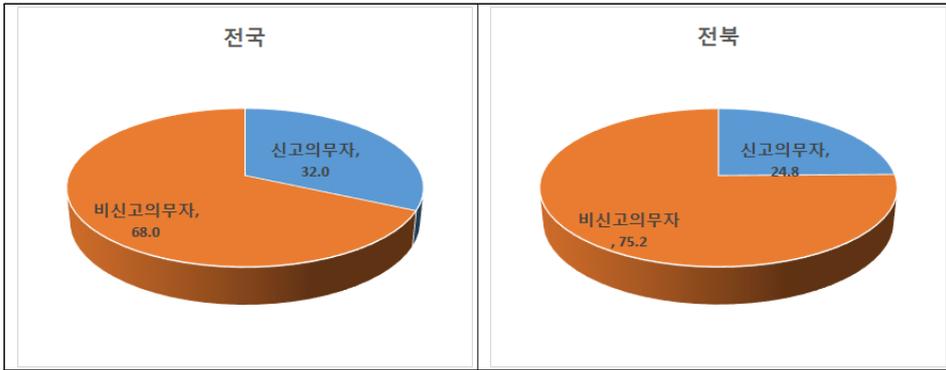
② 신고자 유형

- 아동학대 신고자는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로 구분됨. 7) 2016년 전북 도내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 건수 2,006건 중 24.8%(584건)는 신고의무자가, 나머지 75.2%(1,775건)는 비신고의무자가 신고하여 비신고의무자에

7)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시행(2014.9.29.) 이후 기존의 신고의무자 22개 직군에서 아이돌보미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수행 인력이 추가되어 24개 직군으로 확대되었으며, 이후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2016.11.30.시행)에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입양기관 종사자가 신고의무자에 추가되었다.

의한 신고비율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남

- 전북의 신고의무자 비율(24.8%)은 전국 32.0%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신고 의무자 중 초·중·고교 교원 신고가 224건으로 가장 높았음
- 전북의 비신고의무자 비율(75.2%)은 전국 68.0%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비신고의무자 중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의 신고가 433건으로 가장 높았음



〈그림 4-4〉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2016년)

〈표 4-6〉 전국 및 전북의 신고자 유형별 신고 건수 비교(2016년)

구 분	전국	전북
	명(%)	명(%)
신고 의무자		
초·중·고교 직원	3,978(15.4)	224(12.6)
의료인	216(0.8)	4(0.2)
아동복지시설종사자	498(1.9)	25(1.4)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27(0.1)	1(0.1)
보육교직원	286(1.1)	12(0.7)
유치원교직원, 강사	114(0.4)	2(0.1)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24(0.1)	0(0.0)
소방구급대원	39(0.2)	2(0.1)
성매매피해시설상담소종사자	12(0.0)	0(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종사자	11(0.0)	0(0.0)
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종사자	301(1.2)	45(2.5)
사회복지전담공무원	815(3.1)	65(3.7)
사회복지시설종사자	312(1.2)	11(0.6)
가정위탁지원센터종사자	11(0.0)	1(0.1)
아동복지전담공무원	98(0.4)	8(0.5)
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	44(0.2)	4(0.2)
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	35(0.1)	7(0.4)

구 분		전국	전북
		명(%)	명(%)
비신 고의 무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	51(0.2)	7(0.4)
	정신보건센터종사자	122(0.5)	1(0.1)
	성폭력피해상담소보호시설종사자	2(0.0)	0(0.0)
	응급구조사	2(0.0)	0(0.0)
	의료기사	223(0.9)	13(0.7)
	청소년시설, 단체종사자	75(0.3)	3(0.2)
	청소년보호, 재활센터종사자	1(0.0)	0(0.0)
	아이돌보미	296(1.1)	36(2.0)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인력	695(2.7)	113(6.4)
	(소 계)	8,288(32.0)	584(32.9)
	아동본인	2,322(9.0)	59(3.3)
	부모	4,619(17.8)	233(13.1)
	형제·자매	341(1.3)	16(0.9)
	친·인척	657(2.5)	46(2.6)
이웃, 친구	1,858(7.2)	103(5.8)	
경찰	1,426(5.5)	161(9.1)	
종교인	40(0.2)	5(0.3)	
사회복지관련종사자	4,088(15.8)	433(24.4)	
낮선사람	649(2.5)	55(3.1)	
아동보호전문기관장과 종사자	244(0.9)	5(0.3)	
익명	619(2.4)	49(2.8)	
기타	727(2.8)	26(1.5)	
(소 계)	17,590(68.0)	1,191(67.1)	
총 계		25,878(100)	1,775(100.0)

〈표 4-7〉 전북 시·군별 신고의무자유형(2016년)

구분	신고의무자												
	초중고 직원	의 료 인	아동복 지시설 종사자	장애인 복지 시설 종사자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강사	학원 강사	소방 구급 대원	성매매피 해시설 상담소 종사자	한부모 가족복지 시설 종사자	가정폭력 상담소보 호시설 종사자	사회복 지전담 공무원	가정위탁 지원센터 종사자
전북중부	103	3	4	1	5	0	0	2	0	0	34	20	1
전주완산	41	1	1	0	2	0	0	0	0	0	16	7	0
전주덕진	37	2	3	0	1	0	0	2	0	0	10	7	1
정읍시	8	0	0	1	0	0	0	0	0	0	3	4	0
진안군	1	0	0	0	0	0	0	0	0	0	0	0	0
완주군	16	0	0	0	2	0	0	0	0	0	5	2	0
전북서부	70	1	10	0	5	2	0	0	0	0	17	22	0
익산시	17	0	6	0	2	2	0	0	0	0	9	9	0
군산시	38	1	4	0	3	0	0	0	0	0	6	11	0
김제시	12	0	0	0	0	0	0	0	0	0	2	2	0

구분	신고의무자												
	초중고 직원	의료 인	아동복 지시설 종사자	장애인 복지 시설 종사자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강사	학원 강사	소방 구급 대원	성매매피 해시설 상담소 종사자	한부모 가족복지 시설 종사자	가정폭력 상담소 호시 종사자	사회복 지전담 공무원	가정위탁 지원센터 종사자
부안군	3	0	0	0	0	0	0	0	0	0	0	0	0
고창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전북동부	51	0	11	0	2	0	0	0	0	0	0	23	0
남원시	36	0	9	0	2	0	0	0	0	0	0	19	0
순창군	3	0	0	0	0	0	0	0	0	0	0	0	0
임실군	1	0	0	0	0	0	0	0	0	0	0	2	0
무주군	6	0	0	0	0	0	0	0	0	0	0	0	0
장수군	5	0	2	0	0	0	0	0	0	0	0	2	0
소계	224	4	25	1	12	2	0	2	0	0	45	65	1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계속)

구분	신고의무자															소 계
	아동복 자전담 공무원	간가 센터 종사 자	다가 센터 종사 자	사회 복지 시설 종사 자	성폭피 해보호 시설 종사 자	응급 구조 사	의료 기사	청소 년시 설 종사 자	청소년 보호 재활센 터 종사 자	정신보 건센터 종사자	아이 돌보 미	취약계 층아동 통합서 비스 종사 자	아동보 호전문 기관 종사 자	성폭피 해자 통 합센터	육아중 합지원 센터	
전북중부	2	0	1	1	0	0	2	1	3	0	10	60	0	0	0	254
전주완산	2	0	0	0	0	0	1	1	1	0	10	20	0	0	0	103
전주덕진	0	0	0	1	0	0	0	0	0	0	0	15	0	0	0	79
정읍시	0	0	0	0	0	0	0	0	2	0	0	14	0	0	0	32
진안군	0	0	1	0	0	0	0	0	0	0	0	3	0	0	0	5
완주군	0	0	0	0	0	0	1	0	0	0	0	8	0	0	0	35
전북서부	5	4	2	8	1	0	0	11	0	3	0	11	23	0	0	189
익산시	1	0	2	0	1	0	0	4	0	2	0	6	8	0	0	63
군산시	4	4	0	7	0	0	0	6	0	0	0	4	13	0	0	101
김제시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17
부안군	0	0	0	0	0	0	0	1	0	1	0	1	0	0	0	6
고창군	0	0	0	0	0	0	0	0	0	0	0	0	2	0	0	2
전북동부	0	0	4	2	0	0	0	0	2	1	0	15	30	0	0	141
남원시	0	0	4	1	0	0	0	0	2	1	0	7	22	0	0	103
순창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
임실군	0	0	0	1	0	0	0	0	0	0	0	5	0	0	0	9
무주군	0	0	0	0	0	0	0	0	0	0	0	1	4	0	0	11
장수군	0	0	0	0	0	0	0	0	0	0	0	2	4	0	0	15
소계	8	4	7	11	1	0	0	13	3	7	0	36	113	0	0	584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표 4-8〉 전북 시·군별 비신고의무자유형(2016년)

구분	비신고의무자												소계
	이동 본인	부모	형제 자매	친인척	이웃 친구	경찰	종교 인	사회복 지관련 종사자	낮선 사람	익명	아보전 종사자	기타	
전북중부	18	111	5	31	45	44	0	162	36	3	23	10	488
전주완산	4	36	1	12	13	9	0	41	9	0	4	3	132
전주덕진	8	42	2	4	19	18	0	54	5	3	5	4	164
정읍시	5	16	2	14	3	9	0	39	20	0	3	3	114
진안군	0	2	0	1	0	2	0	2	0	0	0	0	7
완주군	1	15	0	0	10	6	0	26	2	0	11	0	71
전북서부	31	97	9	8	44	112	0	182	14	0	13	14	524
익산시	17	41	5	4	16	74	0	80	7	0	4	5	253
군산시	5	37	0	3	21	20	0	85	5	0	6	8	190
김제시	5	17	2	0	5	11	0	6	1	0	3	1	51
부안군	4	2	2	1	2	7	0	11	1	0	0	0	30
고창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전북동부	10	25	2	7	14	5	5	89	5	2	13	2	179
남원시	7	21	1	3	11	5	5	68	4	2	6	2	135
순창군	0	3	0	0	0	0	0	6	0	0	0	0	9
임실군	0	1	1	4	1	0	0	5	0	0	2	0	14
무주군	3	0	0	0	0	0	0	5	0	0	5	0	13
장수군	0	0	0	0	2	0	0	5	1	0	0	0	8
소계	59	233	16	46	103	161	5	433	55	5	49	26	1,191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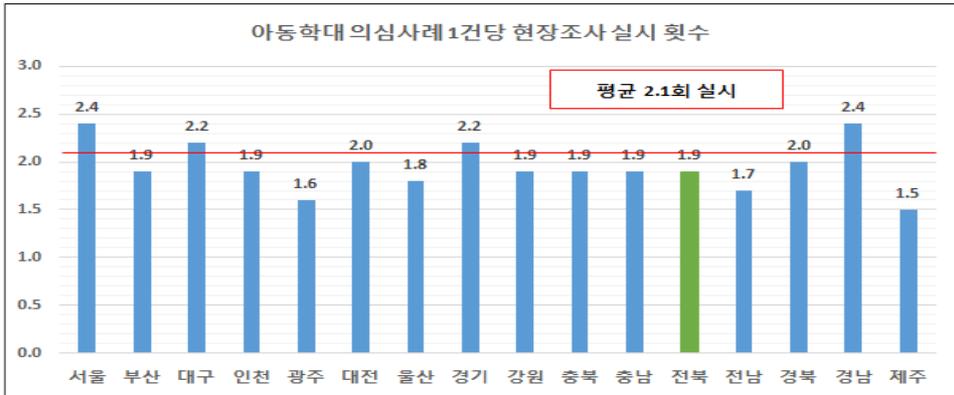
〈표 4-9〉 전국 및 전북 권역별 신고접수 경로(2016년)

구분	아동보호전문기관				112	119	129	1366	계
	전화	인터넷	내방	소계					
전국	14,919 (50.3)	39 (0.1)	496 (1.7)	15,454 (52.1)	13,991 (47.1)	37 (0.1)	51 (0.2)	141 (0.5)	29,674 (100.0)
전북	1,448 (72.2)	1 (0.0)	83 (4.1)	1,532 (76.4)	467 (23.3)	0 (0.0)	0 (0.0)	7 (0.3)	2,006 (100.0)
(중부)	567 (66.3)	0 (0.0)	61 (7.1)	628 (73.5)	222 (26.0)	0 (0.0)	0 (0.0)	5 (0.6)	855 (100.0)
(서부)	599 (73.9)	1 (0.1)	5 (0.6)	605 (74.6)	204 (25.2)	0 (0.0)	0 (0.0)	2 (0.2)	811 (100.0)
(동부)	282 (82.9)	0 (0.0)	17 (5.0)	299 (87.9)	41 (12.1)	0 (0.0)	0 (0.0)	0 (0.0)	340 (100.0)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3)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현황

- 우선,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하기 위해서는 사례판단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와 증거 등을 수집함. 2016년 의심사례에 해당하는 25,878건 중 53,401회의 현장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의심사례 1건 당 평균 2.1회 정도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졌음. 이러한 현장조사는 지역별로 많게는 평균 3.3회, 적게는 1.4회로 지역(기관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전북의 경우 아동학대 의심사례 1건당 현장조사 횟수가 1.9회로 시도 평균(2.1회)보다 낮게 나타남



〈그림 4-5〉 시도별 아동학대 의심사례 1건당 현장조사 실시 횟수(2016년)

-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신고 되어 현장조사가 이루어지면, 사례회의 및 아동학대 스크리닝 척도 등을 통해 사례판정 후 아동학대 사례, 조기자원 사례, 일반 사례로 구분함
- 아동학대 사례는 증거·진술을 통해 학대의 정황이 명확하게 드러난 경우(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로 실제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와는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016년 전라북도 아동학대 의심사례 1,775건 중 아동학대사례는 81.5%(1,446건)로 전국(72.3%)보다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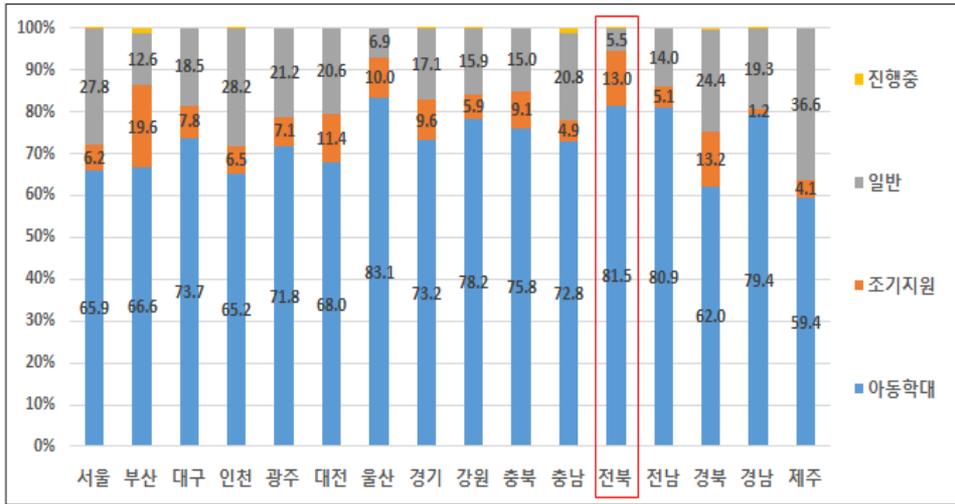
- 조기지원 사례는 아동학대 혐의가 없으나, 고위험군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외부지원이 필요한 사례로 전체사례 중 13.0%(230건)로 전국(8.6%)보다 높게 나타남
- 일반 사례는 신고접수 시 아동학대 의심사례라고 판단하였으나, 현장조사 결과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전체 사례 1,775건 중 5.5%(97건)로 전국(18.9%)보다 낮게 나타남

〈표 4-10〉 전북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판정 결과(2011~2016년)

년도		아동학대 사례	조기지원 사례	일반 사례	계
2011	전국	6,058(72.8)	745(8.9)	1,522(18.3)	8,325(100.0)
	전북	367(66.8)	75(13.6)	108(19.6)	550(100.0)
2012	전국	6,403(71.3)	721(8.0)	1,855(20.7)	8,979(100.0)
	전북	400(73.0)	92(16.8)	56(10.2)	548(100.0)
2013	전국	6,796(62.6)	1,217(11.2)	2,829(26.1)	10,842(100.0)
	전북	641(72.7)	149(16.9)	92(10.4)	882(100.0)
2014	전국	10,027(66.7)	1,783(11.9)	3,215(21.4)	15,025(100.0)
	전북	932(72.2)	170(13.2)	188(14.6)	1,290(100.0)
2015	전국	11,715(70.4)	1,742(10.5)	3,194(19.2)	16,651(100.0)
	전북	889(76.3)	192(16.5)	84(7.2)	1,165(100.0)
2016	전국	18,700(72.3)	2,222(8.6)	4,898(18.9)	25,878(100.0)
	전북	1,446(81.5)	230(13.0)	99(5.5)	1,775(100.0)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각 연도.

-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된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아동학대 사례판단 결과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의심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단한 비율이 최소 35.5% ~ 최대 90.6%로 지역(기관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 전북의 경우, 아동학대로 판단한 비율이 81.5%로 가장 높았음
- 전북 아동학대 의심사례 판정 결과를 시군별로 살펴보면,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비율이 중부권이 83.3%로 가장 높았고, 동부권 81.6%, 서부권 79.5%로 나타남. 한편 서부권과 중부권은 상대적으로 조기지원 사례판정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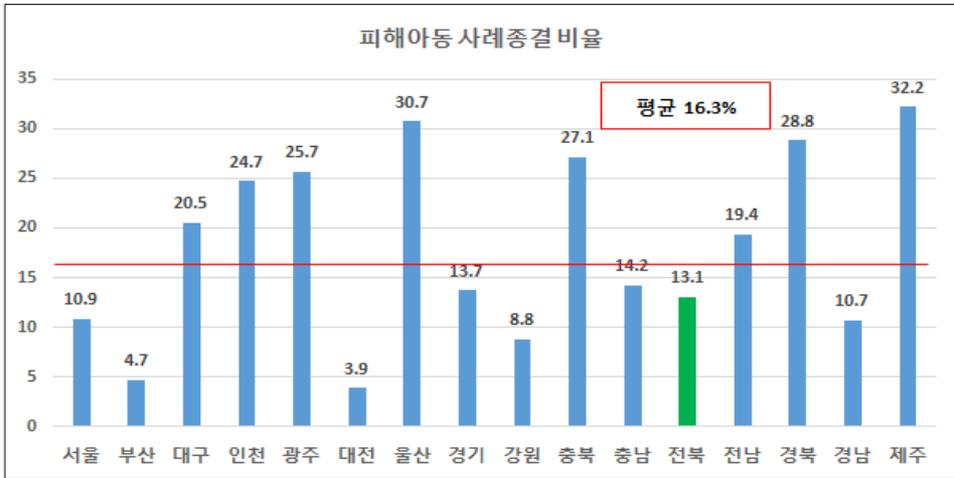
〈그림 4-6〉 시·도별 아동학대 사례판단 결과(2016년)

〈표 4-11〉 전북 시·군별 아동학대 사례판정 결과(2016년)

년도	아동학대 사례	조기지원 사례	일반 사례	계
전북 중부	618 (83.3)	85 (11.5)	38 (5.1)	742 (100.0)
전주시완산구	201	25	9	235
전주시덕진구	202	28	12	243
정읍시	109	24	13	146
진안군	11	1	0	12
완주군	95	7	4	106
전북 서부	567 (79.5)	100 (14.0)	45 (6.3)	713 (100.0)
익산시	260	40	16	316
군산시	223	48	20	291
김제시	51	10	7	68
부안군	34	2	0	36
고창군	0	0	2	2
전북 동부	261 (81.6)	45 (14.1)	14 (4.4)	320 (100.0)
남원시	190	35	13	238
순창군	11	0	1	12
임실군	21	2	0	23
무주군	16	8	0	24
장수군	23	0	0	23

자료: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내부자료.

○ 한편, 2016년 아동학대로 판단된 18,700건의 사례종결 현황을 살펴보면, 사례종결 건수는 전국평균 16.3%(3,041건)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최저 3.9% ~ 최고 32.2%까지로 사례관리 종결 현황 역시 지역별 편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남. 사례종결은 기관 및 직원의 업무부하량과 업무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례종결 비율의 적절한 조정은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고, 대신 이를 보완해줄 추가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함. 전북의 사례종결 비율은 13.1%로 전국평균(16.3%)보다 3.2%p 낮게 나타남



(그림 4-7) 시·도별 아동학대 사례관리 종결 현황(2016년)

나. 전북지역 아동학대 관련 특성

1) 아동학대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1) 피해아동

① 피해아동 발견율(아동 1,000명 당 아동학대 피해아동 수)

○ 2016년 전국 피해아동 발견율은 2.15%였으며,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북 4.66%, 전남 4.23%, 강원 4.01% 순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광주 1.1

7%, 대전 1.26%로 낮게 나타남. 외국의 피해아동 발견율을 살펴보면 미국이 9.2%, 호주가 8.5%로 우리나라 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임

※ 피해아동 발견율: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되어 아동학대 혐의 있음으로 판단한 사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실제 발생률과는 다소 상이 할 수 있어 해석에 주의. 따라서 피해아동 발견율은 아동학대를 발견하여 보호한 수 치로 보는 것이 적함함

〈표 4-12〉 전국 지역별 피해아동 발견율(2016년)

지역	추계 아동인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기관 당 아동 수	아동학대 사례	피해아동 발견율 (아동 천 명당)
서울특별시	1,467,622	8	183,453	2,268	1.55
부산광역시	500,213	4	125,053	880	1.76
대구광역시	414,695	3	138,232	736	1.77
인천광역시	512,829	3	170,943	1,190	2.32
광주광역시	295,555	2	147,778	346	1.17
대전광역시	283,823	1	2893,823	359	1.26
울산광역시	215,287	1	215,287	685	3.18
경기도	2,349,095	12	195,758	4,353	1.85
강원도	244,801	4	61,200	981	4.01
충청북도	270,895	3	90,298	948	3.50
충청남도	417,139	3	139,046	824	1.98
전라북도	310,488	3	103,496	1,446	4.66
전라남도	290,340	3	96,780	1,229	4.23
경상북도	414,161	4	103,540	1,040	2.51
경상남도	590,162	3	196,721	1,139	1.93
제주도	117,848	2	58,924	276	2.34
소 계	8,694,953	59	147,372	18,700	2.15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② 아동연령별 학대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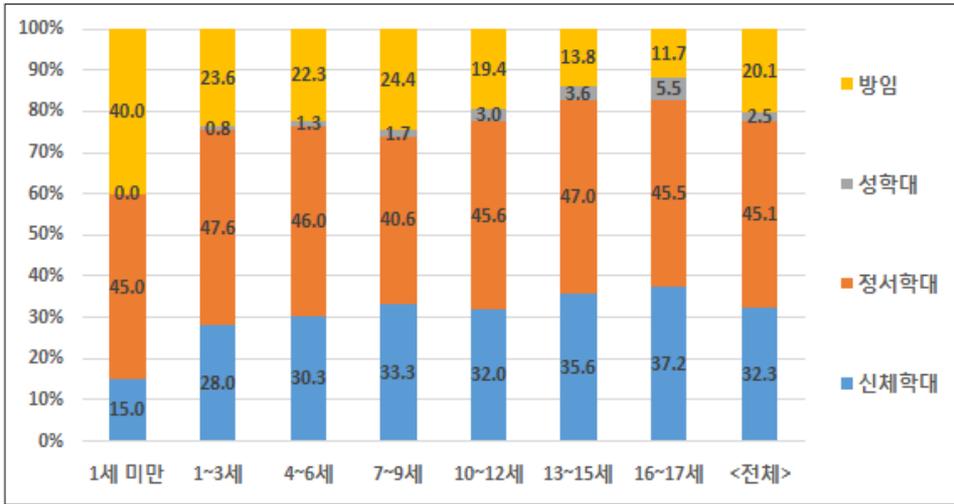
- 먼저 전국의 학대 피해아동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만 13~15세 아동이 6,709명(23.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초등학교 고학년(10~12세)이 21.0%, 초등학교 저학년(7~9세)이 19.0%로 나타남. 반면, 7세 미만의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이 7,041명(24.7%)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학령기 아동의 학대피해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가정 밖에서 지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아 학대 사실이 외부에서 인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보임
- 학대유형별 피해아동의 연령을 살펴보면, 방임의 경우는 연령이 낮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신체/정서/성 학대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음

〈표 4-13〉 전국 및 전북의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2016년)

구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전국	1세 미만	101(0.9)	161(1.3)	0(0.0)	256(5.6)	518(1.8)
	1~3세	796(7.3)	1,153(9.4)	15(2.0)	789(17.2)	2,753(9.7)
	4~6세	1,219(11.2)	1,617(13.2)	66(8.8)	868(18.9)	3,770(13.2)
	7~9세	2,093(19.2)	2,273(18.5)	95(12.6)	961(20.9)	5,422(19.0)
	10~12세	2,369(21.8)	2,587(21.1)	161(21.4)	852(18.6)	5,969(21.0)
	13~15세	2,834(26.1)	2,991(24.4)	262(34.8)	622(13.5)	6,709(23.6)
	16~17세	1,463(13.5)	1,480(12.1)	154(20.5)	244(5.3)	3,341(11.7)
	계	10,875(100.0)	12,262(100.0)	753(100.0)	4,592(100.0)	28,482(100.0)
구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전북	1세 미만	6(0.8)	18(1.7)	0(0.0)	16(3.4)	40(1.7)
	1~3세	71(9.5)	121(11.6)	2(3.5)	60(12.9)	254(10.9)
	4~6세	114(15.2)	173(16.5)	5(8.8)	84(18.0)	376(16.2)
	7~9세	157(20.9)	191(18.2)	8(14.0)	115(24.7)	471(20.3)
	10~12세	180(24.0)	256(24.5)	17(29.8)	109(23.4)	562(24.2)
	13~15세	168(22.4)	222(21.2)	17(29.8)	65(13.9)	472(20.3)
	16~17세	54(7.2)	66(6.3)	8(14.0)	17(3.6)	145(6.3)
	계	750(100.0)	1,047(100.0)	57(100.0)	466(100.0)	2,320(100.0)

주 : 중복포함.

자료: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내부자료.



〈그림 4-8〉 전북 피해아동 연령별 아동학대 유형(2016년)

③ 학대 피해아동 가족유형

- 전북 학대 피해아동의 가족유형을 살펴보면, 친부모가족이 50.7%(734건)으로 가장 높았으나, 전국평균(53.1%)보다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반면 친부모가족 외 형태가 46.3%로 전국평균(41.1%)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세부형태로는 부자가정(222건)이 가장 많았고, 모자가정(174건), 재혼가정(108건), 동거가정(103건)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전북 권역별로는 동부권이 친부모가족 비율이 60.9%로 가장 높았고, 반대로 중부권의 경우 친부모가족 외 형태가 52.0%로 높게 나타남. 세부형태 역시 부자가정이 3권역 모두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모자가정, 재혼가정, 동거가정 순이었음

〈표 4-14〉 전국 및 전북의 학대 피해아동의 가족유형(2016년)

전국	친부모 가족	친부모가족 외 형태							대리양육형태				기타	피악 인됨	계	
		부자 가정	모자 가정	미혼 부모 가정	재혼 가정	친인척 보호	동거 (사실혼)	소년 소년 가정	소계	가정 위탁	입양 가정	시설 보호				소계
	9,931 (53.1)	2,623	2,203	347	1,366	444	688	10	7,681 (41.1)	28	79	227	334 (1.8)	86 (0.5)	668 (3.6)	18,700 (100.0)
전북	친부모 가족	친부모가족 외 형태							대리양육형태				기타	피악 인됨	계	
		부자 가정	모자 가정	미혼 부모 가정	재혼 가정	친인척 보호	동거 (사실혼)	소년 소년 가정	소계	가정 위탁	입양 가정	시설 보호				소계
	734 (50.7)	222	174	36	108	45	103	0	670 (46.3)	3	12	20	35 (2.4)	1 (0.1)	7 (0.5)	1,447 (100.0)
중부	275 (44.4)	113	81	9	53	9	57	0	322 (52.0)	1	10	8	19 (3.1)	0 (0.0)	3 (0.5)	619 (100.0)
서부	300 (52.9)	73	66	24	36	19	36	0	254 (44.8)	0	0	10	10 (1.8)	0 (0.0)	3 (0.5)	567 (100.0)
동부	159 (60.9)	36	27	3	19	17	10	0	94 (36.0)	2	2	2	6 (2.3)	1 (0.4)	1 (0.4)	261 (100.0)

자료: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내부자료.

④ 아동학대 발생장소

- 전북의 아동학대 발생장소는 82.2%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는 전국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전북 권역별로는 가정 내 비율이 동부가 92.0%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중부 89.2%, 서부 87.7% 순이었음

〈표 4-15〉 전국 및 전북의 아동학대 발생장소(2016년)

관 계		전국	전북	(중부)	(서부)	(동부)
가정 내	아동 가정 내	15,032	1,250	528	489	233
	행위자가정 내	339	38	23	8	7
	(소계)	15,371(82.2)	1288(89.1)	551(89.2)	497(87.7)	240(92.0)
집근처 또는 길가		353(1.9)	27(1.9)	16(2.6)	9(1.3)	2(0.8)
친척집		150(0.8)	10(0.7)	7(1.1)	1(0.2)	2(0.8)
이웃집		20(0.1)	2(0.1)	1(0.2)	1(0.2)	0(0.0)
어린이집		601(3.2)	19(1.3)	11(1.8)	8(1.4)	0(0.0)
유치원		247(1.3)	15(1.0)	2(0.3)	13(2.3)	0(0.0)
학 교		609(3.3)	16(1.1)	4(0.6)	6(1.1)	6(2.3)
학 원		159(0.9)	4(0.3)	0(0.0)	2(0.4)	2(0.8)
병 원		68(0.4)	4(0.3)	4(0.6)	0(0.0)	0(0.0)
복지 시설	아동복지시설	287	21	6	15	0
	기타복지시설	24	1	0	1	0
	(소계)	311(1.7)	22(1.5)	6(1.0)	16(2.8)	0(0.0)
숙박업소		90(0.5)	4(0.3)	1(0.2)	1(0.2)	2(0.8)
종교시설		61(0.3)	1(0.1)	0(0.0)	1(0.2)	0(0.0)
기타		644(3.4)	27(1.9)	16(2.6)	4(0.7)	7(2.7)
파악안됨		16(0.1)	0(0.0)	0(0.0)	0(0.0)	0(0.0)
계		18,700 (100.0)	1,446 (100.0)	618 (100.0)	567 (100.0)	261 (100.0)

자료: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내부자료.

⑤ 학대 행위자와의 관계

- 전북의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학대 행위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83.1%가 부모에 의한 학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평균(80.5%)보다 높았음. 부모에 의한 학대 중 친부에 의한 학대가 650건, 친모 495건이었음. 부모에 의한 학대 다음으로는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 비율이 8.5%였으나, 이는 전국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음
- 전북 권역별로 살펴보면, 부모에 의한 학대 비율이 중부(83.7%), 서부(83.2%), 동부(81.2%)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반대로 조부모 등 친인척 등에 의한 학대 비율은 역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4-16〉 전국 및 전북의 학대 피해아동과 행위자와의 관계(2016년)

관 계		전국	전북	(중부)	(서부)	(동부)
부모	친부	8,295	650	272	266	112
	친모	5,923	495	214	185	96
	계부	394	14	6	6	2
	계모	362	31	16	15	0
	양부	37	6	5	0	1
	양모	37	6	5	0	1
	소계	15,048(80.5)	1,202(83.1)	518(83.7)	472(83.2)	212(81.2)
친인척	친조부	111	14	3	3	8
	친조모	177	31	12	7	12
	외조부	39	0	0	0	0
	외조모	95	14	9	1	4
	친인척	266	18	7	6	5
	형제/자매	107	5	4	1	0
	소계	795(4.3)	82(5.7)	35(5.7)	18(3.2)	29(11.1)
대리 양육자	부모의 동거인	311	50	27	16	7
	유치원교직원	240	15	2	13	0
	초중고교직원	576	8	3	0	5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167	6	0	2	4
	보육교직원	587	20	11	9	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253	23	6	17	0
	기타시설종사자	28	0	0	0	0
	청소년관련시설종사자	2	0	0	0	0
	위탁부	0	0	0	0	0
	위탁모	5	0	0	0	0
	베이비시터	4	1	1	0	0
소계	2,173(11.6)	123(8.5)	50(8.1)	57(10.1)	16(6.1)	
타인	이웃	91	9	8	0	1
	낯선사람	110	12	5	7	0
	소계	201(1.1)	21(1.5)	13(2.1)	7(1.2)	1(0.4)
기타	454(2.4)	16(1.1)	3(0.5)	10(1.8)	3(1.1)	
파악안됨	29(0.2)	3(0.2)	0(0.0)	3(0.5)	0(0.0)	
계	18,700	1,446	618	567	261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내부자료.

⑥ 아동학대 발생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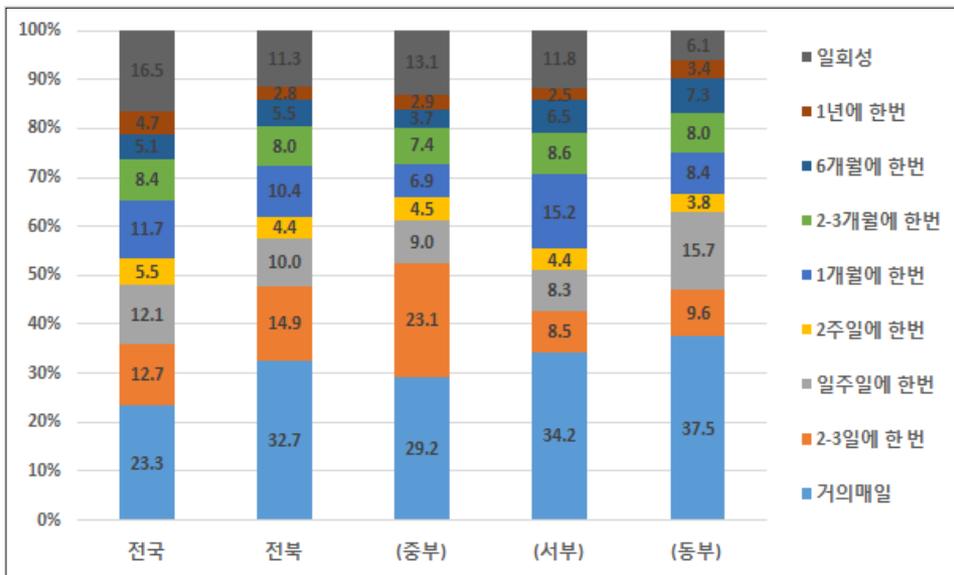
- 전북 아동학대 발생빈도를 살펴보면, 거의 매일 발생한 사례가 32.7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전국평균(23.3%)보다 높았음. 다음으로 2-3일에 한 번 14.9%로 전국평균(12.7%)보다 높게 나타남

- 전북 권역별로 살펴보면, 거의 매일 학대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동부(37.5%), 서부(34.2%), 중부(29.2%) 순이었으며, 거의 매일과 2-3일에 한 번을 합한 비율은 중부가 52.3%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17〉 전국 및 전북의 아동학대 발생빈도(2016년)

발생빈도	전국	전북	(중부)	(서부)	(동부)
거의매일	4,364(23.3)	473(32.7)	181(29.2)	194(34.2)	98(37.5)
2-3일에 한 번	2,384(12.7)	216(14.9)	143(23.1)	48(8.5)	25(9.6)
일주일에 한번	2,260(12.1)	144(10.0)	56(9.0)	47(8.3)	41(15.7)
2주일에 한번	1,027(5.5)	63(4.4)	28(4.5)	25(4.4)	10(3.8)
1개월에 한번	2,180(11.7)	151(10.4)	43(6.9)	86(15.2)	22(8.4)
2-3개월에 한번	1,564(8.4)	116(8.0)	46(7.4)	49(8.6)	21(8.0)
6개월에 한번	956(5.1)	79(5.5)	23(3.7)	37(6.5)	19(7.3)
1년에 한번	880(4.7)	41(2.8)	18(2.9)	14(2.5)	9(3.4)
일회성	3,085(16.5)	164(11.3)	81(13.1)	67(11.8)	16(6.1)
계	18,700 (100.0)	1,446 (100.0)	618 (100.0)	567 (100.0)	261 (100.0)

자료: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내부자료.



〈그림 4-9〉 전국 및 전북의 아동학대 발생빈도(2016년)

(2) 학대 행위자

① 학대 행위자의 연령

- 전북 아동학대 행위자 연령을 살펴보면, 주로 30~40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남. 40대가 37.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대(34.5%), 50대(13.5%), 20대(6.5%) 등의 순이었음. 한편, 전국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보인 연령대는 30대, 50대, 60대로 나타남
- 전북 권역별로 살펴보면, 중부는 30대(39.0%), 서부 40대(43.7%), 동부 40대(32.6%)가 가장 많았음. 한편, 동부의 경우 50대(22.6%)와 60대(9.6%)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음

〈표 4-18〉 전국 및 전북의 학대 행위자의 연령(2016년)

연령(만)	전국	전북	(중부)	(서부)	(동부)
19세 이하	83(0.4)	12(0.8)	10(1.6)	2(0.4)	0(0.0)
20-29세	1,559(8.3)	94(6.5)	51(8.2)	27(4.8)	16(6.1)
30-39세	5,558(29.7)	499(34.5)	242(39.0)	193(34.0)	64(24.5)
40-49세	8,228(44.0)	547(37.8)	214(34.5)	248(43.7)	85(32.6)
50-59세	2,245(12.0)	195(13.5)	68(11.0)	68(12.0)	59(22.6)
60-69세	525(2.8)	62(4.3)	13(2.1)	24(4.2)	25(9.6)
70세 이상	143(0.8)	17(1.2)	4(0.6)	2(0.4)	11(4.2)
파악안됨	359(1.9)	22(1.5)	18(2.9)	3(0.5)	1(0.4)
계	18,700 (100.0)	1,446 (100.0)	618 (100.0)	567 (100.0)	261 (100.0)

자료: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내부자료.

② 학대 행위자의 직업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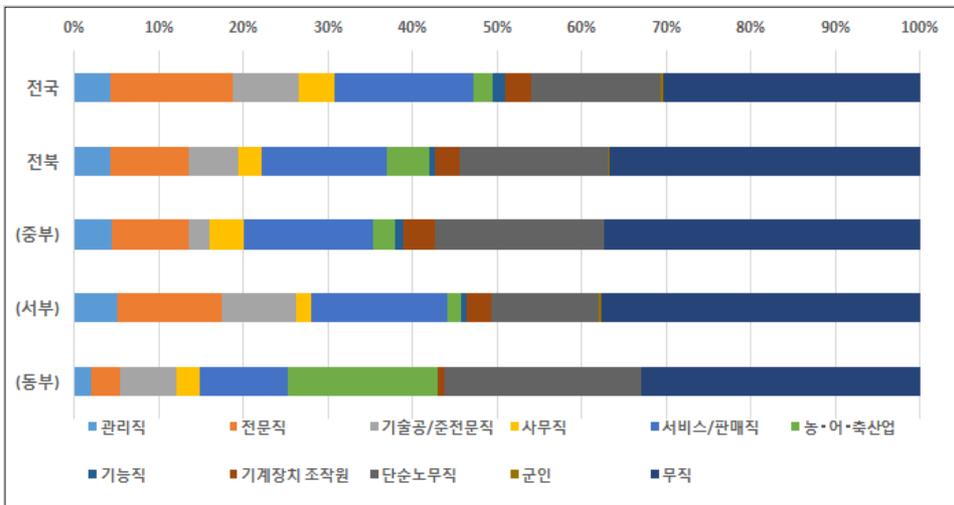
- 전북 아동학대 행위자의 직업유형을 살펴보면, 무직이 34.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단순노무직(16.6%), 서비스 및 판매직(13.8%), 전문직(8.8%) 등의 순으로 높았음. 즉, 무직이나 단순노무직, 서비스 및 판매직 등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직업유형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전국과 비교해서는 농어축산업, 단순노무직, 무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전북 권역별로 살펴보면, 무직이 가장 많았으며 이는 서부(36.0%), 중부(33.8%), 동부(32.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한편, 동부의 경우 농·어·축산업(17.6%)과 단순노무직(23.0%)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음

〈표 4-19〉 전국 및 전북의 학대 행위자의 직업유형(2016년)

직업유형	전국	전북	(중부)	(서부)	(동부)
관리직	750(4.0)	57(3.9)	25(4.0)	27(4.8)	5(1.9)
전문직	2,501(13.4)	127(8.8)	51(8.2)	67(11.8)	9(3.5)
기술공 및 준전문직	1,364(7.3)	79(5.5)	14(2.3)	48(8.5)	17(6.5)
사무직	729(3.9)	38(2.6)	22(3.6)	9(1.6)	7(2.7)
서비스 및 판매직	2,853(15.3)	200(13.8)	86(13.9)	87(15.4)	27(10.3)
농·어·축산업	391(2.1)	69(4.8)	14(2.3)	9(1.6)	46(17.6)
기능직	271(1.4)	9(0.6)	5(0.8)	4(0.7)	0(0.0)
기계장치 조작원	532(2.8)	39(2.7)	21(3.4)	16(2.8)	2(0.8)
단순노무직	2,654(14.2)	240(16.6)	112(18.1)	68(12.0)	60(23.0)
군인	69(0.4)	2(0.1)	0(0.0)	2(0.4)	0(0.0)
무직	5,275(28.2)	498(34.4)	209(33.8)	204(36.0)	85(32.6)
파악안됨	1,311(7.0)	89(6.2)	60(9.7)	26(4.6)	3(1.2)
계	18,700 (100.0)	1,446 (100.0)	618 (100.0)	567 (100.0)	261 (100.0)

자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내부자료.



〈그림 4-10〉 전국 및 전북의 학대 행위자 직업유형(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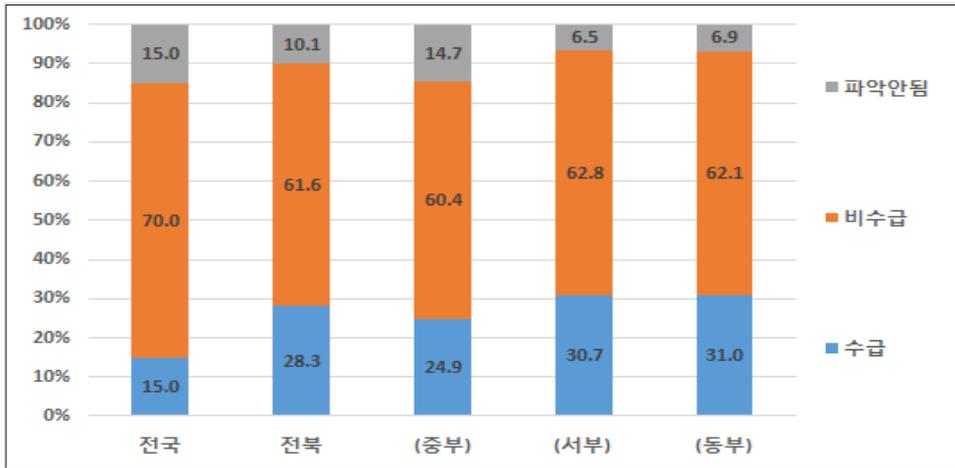
③ 학대 행위자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유무

- 전북 아동학대 행위자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유무를 살펴본 결과, 수급권대상은 28.3%로 전국평균(15.0%)보다 높게 나타남
- 전북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급권대상은 동부(31.0%), 서부(30.7%), 중부(24.9%) 순으로 높았음

〈표 4-20〉 전국 및 전북의 학대 행위자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유무(2016년)

수급권 여부	전국	전북	(중부)	(서부)	(동부)
수급권대상	2,755(15.0)	409(28.3)	154(24.9)	174(30.7)	81(31.0)
비수급권 대상	13,124(70.0)	892(61.6)	374(60.4)	356(62.8)	162(62.1)
파악안됨	2,821(15.0)	146(10.1)	91(14.7)	37(6.5)	18(6.9)
계	18,700 (100.0)	1,446 (100.0)	618 (100.0)	567 (100.0)	261 (100.0)

자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내부자료.



〈그림 4-11〉 전국 및 전북의 학대 행위자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유무(2016년)

④ 학대 행위자의 개인특성

- 전북 아동학대 행위자의 특성을 보면,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38.2%로 가장 높았고, 이는 전국평균(35.6%)보다 높게 나타났음. 다음으로 스트레스 및 고립(15.8%), 부부 및 가족갈등(13.9%) 순으로 높게 나타남. 부부

및 가족갈등의 경우 역시 전국평균(10.4%)보다 높았음

- 전북 권역별로 살펴보면,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서부(40.1%), 동부(37.0%), 중부(34.8%) 순으로 높게 나타남. 한편, 스트레스 및 고립은 서부(18.5%)와 동부(18.4%)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고, 부부 및 가족갈등은 중부(16.8%) 지역이 높은 경향을 보임

〈표 4-21〉 전국 및 전북의 학대 행위자의 개인특성(2016년)

행위자의 특성	전국	전북	(중부)	(서부)	(동부)
신체적 장애	353(0.8)	0(0.0)	0(0.0)	0(0.0)	0(0.0)
정신적 장애	256(0.5)	0(0.0)	0(0.0)	0(0.0)	0(0.0)
장애의심	501(1.1)	46(1.4)	11(0.9)	24(1.6)	11(1.6)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16,737(35.6)	1,302(38.2)	450(34.8)	601(40.1)	251(37.0)
중독문제	2,747(5.8)	230(6.8)	80(6.2)	96(6.4)	54(8.0)
질환문제	726(1.5)	0(0.0)	0(0.0)	0(0.0)	0(0.0)
성격 및 기질문제	2,873(6.1)	177(5.2)	60(4.6)	53(3.5)	64(9.4)
위생문제	617(1.3)	43(1.3)	24(1.9)	18(1.2)	1(0.2)
나태 및 무기력	540(1.1)	47(1.4)	35(2.7)	6(0.4)	6(0.9)
난독해	28(0.1)	5(0.1)	1(0.1)	1(0.1)	3(0.4)
스트레스 및 고립	8,372(17.8)	538(15.8)	202(15.6)	277(18.5)	59(18.4)
어릴적 학대경험	695(1.5)	65(1.9)	29(2.2)	21(1.4)	15(2.2)
폭력성	2,242(4.8)	209(6.1)	61(4.7)	107(7.1)	41(6.2)
전과력	249(0.5)	32(0.9)	14(1.1)	16(1.1)	2(0.3)
성문제	418(0.9)	34(1.0)	9(0.7)	17(1.1)	8(1.2)
원치 않은 아동	264(0.6)	17(0.5)	6(0.5)	7(0.5)	4(0.6)
부부 및 가족갈등	4,901(10.4)	473(13.9)	217(16.8)	188(12.5)	68(10.0)
종교문제	130(0.3)	17(0.5)	1(0.1)	13(0.9)	3(0.4)
특성없음	3,726(7.9)	120(3.5)	53(4.1)	49(3.3)	18(2.7)
파악안됨	585(1.2)	49(1.4)	41(3.2)	5(0.3)	3(0.4)
계	46,960 (100.0)	3,404 (100.0)	1,294 (100.0)	1,499 (100.0)	678 (100.0)

주 : 다중응답.

자료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내부자료.

2) 아동학대 사례 조치 현황

① 피해아동 조치 결과 : 초기/최종

- 전북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초기조치는 원가정보호가 75.7%(1,094건) 이고,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는 경우는 24.3%로 현장조사 후 초기 조치는 주로 원가정보호로 이루어짐
- 전국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전라북도의 경우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하는 비율(24.3%)이 전국 평균(21.9%)보다 높게 나타나, 피해아동 발견 시 초기에 가정에서 분리해야할 정도가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전북 권역별로 살펴보면, 원가정보호가 동부(80.5%), 서부(78.0%), 중부(71.5%) 순으로 큰 차이를 보임

〈표 4-22〉 전국 및 전북의 피해아동 초기조치 결과(2016년)

구분	원가정보호	분리보호							사망	계
		친인척 보호	연고자 보호	가정 위탁	일시 보호	장기 보호	병원 입원	소계		
전국	14,563 (77.9)	1,179 (0.8)	158 (0.8)	7 (0.0)	2,325 (12.4)	322 (1.7)	104 (0.6)	4,095 (21.9)	42 (0.2)	18,700 (100.0)
전북	1,094 (75.7)	95 (6.6)	7 (0.5)	0 (0.0)	194 (13.4)	46 (3.2)	9 (0.6)	351 (24.3)	1 (0.1)	1,446 (100.0)
중부	442 (71.5)	42 (6.8)	3 (0.5)	0 (0.0)	110 (17.8)	20 (3.2)	1 (0.2)	176 (28.5)	0 (0.0)	618 (100.0)
서부	442 (78.0)	41 (7.2)	3 (0.5)	0 (0.0)	55 (9.7)	21 (3.7)	4 (0.7)	124 (21.9)	1 (0.1)	567 (100.0)
동부	210 (80.5)	12 (4.6)	1 (0.4)	0 (0.0)	29 (11.1)	5 (1.9)	4 (1.5)	51 (19.5)	0 (0.0)	261 (100.0)

자료: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전북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최종조치는 초기조치와 달리 원가정보호율이 전국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전북의 원가정보호는 69.9%로 전국평균(72.6%)보다 낮았으며, 반대로 가정으로 복귀하는 비율은 5.5%로 전국평균(7.2%)보다 낮게 나타남
- 전북 권역별로 살펴보면, 원가정보호는 서부(71.4%), 동부(69.7%), 중부

(68.6%) 순이었으며, 가정복귀율은 서부(7.9%), 동부(4.2%), 중부(3.9%)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4-23〉 전국 및 전북의 피해아동 최종 조치결과(2016년)

구분	원가정보호	분리보호	사망	가정복귀	계
전국	13,573 (72.6)	3,730 (19.9)	50 (0.3)	1,347 (7.2)	18,700 (100.0)
전북	1,012 (69.9)	353 (24.4)	2 (0.1)	80 (5.5)	1,446 (100.0)
(중부)	425 (68.6)	169 (27.4)	1 (0.2)	24 (3.9)	618 (100.0)
(서부)	405 (71.4)	116 (20.5)	1 (0.2)	45 (7.9)	567 (100.0)
(동부)	182 (69.7)	68 (26.1)	0 (0.0)	11 (4.2)	261 (100.0)

자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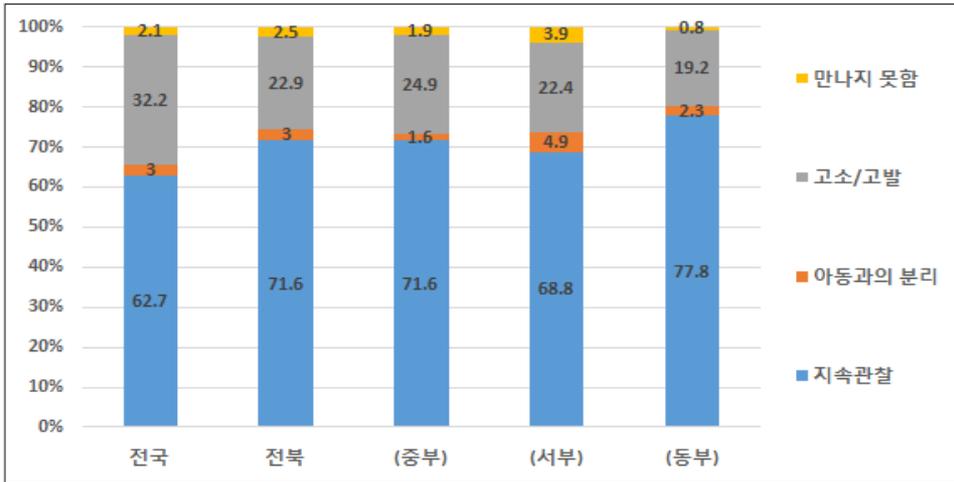
② 학대 행위자 조치 결과

- 전북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최종조치로 지속관찰이 71.6%로 전국평균(62.7%)보다 높았고, 반대로 아동과 분리하거나 고소·고발 등의 조치는 28.4%로 전국평균(37.3%)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전북 권역별로 살펴보면, 지속관찰율은 동부(77.8%), 중부(71.6%), 서부(68.8%)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4-24〉 전국 및 전북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 결과(2016년)

구분	지속관찰	아동과의 분리	고소·고발	만나지 못함	계
전국	11,733 (62.7)	560 (3.0)	6,018 (32.2)	389 (2.1)	18,700 (100.0)
전북	1,036 (71.6)	44 (3.0)	331 (22.9)	36 (2.5)	1,446 (100.0)
(중부)	443 (71.6)	10 (1.6)	154 (24.9)	12 (1.9)	618 (100.0)
(서부)	390 (68.8)	28 (4.9)	127 (22.4)	22 (3.9)	567 (100.0)
(동부)	203 (77.8)	6 (2.3)	50 (19.2)	2 (0.8)	261 (100.0)

자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내부자료.



〈그림 4-12〉 전국 및 전북의 학대 행위자 최종조치 결과(2016년)

- 2016년 전국 전체 아동학대사례 18,700건 중 학대행위자 대상 고소·고발·사건처리 조치를 취한 것은 6,018건은 전체의 32.2%에 해당되며, 이 중 고소·고발 조치건수는 4,276건(71.1%), 수사의뢰·응급조치에 따른 수사 개시 등 사법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1,742건(28.9%)으로 나타남
- 전북은 아동학대사례 1,446건 중 학대행위자 대상 고소·고발·사건처리 조치를 취한 것은 448건은 전체의 31.0%에 해당되며, 이 중 고소·고발 조치건수는 115건(25.7%), 사건처리 조치는 333건(74.3%)으로 나타남

〈표 4-25〉 전국 및 전북의 학대행위자 고소·고발·사건처리 조치건수(2016년)

구분	학대사례	고소·고발·사건처리 조치		
		고소·고발 조치 건수	사건처리 조치건수	계
전국	18,700	4,276(71.1)	1,742(28.9)	6,018(100.0)
전북	1,446	115(25.7)	333(74.3)	448(100.0)
(중부)	618	35(22.7)	119(77.3)	154(100.0)
(서부)	567	32(24.4)	99(75.6)	131(100.0)
(동부)	261	48(29.4)	115(70.6)	163(100.0)

자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내부자료.

3) 재학대 발생 현황

최근 5년간 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에 접수된 아동학대사례 중 2016년에 재접수되어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를 재학대로 구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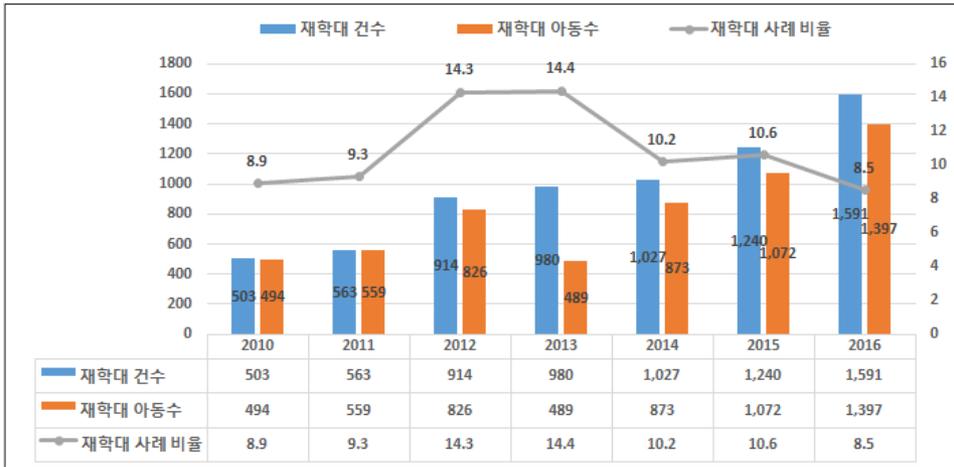
① 재학대 발생율

- 전국 재학대 건수는 2010년 503건에서 2016년 1,591건으로, 재학대 아동수는 494명에서 1,397명으로 꾸준히 증가. 반면 재학대사례 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8.9%에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14년 이후로 10% 내외로 재학대사례 비율이 다소 감소함

〈표 4-26〉 전국 지역별 재학대 비율(2016년)

지역	아동학대 사례수	재학대 사례수	재학대 아동수	아동학대사례 중 재학대사례비율
서울특별시	2268	173	162	7.6
부산광역시	880	28	28	3.2
대구광역시	736	89	77	12.1
인천광역시	1,190	102	93	8.6
광주광역시	346	33	32	9.5
대전광역시	359	33	31	9.2
울산광역시	685	54	49	7.9
경기도	4,353	350	316	8.0
강원도	981	101	86	10.3
충청북도	948	62	55	6.5
충청남도	824	63	60	7.6
전라북도	1,446	196	166	13.6
전라남도	1,229	104	92	8.5
경상북도	1,040	131	83	12.6
경상남도	1,139	50	46	4.4
제주도	276	22	21	8.0
소 계	18,700	1,591	1,397	8.5

자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내부자료.



〈그림 4-13〉 연도별 재학대 사례 건수 및 비율(2010~2016년)

〈표 4-27〉 전북 연도별 재학대 비율(2010~2016년)

Year	아동학대 사례수	재학대 사례수	재학대 아동수	아동학대사례 중 재학대사례비율
2014년	932	139	131	14.9
2015년	889	138	110	15.5
2016년	소계	1,446	196	13.6
	(중부)	618	72	11.7
	(서부)	567	66	11.6
	(동부)	261	58	22.2

자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내부자료.

② 재학대사례의 학대유형

- 재학대 사례에 대한 아동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중복학대 809건(50.8%)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정서학대가 318건(20%)으로 전년과 다르게 2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방임 271건(17.0%), 신체학대 176건(11.1%), 성학대 17건(1.1%) 순으로 나타남. 전체 아동학대사례 유형의 경우 중복학대 다음으로 정서학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마찬가지로 재학대 사례에서도 중복학대 다음으로 정서학대가 높은 분포를 보임

- 전북의 재학대 사례 유형을 살펴보면, 중복학대가 54.6%(107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정서학대가 23%(45건), 방임이 16.3%(32건)으로 높게 나타남. 특히 전북지역의 동부권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재학대 사례유형 비율이 중복학대 > 방임 > 정서학대로 나타났고, 전북의 다른 지역보다도 방임의 비율이 3배 이상 높게 나타남. 동부권의 방임발생률이 높은 요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표 4-28〉 전국 및 전북의 재학대 사례의 학대유형(2016년)

구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중복학대	계
전국	176 (11.1)	318 (20.0)	17 (1.1)	271 (17.0)	809 (50.8)	1,591 (100.0)
전북	10 (5.1)	45 (23.0)	2 (1.0)	32 (16.3)	107 (54.6)	196 (100.0)
(중부)	0(0.0)	18(25.0)	1(1.39)	7(9.7)	46(63.9)	72(100.0)
(서부)	3(4.5)	9(13.6)	1(1.5)	6(9.1)	39(59.1)	66(100.0)
(동부)	7(12.1)	18(31.0)	0(0.0)	19(32.8)	22(37.9)	58(100.0)

자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내부자료.

③ 재학대 피해아동 연령

- 재학대 피해아동 1,591명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만 10~12세가 23.7%(377건), 13~15세가 23.2%(369건), 7~9세가 21.9%(348건)으로 주로 초등학교 및 중학생 연령 아동에서 재학대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재학대 피해아동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만 10~12세가 26.5%(52건)로 가장 많았으며, 7~9세가 26%(51건), 13~15세가 21.4%(42건), 4~6세가 15.3%(30건) 순으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남. 초등학교 연령의 아동에서 재학대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음

〈표 4-29〉 전국 및 전북의 재학대 피해아동의 연령(2016년)

연령(만)	전국	전북	(중부)	(서부)	(동부)
1세미만	14(0.9)	1(0.5)	0	1	0
1 - 3세	125(7.9)	13(6.6)	2	7	4
4 - 6세	210(13.2)	30(15.3)	10	11	9
7 - 9세	348(21.9)	51(26.0)	20	17	14
10 - 12세	377(23.7)	52(26.5)	23	12	17
13 - 15세	369(23.2)	42(21.4)	14	14	14
16 - 17세	148(9.3)	7(3.6)	3	4	0
계	1,591(100.0)	196(100.0)	72	66	58

자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내부자료.

④ 재학대 피해아동과 학대 가해자와의 관계

- 재학대 피해아동과 학대가해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에 의한 재학대 사례가 1,520건(95.5%)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그 중 친부(51.6%)에 의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친·인척에 의한 재학대 사례가 36건(2.3%)이었으며, 그 중 친조모에 의한 13건(0.8%)이었음. 대리양육자에 의한 재학대 사례는 27건(1.7%)이었으며, 그 중 부/모의 동거인 25건(1.6%)으로 높게 나타남
- 전북의 재학대 피해아동과 학대 가해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에 의한 재학대 사례가 93.9%(184건)로 가장 높았으며, 이 중 친부 49.5%(97건), 친모 38.3%(75건)으로 친모보다는 친부에 의한 재학대 사례가 보다 높게 나타남. 친·인척에 의한 재학대 사례 중 친조모에 의한 재학대 사례가 2.6%(5건)으로 가장 많았음.

〈표 4-30〉 전국 및 전북의 재학대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와의 관계(2016년)

관 계		전국	전북	(중부)	(서부)	(동부)
부모	친 부	821(51.6)	97(49.5)	36(50.0)	37(56.1)	24(41.4)
	친 모	606(38.1)	75(38.3)	20(27.8)	29(43.9)	26(44.8)
	계 부	39(2.5)	3(1.5)	2(2.8)	0(0.0)	1(1.7)
	계 모	46(2.9)	7(3.6)	7(9.7)	0(0.0)	0(0.0)
	양 부	5(0.3)	1(0.5)	0(0.0)	0(0.0)	1(1.7)
	양 모	3(0.2)	1(0.5)	0(0.0)	0(0.0)	1(1.7)
	소 계	1,520(95.5)	184(93.9)	65(90.3)	66(100.0)	53(91.5)
친·인척	친조부	7(0.4)	0(0.0)	0(0.0)	0(0.0)	0(0.0)
	친조모	13(0.8)	5(2.6)	3(4.2)	0(0.0)	2(3.4)
	외조부	1(0.1)	0(0.0)	0(0.0)	0(0.0)	0(0.0)
	외조모	4(0.3)	2(1.0)	0(0.0)	0(0.0)	2(3.4)
	친인척	9(0.6)	0(0.0)	0(0.0)	0(0.0)	0(0.0)
	형제/자매	2(0.1)	0(0.0)	0(0.0)	0(0.0)	0(0.0)
소 계	36(2.3)	7(3.6)	3(4.2)	0(0.0)	4(6.8)	
대리양육자	부·모의 동거인	25(1.6)	5(2.6)	4(5.6)	0(0.0)	1(1.7)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0(0.0)	0(0.0)	0(0.0)	0(0.0)	0(0.0)
	보육교직원	1(0.1)	0(0.0)	0(0.0)	0(0.0)	0(0.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1(0.1)	0(0.0)	0(0.0)	0(0.0)	0(0.0)
	소계	27(1.7)	5(2.6)	4(5.6)	0(0.0)	1(1.7)
타인	이웃	0(0.0)				
	낯선 사람	1(0.1)	0(0.0)	0(0.0)	0(0.0)	0(0.0)
	소계	1(0.1)				
기타		7	0	0	0	0
계		1,591	196	72	66	58

자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내부자료.

⑤ 재학대 발생 장소

- 재학대 발생 장소를 살펴보면, 전체 재학대 사례 중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재학대 사례가 1,493건(93.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전체 아동학대사례 중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82.2%였던 것에 비교하면 재학대 사례는 약 11.6%p 더 높음. 다음으로 기타 33건(2.1%), 집근처 또는 길가에서 발생하는 재학대 사례가 31건(1.9%) 순이었음
- 전북의 재학대 발생 장소를 살펴보면, 역시 전국과 동일하게 아동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재학대 사례가 91.8%(180건), 학대 가해자 가정 내 2.6%(5건)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총 94.4%(185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31〉 전국 및 전북의 재학대 사례 발생장소(2016년)

관 계		전국	전북	(중부)	(서부)	(동부)
가정 내	아동 가정 내	1,463(92.0)	180(91.8)	65(90.3)	63(93.9)	52(89.7)
	학대가해자 가정 내	30(1.9)	5(2.6)	4(5.6)	0(0.0)	1(1.7)
	(소계)	1,493(93.8)	185(94.4)	69(95.9)	63(93.9)	53(91.4)
집근처 또는 길가		31(1.9)	1(0.5)	0(0.0)	0(0.0)	1(1.7)
친척집		7(0.4)	2(1.0)	1(1.4)	0(0.0)	1(1.7)
이웃집		1(0.1)	0(0.0)	0(0.0)	0(0.0)	0(0.0)
어린이집		1(0.1)	0(0.0)	0(0.0)	0(0.0)	0(0.0)
유치원		2(0.1)	0(0.0)	0(0.0)	0(0.0)	0(0.0)
학 교		5(0.3)	2(1.0)	0(0.0)	1(1.5)	1(1.7)
학 원		1(0.1)	0(0.0)	0(0.0)	0(0.0)	0(0.0)
병 원		1(0.1)	0(0.0)	0(0.0)	0(0.0)	0(0.0)
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1(0.1)	0(0.0)	0(0.0)	0(0.0)	0(0.0)
	기타복지시설	0(0.0)	0(0.0)	0(0.0)	0(0.0)	0(0.0)
	(소계)	1(0.1)	0(0.0)	0(0.0)	0(0.0)	0(0.0)
종교시설		9(0.6)	0(0.0)	0(0.0)	0(0.0)	0(0.0)
숙박업소		3(0.2)	2(1.0)	2(2.8)	0(0.0)	0(0.0)
기 타		33(2.1)	4(2.0)	0(0.0)	3(4.5)	1(1.7)
파악 안됨		3(0.2)	0(0.0)	0(0.0)	0(0.0)	0(0.0)
계		1,591(100.0)	196(100.0)	72(100.0)	66(100.0)	58(100.0)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⑥ 재학대 가해자의 경제상태

- 재학대 가해자의 직업유형을 살펴보면, 무직이 38.2%(607건)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단순노무직 18.3%(291건), 서비스 및 판매직 16.0%(25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즉, 직업이 없거나 혹은 통념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여겨지는 경제활동상태에서 재학대 발생이 높은 경향을 보임
- 전북의 재학대 가해자의 직업유형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과 동일하게 무직이 38.8%(76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단순노무직 24.0%(47명), 서비스 및 판매직 15.8%(31명), 농·어·축산업 6.1%(12명) 순으로 나타남

〈표 4-32〉 전국 및 전북의 재학대 가해자의 직업유형(2016년)

직업유형	건수(비율)				
	전국	전북	(중부)	(서부)	(동부)
관리직	45(2.8)	2(1.0)	2(2.8)	0(0.0)	0(0.0)
전문직	73(4.6)	11(5.6)	4(5.6)	7(10.6)	0(0.0)
기술공 및 준전문직	105(6.6)	8(4.1)	2(2.8)	6(9.1)	0(0.0)
사무직	31(1.9)	0(0.0)	0(0.0)	0(0.0)	0(0.0)
서비스 및 판매직	255(16.0)	31(15.8)	13(18.1)	11(16.7)	7(12.1)
농·어·축산업	36(2.3)	12(6.1)	0(0.0)	1(1.5)	11(19.0)
기능직	18(1.1)	0(0.0)	0(0.0)	0(0.0)	0(0.0)
기계장치 조작원	52(3.3)	3(1.5)	0(0.0)	3(4.5)	0(0.0)
단순노무직	291(18.3)	47(24.0)	13(18.1)	14(21.2)	20(34.5)
군인	3(0.2)	0(0.0)	0(0.0)	0(0.0)	0(0.0)
무직	607(38.2)	76(38.8)	33(45.8)	23(34.8)	20(34.5)
파악안팀	75(4.7)	6(3.1)	5(6.9)	1(1.5)	0(0.0)
계	1,591(100.0)	196(100.0)	72(100.0)	66(100.0)	58(100.0)

자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내부자료.

- 재학대 가해자의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100만원~150만원 미만 소득자가 15.3%(244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50만원~200만원 11.8%, 50만원 미만 11.5% 등으로 저소득층 분포가 높게 나타남. 반면, 300만원 이상도 11.6%(184명)로 높은 수준이었음
- 전북의 재학대 가해자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100만원~150만원 미만이 23.5%(4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0만원~250만원 미만 11.3%(23명), 50만원~100만원 미만 9.7%(19명)의 순으로 많게 나타남. 한편, 전북지역 동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재학대 가해자 소득수준은 50만원~100만원 미만 비율이 22.4%(13명)로 전북의 다른 권역 아동보호전문기관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또한, 재학대사례 가해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여부를 살펴보면, 비수급자가 60.7%(966건)로 가장 높았으며, 수급자는 30.3%(482명)로 10명중 3명이 수급권자로 나타남
- 전북의 경우, 재학대사례 가해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43.9%(86명), 비수급권자 35.2%(69명) 보다 8.7%가 많으며, 수급권자 비율 또한 전국

평균 대비 13.6%p나 높음. 즉 전북의 아동 재학대가해자 10명중 4명 이상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나타남

〈표 4-33〉 전국 및 전북의 재학대 가해자의 소득수준(2016년)

수급권 여부	전국	전북	(중부)	(서부)	(동부)
50만원 미만	183(11.5)	13(6.6)	2(2.8)	5(7.6)	6(10.3)
50만원 이상-100만원미만	142(8.9)	19(9.7)	1(1.4)	5(7.6)	13(22.4)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244(15.3)	46(23.5)	11(15.3)	20(30.3)	15(25.9)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87(11.8)	17(8.7)	3(4.2)	8(12.1)	6(10.3)
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	128(8.0)	23(11.7)	14(19.4)	3(4.5)	6(10.3)
2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72(4.5)	5(2.6)	3(4.2)	2(3.0)	0(0.0)
300만원 이상	184(11.6)	8(4.1)	2(2.8)	6(9.1)	0(0.0)
파악안됨	451(28.3)	65(33.2)	36(50.0)	17(25.8)	12(20.7)
계	1,591(100.0)	196(100.0)	72(100.0)	66(100.0)	58(100.0)

자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내부자료.

〈표 4-34〉 전국 및 전북의 재학대 가해자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유무(2016년)

수급권 여부	전국	전북	(중부)	(서부)	(동부)
수급권대상	482(30.3)	86(43.9)	27(37.5)	36(54.5)	23(39.7)
비수급권 대상	966(60.7)	69(35.2)	35(48.6)	3(4.5)	31(53.4)
파악안됨	143(9.0)	41(20.9)	10(13.9)	27(40.9)	4(6.9)
계	1,591(100.0)	196(100.0)	72(100.0)	66(100.0)	58(100.0)

자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내부자료.

⑦ 재학대 사례의 가해자 특성

- 재학대 사례에 대한 가해자 특성을 살펴보면,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36.2%(1,874건)로 가장 높았고,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18.8%(974건), 부부 및 가족갈등 9.7%(501건), 음주 및 약물·게임 중독 문제 8.7%(452건)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전북의 재학대 사례의 가해자가 아동을 학대한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전국과 동일하게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이 36.1%(218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이 20.2%(122건), 부부 및 가족 갈등이 11.4%(69건), 음주 및 약물·게임 중독 문제가 8.3%(50건)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4-35〉 전국 및 전북의 재학대 행위자의 특성(2016년)

행위자의 특성	전국	전북	(중부)	(서부)	(동부)
신체적 장애	74(1.4)	13(2.2)	4(1.9)	7(3.6)	2(1.0)
정신적 장애	35(0.7)	13(2.2)	5(2.4)	2(1.0)	6(3.0)
장애의심	64(1.2)	8(1.3)	0(0.0)	4(2.1)	4(2.0)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1,874(36.2)	218(36.1)	65(31.3)	79(40.5)	74(36.8)
중독문제	452(8.7)	50(8.3)	17(8.2)	14(7.2)	19(9.5)
질환문제	80(1.5)	0(0.0)	0(0.0)	0(0.0)	0(0.0)
성격 및 기질문제	360(7.0)	45(7.5)	20(9.6)	8(4.1)	17(8.5)
위생문제	99(1.9)	7(1.2)	6(2.9)	1(0.5)	0(0.0)
나태 및 무기력	69(1.3)	7(1.2)	5(2.4)	0(0.0)	2(1.0)
난독해	8(0.2)	0(0.0)	0(0.0)	0(0.0)	0(0.0)
스트레스 및 고립	974(18.8)	122(20.2)	45(21.6)	40(20.5)	37(18.4)
어릴적 학대경험	74(1.4)	5(0.8)	1(0.5)	1(0.5)	3(1.5)
폭력성	248(4.8)	18(3.0)	3(1.4)	5(2.6)	10(5.0)
전과력	41(0.8)	10(1.7)	5(2.4)	5(2.6)	0(0.0)
성문제	30(0.6)	1(0.2)	1(0.5)	0(0.0)	0(0.0)
원치 않은 아동	18(0.3)	1(0.2)	0(0.0)	1(0.5)	0(0.0)
부부 및 가족갈등	501(9.7)	69(11.4)	24(11.5)	22(11.3)	23(11.4)
종교문제	13(0.3)	3(0.5)	0(0.0)	3(1.5)	0(0.0)
특성없음	132(2.5)	7(1.2)	1(0.5)	3(1.5)	3(1.5)
파악안됨	31(0.6)	7(1.2)	6(2.9)	0(0.0)	1(0.5)
계	5,177(100.0)	604(100.0)	208(100.0)	195(100.0)	201(100.0)

자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내부자료. 중북응답.

⑧ 재학대 사례의 발생 시기

- 재학대 사례 발생 시기를 살펴보면, 사례판단 후 1~2년 사이가 24.6%(391건)로 가장 높았고, 6개월~11개월 17.2%(274건), 2~3년 15.8%(252건), 3~5개월 15.3%(243건) 순으로 높게 나타남. 한편, 처음 아동학대로 판단된 후 1년 이내 재학대 발생 사례가 48.8%로 이는 전년 대비 약 6.4%p 증가한 것으로서 재학대 발생 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있음을 보여줌
- 전북의 재학대 사례 발생 시기를 살펴보면, 전국과 동일하게 사례판단 이후 1~2년 사이가 25.5%(50건)로 가장 높았고, 2~3년 20.9%(41건), 6개월~11개월 17.3%(34건)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4-36〉 전국 및 전북의 재학대 발생시기(2016년)

	사례판단 후							계
	1개월 미만	1~2개월	3~5개월	6~11개월	1~2년	2~3년	3년 이상	
전국	90 (5.7)	168 (10.6)	243 (15.3)	274 (17.2)	391 (24.6)	252 (15.8)	173 (10.9)	1,591 (100.0)
전북	10 (5.1)	16 (8.2)	22 (11.2)	34 (17.3)	50 (25.5)	41 (20.9)	23 (11.7)	196 (100.0)
(중부)	0(0.0)	7(9.7)	5(6.9)	17(23.6)	9(12.5)	26(36.1)	8(11.1)	72(100.0)
(서부)	6(9.1)	7(10.6)	8(12.1)	11(16.7)	19(28.8)	7(10.6)	8(12.1)	66(100.0)
(동부)	4(6.9)	2(3.4)	9(15.5)	6(10.3)	22(37.9)	8(13.8)	7(12.1)	58(100.0)

자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내부자료.

⑨ 재학대 사례의 조치결과

- 재학대 피해아동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초기조치는 원가정보호가 61.2%(973건), 분리보호 38.8%(617건)로 나타남. 분리보호에서는 일시보호가 28.0%(445건)로 가장 높았고, 친족보호 6.7%(107건)로 나타남. 최종조치의 경우, 원가정보호 52.4%(834건), 분리보호 35.5%(565건) 순으로 나타남
- 전북의 재학대 피해아동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원가정보호가 초기조치 66.3%(130건), 최종조치 56.1%(110건)으로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일시보호가 초기조치 시 26.0%(51건), 최종조치 시 15.3%(30건)으로 나타남. 재학대 피해아동의 최종조치 결과를 살펴보면 원가정보호 > 일시보호 > 장기보호 > 가정 복귀 순으로 나타남

〈표 4-37〉 전국 및 전북의 재학대 피해아동 조치결과(2016년)

구분	원가정 보호	분리보호							가정 복귀	사망	계	
		친족 보호	연고자 보호	가정 위탁	일시 보호	장기 보호	병원 입원	소계				
전국	초기	973 (61.2)	107 (6.7)	12 (0.8)	2 (0.1)	445 (28.0)	45 (2.8)	6 (0.4)	617 (38.8)	0 (0.0)	1 (0.1)	1,591 (100.0)
	최종	834 (52.4)	125 (7.9)	11 (0.7)	8 (0.5)	219 (13.8)	195 (12.3)	7 (0.4)	565 (35.5)	191 (12.0)	1 (0.1)	1,591 (100.0)
전북	초기	130 (66.3)	10 (5.1)	0	0	51 (26.0)	5 (2.6)	0	66 (33.7)	0	0	196 (100.0)
	최종	110 (56.1)	7 (3.6)	0	0	30 (15.3)	29 (14.8)	0	66 (33.7)	20 (10.2)	0	196 (100.0)
중부	초기	45	2	0	0	24	1	0	27	0	0	72
	최종	43	0	0	0	15	11	0	26	3	0	72
서부	초기	38	7	0	0	18	3	0	28	0	0	66
	최종	31	7	0	0	6	8	0	21	14	0	66
동부	초기	47	1	0	0	9	1	0	11	0	0	58
	최종	36	0	0	0	9	10	0	19	3	0	58

자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내부자료.

- 재학대 행위자 조치결과를 보면, 초기조치의 경우 지속관찰 57.1%(909건), 고소·고발 38.3%(610건) 순으로 높았고, 최종조치 역시 지속관찰 53.6%(853건), 고소·고발 42.5%(676건) 순으로 높게 나타남. 지속관찰 결과는 초기조치에서, 고소·고발 결과는 최종조치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전북의 경우의 재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초기조치와 최종조치 모두 지속관찰(초기 74.5%, 최종 69.9%)이 가장 높게 나타남. 고소·고발은 초기와 최종조치 모두 30%이하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음

〈표 4-38〉 전국 및 전북의 재학대 행위자 조치결과(2016년)

구분	지속관찰	고소·고발	만나지 못함	아동과의 분리	계	
전국	초기	909(57.1)	610(38.3)	37(2.3)	35(2.2)	1,591(100.0)
	최종	853(53.6)	676(42.5)	30(1.9)	32(2.0)	1,591(100.0)
전북	초기	146(74.5)	45(22.9)	5(2.6)	0(0.0)	196(100.0)
	최종	137(69.9)	53(27.0)	6(3.1)	0(0.0)	196(100.0)
(중부)	초기	51(70.8)	18(25.0)	3(4.2)	0(0.0)	72(100.0)
	최종	48(66.7)	19(26.4)	5(6.9)	0(0.0)	72(100.0)
(서부)	초기	44(66.7)	20(30.3)	2(3.0)	0(0.0)	66(100.0)
	최종	45(68.2)	21(31.8)	0(0.0)	0(0.0)	66(100.0)
(동부)	초기	51(87.9)	7(12.1)	0(0.0)	0(0.0)	58(100.0)
	최종	44(75.9)	13(22.4)	1(1.7)	0(0.0)	58(100.0)

자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내부자료.

제 2절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진단

- 2절에서는 전라북도의 높은 아동학대 발생배경, 현행의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에 대한 실태 파악과 문제점 진단,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기능의 재조정 부분, 아동학대 관련 정책적 한계와 개선 방안, 필요한 지원 욕구 등을 파악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먼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1차 현장에서 책임지고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별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함. 다음으로 조기발견과 사후관리 단계에서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하는 신고의무자 직군의 종사자와 아동학대 서비스를 협조·지원해 줄 수 있는 유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함

가. 아동학대 예방·보호체계 진단: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대상

1) 조사개요

(1) 조사방법

- 아동학대 관련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할 수 있는 질문들을 반구조화 형식으로 구성하여 개별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함
- 심층면접 장소는 주로 각 기관의 상담실이나 회의실에서 이루어졌으며 면접 시간은 최소 2시간에서 최장 3시간 이상 소요되었음
- 면접 조사기간은 2017년 12월 20일부터 2018년 2월 10일까지 약 2달 동안 총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함

(2) 참여대상자

-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는 전북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본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대한 안내를 공지 한 뒤, 기관 내부의 회의를 통해 허락을 득한 기관을 중심으로 개별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수행절차 상 단계별 담당 업무(현장조사, 사례조사, 임상심리치료사, 홈케어플래너, 기관 총괄 담당자 등)를 책임지고 근무하는 종사자를 섭외하려 노력했고, 심층면접조사 실시 이전에 참여대상의 익명성과 면접조사 내용에 대한 완전 비밀보장을 언급함

(3) 조사내용

- 심층면접의 주요 내용은 크게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연령, 성별, 담당 업무, 근무경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일반적 현황과 현행 전라북도의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에 대한 실태(높은 발생원인, 학대유형의 추이, 심각정도의 추이, 주로 학대가 발생하는 지역 등) 및 문제점, 개선방향, 필요 지원 요구 등을 살펴봄

〈표 4-39〉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대상 심층면접 조사내용

영역	질문 내용
일반적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 성별, 담당업무, 근무경력
아동학대 발생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의 아동학대 경향·아동학대 유형·심각정도의 추이 등 ◦ 전북의 높은 아동학대의 발생원인 및 아동학대 발생관련 전북만의 지역적 특성 ◦ 아동학대 인식개선의 정도
아동학대 예방·보호체계 관련 실태 및 문제점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례법 이후 변화된 아동학대 관련 업무절차 상 문제점·힘든점 및 개선·해결 방안 ◦ 아동학대 사건조사·사례관리·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 ◦ 아동학대 예방·조기발견을 위한 방법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안 ◦ 지역사회 자원 연계 실태, 문제점 및 개선점 ◦ 전북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쉼터 개소수의 적정성 및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점 ◦ 종사자의 높은 이직률의 원인 및 종사자의 업무과중 정도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전라북도가 정책적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지원해야할 사항

(4) 분석방법

- 면접조사를 통해 얻어진 녹음내용은 먼저, 여러 번 반복 들으면서 전사한 뒤, 전사된 녹취록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면접조사 시 필사한 연구노트 자료를 동시에 활용하여 결과내용을 주제별로 범주화하였고, 의미 있는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도출함

2) 참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전북지역 3개 권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총 39명 중 10명이 심층 면접조사에 참여함. 각 권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총괄 관리하는 관장 3명, 현장조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3명, 아동학대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3명, 이외에 임상심리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1명이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함

〈표 4-40〉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일반적 현황

	성별	담당업무	근무 경력	비고
1	남	아동보호전문기관 총괄 관리	25년	
2	여	아동학대 사례관리, 가해자처분이행관리, 홈케어플래너 아동보호통합지원 서비스	7년	
3	여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아동학대 통계자료 정리 등	10년	
4	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총괄 관리	20년	
5	여	아동학대 사례관리, 조치관리 및 가해자 처분, 네트워크 관리 등	9년	
6	여	아동학대 현장조사, 조치결정, 학대혐의 판단 등	6년	
7	여	임상심리치료사	2년	
8	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총괄 관리	6년	
9	여	사례관리, 보호처분이행관리, 피해아동·가해자·가족대상 치료 사업 등	12년	
10	남	아동학대 현장조사, 학대혐의 판단, 조치결정 및 통계자료 정리	11년	

-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평균 근무경력은 10년으로 나타났으며, 관장과 임상심리치료사 이외 사례조사 담당자 및 현장

조사 담당자는 이전에 사례조사 담당자는 현장조사의 업무를 현장조사 담당자는 과거에 사례조사 업무를 수행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음

-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 현황을 살펴보면, 10명 중 2명을 제외한 모두가 여성이며, 6명의 각 권역별 현장 및 사례조사 담당자들 대부분은 30대 중반으로 평균 9년의 근무경력을 지니고 있음. 각 권역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관장의 연령대는 평균 45세로 평균 17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나타냄

3) 결과분석

- 전북지역의 아동학대 발생 현황과 높은 아동학대 발생 배경 및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고, 2014년 9월 특례법 시행 이후 변화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및 문제점 진단과 그에 따른 개선방향·필요 지원 욕구를 분석·정리 함

〈표 4-41〉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대상 면접내용 주요결과

구분	범 주
전북의 아동학대 발생현황	가족의 경제적 빈곤과 구조적 결손 시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 높음
	아동학대 가해자의 일반적인 특성
	市 지역은 신체·정서학대 유형이 군 지역은 방임 유형이 높음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부모대상 부모교육의 어려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미신고 시 처벌 강화 필요
신고·현장조사 및 조치결정 단계	신고·현장조사 시 경찰과의 공조체제로 인한 장·단점
	특례법 시행 이후 행정처리 및 서류 작업이 업무의 많은 비중을 차지함
	학대피해아동의 일시보호를 위한 시설(전용쉼터) 부족 및 장애아동 시설 부재
	일반 일시보호 및 양육시설 내 학대피해아동의 문제행동 해결을 위한 전문상담·임상 치료사 부재
	각 기관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기준 부재로 업무의 혼선과 어려움 발생

구분	범 주
사례 및 사후관리 단계	종결되지 않고 지속 누적되는 사례 건수 및 업무의 과부화
	거부적인 가해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시행의 어려움
	수강명령에 따른 가해자의 교육 치료에 대한 비예산
	임상심리치료사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과부화
	지리적 접근성 한계로 인한 사례관리와 임상심리치료의 어려움
아동학대 예방·보호체계 전반의 문제	전북도 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 및 인력 총원 필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전문적 역량 강화 필요
	유관기관 연계의 어려움과 컨트롤타워의 필요

(1) 전북의 아동학대 발생현황

-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를 통해 전북지역의 아동학대 경향, 아동학대 유형과 심각정도 및 전북도의 높은 아동학대 발생원인과 지역적 특성 등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함
- ① 가족의 경제적 빈곤과 구조적 결손 시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 높음
- 가장의 무직 및 실직,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열악한 경제적 수준으로 가족의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부부간의 불화가 잦고, 가족 내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고조되고 갈등이 악화되어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발생을 초래함
- 부부의 불화에 따른 이혼위기의 가정, 이혼 및 유기 등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 조손가족 등 가족의 구조적 결손은 부와 모의 결손이 유발되어 결국은 경제적 결핍을 초래하고, 부 혹은 모 혼자만의 양육부담을 증가시켜 자녀 양육과 훈육에 있어서 아동학대 발생을 초래하게 됨

아동학대 가정을 살펴보면, 대부분은 경제적 요인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무직, 실직 등 경제적으로 빈곤한 가정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가 발생된 가정을 보면 일반가정도 있지만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이혼가족, 다문화 가족 중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② 아동학대 가해자의 일반적인 특성

-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가해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들을 통해 살펴본 결과, 알코올 문제를 가지고 있고, 분노조절의 문제가 있으며, 타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하고, 어린 시절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의 경험을 지닌 사례가 많았음

아동학대 가해자는 대부분이 한 가정의 가장이자 아버지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음주 문제가 있고, 분노 조절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상담 내용을 보면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학대 받은 사례도 있구요.

아동학대 가해자는 가부장적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하며, 알코올 중독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일용직에 있고, 학력이 낮으며, 경제적으로 빈곤한 경우가 많죠, 부부불화도 많구요.

③ 市 지역은 신체·정서학대 유형이 군 지역은 방임유형이 높게 나타남

- 전라북도의 아동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중복지학대가 높은 비율을 보이며 시 지역이 군 지역보다는 신체 및 정서 학대 유형이 상대적으로 많고, 군 지역은 방임 유형(물리적 방임)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전라북도의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기본적으로 방임 유형을 깔고 있을 정도로 타 지역보다 방임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전라북도도 아동학대 유형 중 방임을 포함한 중복지대가 가장 많아요, 특히 전북 동부가 방임이 많은 것 같아요, 물리적 방임,, 시골이이면서 아동인구 수는 적으나, ,

전라북도 아동학대 유형을 보면, 제 경험상 시 지역에는 접수 당시 신체와 정서 학대가 많은 것 같고... 가장 많은 건 중복지대이구....

중복지대에는 방임을 기본적으로 한 신체적 학대가 많이 보여요

다른 지역보다도 방임이 전라북도에 많죠... 아무래도 못 살다보니 부모가 다 일해야 하는 경우라서....

(2)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 단계

-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나타나는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이 무엇인지 살펴봄

- ①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부모 대상 부모교육의 어려움
-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선제적인 방법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은 부모교육을 꼽음. 부모교육을 의무적 혹은 반 강제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및 명분 마련이 필요하고 부모교육을 보다 실효성 있게 실시하기 위해서 아동의 연령 등을 구분하고 단기가 아닌 중·장기적이면서 부모-자녀간의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훈련 또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함
- 그러나 아동학대 가해자 및 그 가정의 특성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으로 경제적으로 빈곤하면서 가해자가 실직, 무직, 혹은 일용직에 있는 경우가 많고, 가족구조상 한부모, 이혼위기가정, 다문화가정, 부부불화 등이 많이 나타남. 이상의 특성을 지닌 가해자가 생활하는 주거지가 통상적으로 지역적으로 나타나있으나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 실시는 쉽지 않음
- 아동학대 가능성 높은 고위험군의 가정 및 부모를 선별하고 의무적으로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부모교육을 실시해도... 실질적으로 아동학대를 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의 가정이나 부모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경제적 수준이 낮다보니 먹고 살기 바빠서 참석하기가 쉽지 않고...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에, 등안시 되고 있죠....

아동학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인데... 이를 위해서는 부모교육이 좋은데... 부모교육을 한다 하고 부모교육에 참석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하는 부모와는 거리가 멀고...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가정의 부모는 참석도 안하고, 관심도 없고, 참석하고 싶어도 일하는게 바빠서 힘들고... 어찌되었든 이런 고위험군 가정의 부모가 부모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의무성, 강제성을 떨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좋겠어요.

②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미신고 시 처벌 강화 필요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 위와 같은 법적인 내용이 신고의무자 직군을 대상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렸음에도 실질적으로 법의 내용이 실현되지 않고 있어 법에 대한 효력은 나타나지 않고 신고의무자 직군의 신고율은 여전히 낮음. 이에 신고의무자 직군의 종사자 대상으로 몇몇의 시범사례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미신고시에 대한 과태료 처벌을 엄격히 따져 부과한다면 신고의무자 직군의 종사자들의 아동학대 관련 인식개선이 높아질 것 임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는 신고의무자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들이 그 역할을 잘 못해요... 아동학대 임을 알고 있어도... 방관자세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미신고시 이에 대한 과태료 처벌을 엄중하게 몇몇 시범 케이스에 적용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아마도 신고율이 높아지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신고의무자 대상 예방교육도 중요한데.. 의무에 대한 행사를 잘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처벌을 제대로 한다면... 신고의무자 대상으로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꼬박꼬박 하게 끔하면 아무래도 조기발견이 더 높아질 것으로 봐요.

(3) 신고·현장조사 및 사례판정·조치결정 단계

- 2014년 특례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변화과정을 보여주는 신고·현장조사 및 사례판결·조치결정 등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이 무엇인지 살펴봄
- ① 신고·현장조사 시 경찰과의 공조체계에 인한 장·단점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와 경찰과의 공조체제로 인한 장점은 공격적인 가해자로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신변안전을 확보하거나 가해자의 강한 거부사에 대한 강압으로 현장조사가 훨씬 수월해진 점과 즉각적으로 현장에서 아동에 대한 응급 및 입시 조치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단점으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와 경찰과의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관점과 민감성의 차이로 아동학대 사건 처리과정과 사례판정에 있어서의 의견 불일치 등으로 학대사례 개입 및 업무 추진이 어려워짐. 또한 경찰이 신고접수를 받게 됨에 따라 신고내용이 부실한 경우도 많아 사건 내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한 시간과 노력이 배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음. 무엇보다 수사진행 상황과 내용에 대한 갈등 및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례법 이후 경찰이 현장조사에 동행함에 따라 가해자들이 겁을 먹기도 하고 저희끼리 현장에 나갈 때보다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가해자들에게 경찰이 전화 한번만 해줘도 저희에게는 힘이 되죠...

경찰들이 저희와 함께 현장조사에 나가면 아무래도 거부적이거나 공격적인 가해자를 대하기가 한결 수월해 지죠.... 문도 안 열어주는데... 경찰의 전화로 문도 열어 주고요...

한데.. 경찰과의 아동학대에 대한 시각과 차이로 우리가 볼때는 정말 아동학대인데.. 경찰은 그리 안보는 경우도 많죠.. 그러다 보면 일하는 것이 힘들어지죠.. 특히 수사과와의 수사진행 시 더 갈등이 생기죠..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 정도도 훨씬 떨어지고... 정말 극단적인 것 빼고는 학대로 안보니까요... 경찰은 아이를 데리고 부모에 대한 처벌의사가 있느냐 묻고 있어요... 아이가 처벌의사가 없다면.. 그냥 지나가는 거죠... 아이가 제대로 판단하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 ② 특별법 시행 이후 행정처리 및 서류 작업이 업무의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신고의 급증과 함께 현장조사가 그 만큼 증가하고 이에 따른 행정업무와 서류 작업이 상대적으로 급증함
- 현장조사 시 아동학대 관련하여 아동 이외 부모, 가해자, 가족, 폭력의 지속성, 외적인 환경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업무와 서류작업, 각종 행정업무 및 통계집계를 위한 전산 입력까지 특례법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들의 업무가 현저하게 증가함. 이로 인해 야근 및 휴일근무가 지속되고 있음
- 전라북도 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적어도 3개에서 최대 5개의 관할지역을 담당하고 있어서 신고접수 후 현장조사 시, 특히 동부와 서부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의 현장 조사 시에는 오고가며 조사까지 하루 꼬박 걸리는 힘든 작업이 되고 있음

특례법 이후 이전에도 현장조사가 많아 업무가 많았는데,, 특례법 이후 신고건수가 급증하면서 그에 따라 현장조사도 동시에 많아져 힘들어요,, 학대관련 조사도 힘들지만 그에 따른 행정처리나 서류 작업, 마지막에는 통계 전산 입력까지 해야 하니,, 다른 일들은 전혀 손을 못대고 있죠,,

그래도 아보전 인근 지역의 현장조사는 가까워서 그나마 다행인데,, 여기서 00에라도 가야할 경우에는 하루가 다 소요되요,, 하루 현장조사 1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출장 다녀와서 밤새 서류 및 전산 작업해야 하는 거구요,,

- ③ 학대피해아동의 일시보호를 위한 시설(전용쉼터) 부족 및 장애아동 시설 부재
- 현장조사 시 응급조치로 가해자와 학대피해아동을 긴급 분리하여 피해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일시보호 시설(전용쉼터)이 부족함. 전북도 내에는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전용쉼터는 총 3개소로 익산과 남원은 남아 전용, 전주는 여아전용으로 각 정원 7명씩 총 21명 정도이나 2016년 총 보호 인원은 351명으로 보고되고 있어 학대피해 아동을 응급 격리조치를 할 수 있는 일시보호(전용쉼터)가 매우 부족한 상황임
- 또한, 학대피해아동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나 영유아일 경우 일반 양육시설 및 보호시설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기 때문에 장애아동 및 영유아 전담 일시보호 및 양육시설이 요구되나 전라북도 내에는 전무한 실정. 이에 전국적으로 장애아동 및 영유아를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문의하는 사례도 종종 있음. 이에 응급적인 위기 개입을 위한 학대피해아동 대상 전문적인 일시보호시설이 전반적으로 미흡함

조치결정 단계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점이 일시보호시설이 정말 정말 부족하다는 거예요... 동부권에는 남아전용 쉼터가 1개 있으나 피해아동이 여아일 경우에는 어디에 보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것도 아동학대라는 것이 24시간 내 발생하다 보니 급할 때는 저희 기관에 아이를 데리고 있다가 날 밝으면 일시보호시설이 있는 곳을 알아봐서 보내죠... 전북 내에 일시보호시설이 꼭 좀 확대되었으면 좋겠어요... 더구나 장애아일 경우..전국적으로 알아봐야 할 상황이구요

응급으로 가해자와 아동을 분리해 놓고도 피해아동을 보낼 곳이 없다는 거죠.. 일시보호시설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포화상태이구요... 또 일시보호시설 개소 수를 증설해도 누가 맡아서 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도 문제구요..

- ④ 일반 일시보호 및 양육시설 내 학대피해아동의 문제행동 해결을 위한 전문 상담·임상치료사 부재
 - 전북도 내 학대피해아동을 전담하는 일시보호시설인 전용쉼터가 턱 없이 부족해서 많은 학대피해아동이 일반 아동양육시설(그룹홈, 등) 및 청소년쉼터에서 보호 받음
 - 그러나 학대피해아동은 일반 아동과 달리 학대 후유증과 더불어 심리적 불안 및 3~5배가량의 많은 문제행동(도벽, 욕설 등) 등을 보임. 이에 일반 양육아동시설에서는 학대피해아동 문제행동 등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의 부재로 학대피해아동을 받아들이기를 꺼려하여 7명의 정원이 꼭 찬 학대피해아동 전용쉼터로 다시 보내는 경우도 많음
 - 이에 학대피해아동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일시보호시설 확충과 함께 일시보호 기간 동안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임상치료사가 상주하여 심리·정서 장애가 있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가 필수적임. 더불어 일반양육시설 내에도 피해아동의 학대 후유증과 문제행동을 치료하고 대처할 수 있는 임상심리사가 필요함

일시보호시설(피해아동전용 쉼터)가 부족하다보니 결국에는 일반 양육시설에 부탁 부탁해서 피해아동을 보내나... 피해아동들의 문제행동들로 인해 다시 저희 기관으로 보내지는 경우가 있어요... 피해아동들은 일반적으로 일반아동들보다 문제행동이 유별나게 많은 경우가 있고, 학대 후유증 등으로 정신적이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경우도 많거든요...

한데, 이런 부분들을 일반 양육시설 기관에서는 다루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아동 이외에 다른 아동들을 위해서라도 피해아동을 저희에게 다시 보내거든요... 이럴 땐 정말 힘들어지죠,

피해아동들을 치료하고 처치할 수 있는 전문임상심리치료사 등이 일반 양육시설 기관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상주하여 아이들의 문제를 항시 살펴봐주면 더욱 더 좋구요...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에도 있음 좋겠구요...

⑤ 각 기관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기준 부재로 업무의 혼선과 어려움 발생

- 경찰과의 동행 조사 및 유관기관간의 연계·협력 시 명확한 지침과 기준의 부재로 기관간의 업무 혼선과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효율성 높은 아동학대 관련 업무 진행을 위해 각 기관들이 꼭 해야만 하는 역할과 범위 및 명확한 지침·기준을 매뉴얼로 제공하여 각 기관간의 업무 혼선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

같은 업무이지만 어느 시·군·구냐에 따라 그리고 담당자가 누군가에 따라 업무 방법 및 업무처리가 각기 다르고 복지서비스 및 사례 연계 시 각기 다르게 일을 처리하기에 저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혼선과 어려움이 발생하죠...

하나로 일관된 각 기관마다의 업무 매뉴얼에 대한 지침과 기준이 있다면 좋겠어요.

경찰, 법원, 드림스타트, 건강가정지원센터, 보건소 등 각 기관들이 연 초에 담당 업무를 공유하고 업무수행지침 등을 제작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면 좋겠어요...

(4) 사례 및 사후관리 단계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와 경찰과의 동행 조사로 신고·접수된 사건이 아동학대로 판정된 경우, 피해아동 및 가해자와 그 가정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추진함. 사례관리 및 사례 종결과 사후관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을 살펴봄

① 종결되지 않고 지속 누적되는 사례 건수 및 업무의 과부하

○ 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1인당 매년 신규 사례 건수가 3~40건 이상이 발생하고 종결되지 못하고 지속 모니터링 및 관리하는 사례건수까지 포함하면 1인당 1년에 약 100건 정도에 육박하는 많은 사례수를 담당하게 됨

○ 특례법 이후 신고건수의 증가와 함께 아동학대 사례의 급증으로 1인당 감당해야 하는 아동학대 사례 건수가 상대적으로 급증하였고, 이전 아동학대 사례는 보다 많은 시간과, 관심 및 노력을 기울여 종결을 해야 하는데 일의 우선순위 상 시급성과 응급성이 높은 신규 아동학대 사례 업무에 치여 사례 종결 처리가 힘든 상황. 무엇보다 관리했던 사례가 재발되는 경우 책임성의 문제가 제기 때문에 사례종결도 어려운 상황. 이에 아동학대 사례관리에 대한 집중성과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재신고가 높게 나타나는 악순환을 보이고 있음

특례법 이후 신고건수도 급증했지만, 아동학대 사례건수도 급증해서 저희들이 1인당 담당하는 1년 사례 건수가 약 100건에 달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업무가 마비되죠,, 저희도 사례를 종결짓고 싶어도,,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선적으로 새롭게 생긴 응급하고 시급한 학대사례부터 일을 처리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종결에 가까워진 사례 등을 다른 기관에서 혹은 종결된 사례만이라도 다른 기관에서 관리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일이 많으니,, 매년 야근해야하고,, 그러다 보니 힘들고 해서,, 젊은 친구들을 자신들의 삶이 없으니,, 그만 두죠,,

② 거부적인 가해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시행의 어려움

- 아동학대전문기관은 민간기관으로 강제성과 의무성을 띄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가 다른 사회복지기관의 서비스대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부적이고 비협조적이면서 비참여적이어서 상담, 교육, 프로그램 진행 시 많은 제약이 따름
- 가해자의 아동학대 관련 인식개선이 되지 않고서는 또다시 재학대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재학대 발생 방지를 위해서라도 가해자 대상 상담, 교육, 프로그램 등이 의무적 혹은 강제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

가해자를 대상으로 교육, 상담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어르고 달라고 협박하면서 교육과 상담 등을 시키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에 정말 거부적이고 참여율도 아주 낮죠,,

다른 사회복지기관의 서비스 대상자들을 그들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찾아와 신청하나 저희 기관의 서비스 대상자들을 저희가 찾아가 부탁하고 사정해서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이 정말 다르죠,,, 그래서 더 힘들어요,,

③ 수강명령에 따른 가해자의 교육·치료에 대한 예산 미편성

- 거부적인 가해자에게 수강명령이라도 부과하여 아동학대 관련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상담·치료를 추진하려고 해도 그에 따른 예산과 인력이 전혀 없음. 이에 상담인력은 어떻게 해서든 쪼개어 조각조각 시간을無理하게 만들어 수강명령 받는 가해자 대상 교육, 상담 등을 실시해도 상담·치료관련 사업에 관한 예산이 전혀 없다는 점이 보다 힘들
- 가해자 대상 상담·치료관련 예산도 부재하지만 학대 피해아동 등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상담치료에 대한 예산도 매우 부족함
- 이에 인력 및 예산 지원과 함께 교육·상담 치료 등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강제성 필요

수강명령이 부과된 가해자 대상 교육과 상담치료 관련 인력과 예산이 전혀 없는데도 저희는 힘들게 하고 있거든요... 법원에서 수강명령이 떨어졌어요, 예산 하나 지원 안 되구요...

재학대 방지를 위해서 그리고 수강명령으로 가해자는 해야만 하는데... 저희 쪽에서는 인력도 없고 사업관련 예산도 전혀 없어요... 뭐 피해학대 아동 대상 임상심리치료 비도 턱 없이 부족한데...

④ 임상심리치료사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과부화

- 전북도 내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임상심리치료사가 각 기관별로 1명씩 배치되어 있음. 이 임상심리치료사는 가해자 대상 심리치료에서부터 피해아동대상 심리치료와 임상심리치료관련 행정업무, 치료과정 슈퍼비전, 파트타임제 임상심리치료사들 연계, 관리 및 심리치료 사례에 대한 국가전산DB에 입력까지 상당히 많은 업무를 혼자서 담당하고 있음
- 아동보호전문기관 내에 있는 1명의 임상심리치료사는 업무 과부화로 피해아동과 가해자 대상 심리치료를 보다 집중적이고 전문적으로 개입·관리하고 싶어도 그러한 시간과 여건의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 게다가 심리치료비 예산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예산을 따기 위한 기타 공모사업의 사업계획서까지 작성해야만 하는 상황

아보전에서 임상심리치료사는 딱 1명만 배치되어 있는데... 사례관리를 위해서는 임상심리치료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업무가 엄청 많아요.. 각 사례들마다의 관심과 고민 등이 더 필요한데... 급한불만 꺼 놓은 상태라고 해야 하나... 심리치료에서부터 파트타임제 상담사들 연계와 관리, 슈퍼비전, 국가전산입력까지 제가 하루에 쓰는 서류작업만도 정말 상당해요...

더 힘든 것은 치료비관련 예산이 정말 많이 부족해요... 일을 하다보면 예산을 더 따기 위해서 공모사업들을 뒤지고 또 사업에 공모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까지 해야 하니... 심리치료를 집중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⑤ 지리적 접근성 한계로 인한 사례관리와 임상심리치료의 어려움

- 전북도 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최소 4곳에서부터 최대 5곳까지의 관할지역이 있음. 사례관리 및 임상심리치료를 진행 하려해도 지역이 넓어서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나 그에 상응한 치료 효과는 적음
-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소재지에서 지리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시군단위 지역에는 일시보호시설 및 심리치료관련 인프라가 거의 부재하여 사례관리 및 임상치료가 더 어려움. 임상심리치료 전문가와 인프라의 부재 및 보호체계의 미흡으로 학대피해 아동 및 학대행위자를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치료가 역부족

넓은 관할지역으로 인해 심리치료 진행이 어려워요,, 특히 여기에서 고창, 부안 등은 거리적으로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어서,, 임상심리치료사도 잘 가려하지 않고, 한번 가면 하루가 거의 소모되어 버리고,,

그래서 고창, 부안 등에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파견되는 것보다는 그 거점에서 파견되면 빠르고 효과도 좋고, 피해아동이나 가해자도 오고가는 것이 수월하구요,,

그래도 여기 시권에는 상담 및 치료가 가능한 기관이나 프리랜서(상담 및 치료사)들이 있어서 가능한데,, 저,, 군단위로 가면,, 아예 인프라 건, 심리치료사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유관기관을 통해서 진행하려 해도 잘 되지 않구요,,왜냐하면 가해자 및 피해아동이 거부해버리면 그것으로 종결이니깐요,,

⑥ 가족의 기능과 역량 강화 중심의 서비스 제공 확대 필요

- 아동학대의 80%가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되고 있음.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들은 일반상담 혹은 일시보호서비스로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에 머물러 있음. 혹여 심리치료 서비스가 제공되더라도 아동 개인 혹은 가해자 개인을 대상으로 각각이 다른 전문가에게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역기능적인 가족을 순기능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족강화 서비스는 거의 부재함. 피해아동과 가해자의 최종 사례관리의 목

적은 원가정 복귀 후 원활한 가족기능으로 가정 내에서 아동이 안전하게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이라 할 때, 가족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 가족의 기능과 역량 강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 인력 충원과 함께 보다 전문성을 지닌 인력이 필요함. 무엇보다 가족기능과 역량을 강화시키고 다각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인프라 또한 갖춰져야 하고 이 기관들과 연계·협조도 필요함

아동학대 사건의 최종 사례관리 목표는 원가정 복귀 후 원활한 가족기능을 하는 가정 내에서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저의 아보전에서 실시하는 서비스 제공의 범위가 개인중심, 일반적인 아주 기본적인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어요... 한데 실질적으로는 가족기능을 회복하고 가족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역부족인 것 같네요... 인력도, 예산도, 또 지역 내 인프라도 부족한 것 뿐이어서...

(5) 아동학대 예방·보호체계 전반의 문제

- 전라북도 아동학대의 예방 및 보호체계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지원 방안 등에 대해 살펴봄
- ① 전북도 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 및 인력 충원 필요
- 2016년 기준 전북도 내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 기관이 담당해야하는 아동 수는 103,496명으로 전국 평균 147,372명보다 낮지만 아동학대 발생건수가 1,446명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고, 재학대 비율은 가장 높으며 피학대아동발견율 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이래로 증설 계획조차 없음
- 전북도 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향후 전북도내의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

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과 더불어 인력 충원 확보가 매우 필요함

- 특례법 이후 어떠한 타 시도보다도 신고접수의 급증, 아동학대 사례 급증으로 과중한 업무가 보다 더 가중되어 업무가 마비상태에 있기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과 더불어 추가적인 인력 충원이 가장 시급한 때임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적정한 개소 수 확보와 각 기관마다의 적정한 인력확보가 이루어진다면 현행의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점(종사자들의 과중한 업무량 해소와 전문성 강화, 이직률 감소, 재학대신고 건수 감소, 사례 및 현장 조사에 보다 집중적·전문적 개입 가능 등)이 해결될 것으로 사료됨
- 그리고 전북도 내 접근성이 떨어지는 군 지역의 경우 현장조사, 일시보호, 상담 및 치료, 사례관리 등에서 어려움이 있으므로 학대피해아동 보호·치료를 위한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도 아동학대전문기관의 증설이 꼭 필요

전북도 내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면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부분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과 종사자 인원의 충원이 필요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성 및 종사자 인원이 충원된다면 지금보다는 더 안정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관련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데...이를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인력 확충이죠... 지금의 인력보다 한 2배 정도가 충원되면 좋겠어요... 더불어 아동보호전문기관도 더 증설되어 관할지역이 넓는데 이를 좀 더 줄일 수 있으면 좋겠구요.

- ②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업무 소진 예방 및 전문적 역량 강화 필요
-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이직률은 기타 사회복지전문기관 종사자의 이직률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그에 따른 이유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의 과중한 업무와 현장 조사 및 사례 관리 시 가해자로부터의 위협, 협박, 강도 높은 언어폭력, 많은 민원상담 및 일상적인 야근까지 종사자의 심리적·신체적 소진이 매우 심각한 상태로 이직률이 높음

-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아동학대 관련 업무에 대한 지속성이 중단되고 새로 온 종사자의 업무인계 및 적응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됨으로 인해 업무의 전문성은 저하됨. 또한 과중한 업무로 인해 쌓인 신체적·심리적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도 부재하며,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기회를 별도로 갖기도 힘든 상황

아보전 특히 군지역에 위치한 아보전의 종사자 이직률이 높고, 이로 인해 기관과 종사자 모두 업무에 있어서 전문성 제고에 문제가 생기죠... 한데... 이들에게만 뭐라 할 것이 아니라 이들 또한 굉장히 힘들거든요

협박에 위협에 이제까지 살면서 듣도 보도 못한 욕들을 매일 같이 들으면서 일한다는 것이 굉장한 소진이며,, 스트레스죠,, 거기에다 야근 업무를 매일같이 하니,, 정말 힘들죠,, 그래서 그만둔다고 할 때 잡는 것도 힘들죠, 정말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그만 두었죠,, 다들 더 좋은 곳에 가서 일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상황과 시간 상 일이 너무 많기에 어디에서 어떻게 스트레스 해소하기도 그렇고,,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없지만,, 있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가요...

③ 유관기관 연계의 어려움, 컨트롤타워의 필요성

- 아동학대 사례 시 가해자와의 피해아동을 시급하게 혹은 임시적으로 분리 조치 될 경우 학대피해전용 쉼터 혹은 일반 양육시설 등으로 학대피해아동을 연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음. 또한 학대피해아동과 가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도 유관기관과의 연계 과정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음
- 학대피해아동 및 가해자 대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연계 시 관리 감독해주고 종합적으로 상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함
- 또한 사례관리와 사후관리 시에도 피해아동과 가해자 대상 서비스 제공 시 서비스 중복과 반복, 혹은 사각지대 없이 실효성 있는 기관연계를 통해 통합적으로 관리 감독해주는 컨트롤타워 필요함

피해아동을 가해자와 분리해서 응급조치, 임시조치 시 저희가 일일이 기관들마다 전화해서 임시보호시설이나 양육시설을 알아보는 것이 힘들어요,, 누군가 혹은 어디에선가 어느 기관에 한가 몇 개 있고 어디에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연계해주고 그럼 좋겠어요,

피해아동이나 가해자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이미 다른 사회복지기관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이 밝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저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례 관리 계획을 다시 짜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피해아동이나 가해자 대상 제공 받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공유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럴 경우 그걸 고려 해서 저희도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나 싶어요,,

피해아동이나 가해자 대상 사례관리 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모든 정보와 감동 관리 통합해주는 뭔가가 있으면 저희가 일할 때 한결 수월하죠,, 저희가 민간 기관이라 이래저래 부탁하는 것에도 한계도 많구요,

나. 아동학대 예방·보호체계 진단: 아동학대 관련 유관기관 실무자 대상

1) 조사개요

(1) 조사방법

- 신고의무자 및 유관기관 실무자 대상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와 관련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반구조화 형식의 설문지를 구성 한 후 이를 바탕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함
- 의견조사 장소는 주로 실무자가 근무하는 기관의 상담실, 회의실 혹은 교실에서 이루어졌으며, 면접시간은 약 30분 ~ 2시간 정도 소요되었고 조사 기간은 2017년 12월 20일부터 2018년 2월 10일까지 약 2달 동안 총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함

(2) 조사대상자

- 조사대상자는 먼저 24개 직군의 신고의무자 중 학대피해아동 조기발견과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에서 아동과 직접적이고 밀접한 위치에 있는 직군(초중고 교사, 어린이집교사, 가정폭력상담소 등)을 중심으로 제외하였고, 다음으로 아동학대 업무(조기발견,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긴밀한 연계 및 협력이 필요한 유관기관들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제외함
- 조사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대한 안내를 먼저 공지 한 뒤, 조사 참여 협조를 부탁 하였고 책임연구자가 직접 찾아가 의견조사를 실시함. 조사 이전에 대상자의 익명성과 조사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을 언급하고 녹음을 실시함

(3) 조사내용 및 분석방법

- 조사내용으로 조사대상자의 연령, 성별, 주요업무 및 근무경력 등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한 후 아동학대 관련 직·간접적인 경험, 아동학대 예방교육 경험과 문제점,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과 기능 수행 시 문제점과 필요 지원 사항 등을 살펴봄. 또한 아동학대 관련 업무(조기발견,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등)로 긴밀한 연계·협력이 필요한 유관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업무 연계·협조 시 어려운 점과 문제점 및 개선안, 필요 지원 사항에 대해 살펴봄
- 자료 분석은 녹음내용을 반복하여 들으면서 전사한 뒤 전사된 녹취자료와 면접조사 시 필사한 연구노트 자료를 함께 활용하여 의미 있는 주제별로 내용을 범주화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함

〈표 4-42〉 아동학대 관련 유관기관 실무자 대상 면접조사 내용

영역	질문 내용
일반적 특성	◦ 연령, 성별, 주요 업무, 근무경력 등
신고의무자 역할 수행 시 문제점과 필요지원 사항	◦ 아동학대 관련 직·간접적인 경험 ◦ 아동학대 예방교육 경험과 문제점 ◦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 시의 문제점과 필요 지원 사항
아동학대 관련 업무 연계·협조 시 문제점과 필요지원 사항	◦ 아동학대 관련 업무 연계·협력 시 어려운 점과 문제점 ◦ 아동학대 관련 업무 연계·협력 시 개선되어야 될 부분과 필요한 지원 ◦ 아동학대 인식 개선의 정도와 아동학대 예방·조기발견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안 ◦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전라북도가 정책적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지원해야 할 사항

2) 참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총 13명이 면접조사에 참여함. 신고의무자 24개 직군 중 초등학교, 어린이집 교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가 참여하였고, 아동학대 업무를 협조해 주는 유관기관의 종사자로는 공무원, APO 경찰, 드림스타트와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가 참여함

〈표 4-43〉 아동학대 관련 유관기관 실무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소속	성별	근무 경력	비고
1	초등학교 교사	여	10년	
2	초등학교 교사	여	10년	
3	어린이집 교사	여	10년	
4	육아종합지원센터	여	15년	
5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 관리자	여	3년	
6	가정폭력상담소	여	20년	
7	아동정책 및 아동학대 예방관련 담당 공무원	남	4년	
8	아동관련 사업 담당 공무원	여	3년	
9	APO 경찰관	남	3년	
10	건강가정지원센터	여	9년	

3) 결과분석

- 먼저 신고의무자 직군 중 학대피해 아동을 직접적이면서 밀접하게 접할 수 있는 초등학교, 어린이집 교사, 육아종합지원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직·간접적인 경험,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효성과 문제점,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과 기능 수행 시 문제점, 필요한 지원 사항, 아동학대 예방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한 방안들에 대해 의견조사를 실시함
- 다음으로 아동 복지와 아동학대 관련 업무(조기발견,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를 협조·연계·지원하는 유관기관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전반적인 실태와 업무 협조·연계·지원 시 어려운 점과 개선되어야 할 점, 전복도가 정책적으로 우선 고려하고 지원해야 할 점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함

〈표 4-44〉 아동학대 관련 유관기관 실무자 대상 면접조사 주요결과

구분	범주
신고의무자 역할 시 문제점과 필요 지원 사항	신고의무자의 신변 및 직군의 익명성 보장 강화
	아동학대의 명확한 개념 : 학대와 훈육에 대한 범위의 모호함
	실효성과 체계가 없는 신고의무자의 교육에 대한 문제
아동학대 업무 연계·협조 시의 문제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유관기관간의 연계·협조에 있어 역할·범위에 대한 합의 부재
	기관 간의 정보공유 한계로 기관별 반복적인 업무 시행
	유관기관의 의무·강제성의 부재로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1) 신고의무자 관점에서 본 아동학대 예방·보호체계 문제

- 신고의무자 직군 중 아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직군 종사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아동학대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경험과 문제점,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살펴봄

① 신고의무자의 신변 및 직군의 익명성 보장 강화

- 신고의무자들이 신고하기 어려운 조직 내에서의 문제, 신고 시 본인의 신변에 대한 노출과 가해자로부터의 보복이나 반감에 대한 두려움, 불이익 등의 부담감으로 인해 아동학대 사례 혹은 의심사례가 있어도 주저하게 됨
- 또한 개개인의 신고라기보다는 기관 내 조직상의 정황 보고와 논의 이후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기에 어느 정도의 시간과 기관 조직상의 이해관계도 고려되어져 신고에 대한 제한이 발생함
- 신고했을 시 신변과 기관에 대한 익명성이 보장되고 법적으로 신변 보호가 명확하게 보장된다면 지금보다는 신고의 의지가 강해질 것으로 보임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경우라도 저 혼자 결정내리고 신고할 수는 없어요,, 원장에게 보고하고 정황들을 증거들이 명확해야 하지,, 그렇지 않는다면 신고해서 나중에 무슨 소리 들으려구요,, 아무래도 신중해지죠,, 되도록이면 아동학대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죠,

솔직히 신고는 해야 하는데,, 신고하면,, 당연히 학교에서 한거고 학교라면 바로 담임인 제가 지목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신고 자체가 그리 맘 편하지는 않아요,, 학교 차원에서도 이것저것 고려해야 할 것 들도 많구요,,

아무래도 돈을 받고 일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아이들보미로써 신고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② 아동학대의 명확한 개념 : 학대와 훈육에 대한 범위의 모호함

- 신고의무자로 신고하고 싶어도 아동학대의 개념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해 신고하는 것에 있어 제한적임. 즉 부모의 훈육으로 발생된 것과 정말 학대로 인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범위의 모호함으로 신고자체가 힘들어짐
- 신체적 학대는 그나마 눈에 보이고 증거가 있지만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은 구분하기가 힘들. 이에 아동학대 관련 구체적인 범위와 개념정의를 선제적으로 교육되어져야 함

저도 아이가 있어서 키우다 보면 정말 죽이고 싶을 때가 있고 그럴 때는 혼내죠,,
한데,, 이럴 경우 학생 부모도 자녀에 대해 훈육을 했을 뿐인데,, 학대라고 제가
신고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욕하고 올라와 한데 때렸는데,, 그게
명이 들은 것이라면,,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지,,

눈에 보이는 신체적 학대는 보이니까요,, 한데,, 방임이나 정서적 학대는 정말 감
별해 내기가 힘들고,, 좀 긴가 민가 하는 경우도 있고,, 확신이 안들죠,, 이럴 때
에는 아동학대라고 규정내릴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보고 판단
하겠는데,,

③ 실효성과 체계가 없는 신고의무자의 교육에 대한 문제

- 신고의무자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의무적이고 형식적 이어서 그 실효성에
문제가 많음. 1년에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진행하지만, 동영상
교육 및 이전과 동일한 내용의 형식적인 교육이 대부분임
- 신고의무자들도 직군에 맞춘 전문적이고, 실제적이며 사례중심의 교육을 원
하고 있으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의무자 교육을 요청하더라도 업무가
과다하여 제약적임. 실제로 신고의무자의 직군에 맞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 아동학대 처리과정 절차도 꼼꼼히 제시되어져
야 할 필요가 있음

동영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데,, 내용이 비슷비슷해서 시간 채우기식 의무교육에
그치죠, 아주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어요,, 동영상이라도 매년 바뀌었으면 좋겠
어요,

기관 내에서 신고의무자 교육을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려 해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의 직원이 못 올 경우도 있고, 50이상의 대규모 강의를 진행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실제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교육받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그
런 여건들이 마련되기에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2) 아동학대 업무를 연계·협조하는 유관기관 종사자 관점에서 본 예방·
보호체계 문제

○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연계·협조하는 유관기관의 종사자 관점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자 함

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유관기관간의 연계·협조에 있어 역할·범위에 대한 합의 부재

○ 아동학대 업무와 관련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유관기관이 바라보는 역할과 범위에 의견차이가 있음. 유관기관 종사자 입장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대부분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입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진행되는 서비스가 유관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서비스와 동일한 경우 유관기관에 그 서비스 제공을 의뢰하여 진행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컸음

○ 피해아동 및 가해자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유관기관으로 의뢰 할 경우, 각 기관간의 역할과 업무의 범위 등에 대한 합의 없이 진행되고 있어 책임성 논란과 연계·협조의 어려움 등이 표출됨. 무엇보다 예산 지원이 함께 지원된다면 지금보다 연계·협조가 수월할 것으로 보임

실상 저희의 서비스와 동일한 것은 업무가 많기 때문에 유관기관에서 가져가서 해주면 더 없이 좋죠... 한데, 다른 기관들은 저희 기관에서 아동학대 관련 모든 업무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아보전에서 의뢰할 경우 예산도 없이 의뢰되면 저희 기관도 고민이 생기죠.. 저희 인력과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책임성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무엇보다도 예산과 함께 동시에 지원해주면 생각은 해볼 만 하죠...

② 기관 간의 정보공유 한계로 기관별 반복적인 업무 시행

○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피해아동 및 가해자 등을 기관에서 기관으로 연계·

협조 시 개인정보 공유가 불가능하여 연계 받은 기관에서는 피해아동 및 가해자 등에 사례 개입과 계획을 위해 사정단계를 재 반복하는 경우가 발생. 즉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기관간의 제한적인 정보 공유로 업무의 반복과 중복 등의 인력과 시간 및 예산 낭비 등의 역효과가 발생함

개인정보보호법이 만들어 진 이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공유가 전혀 안되고 있어 서로 일하기가 쉽지 않죠... 사례 개입을 위해 최소한의 정보는 알려주거나 사례진행이 어디까지 어떤 자료를 가지고 했는지 등은 공유되어야 하는데,, 의뢰받은 기관으로써 재반복하는 업무들이 있죠... 시간도 예산도 아깝죠...

서비스 제공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선까지는 개인정보나 기관의 자료가 공유되어야 할텐데,...

③ 유관기관의 의무·강제성의 부재로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 경찰 혹은 법원의 공권력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치료·상담 등에 거부적이고 비협조적인 가해자가 그나마 참여하고 있으나 유관기관으로 서비스를 연계·협조 시에는 유관기관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기관의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서비스 받기를 거부하고 종결 시켜 버리는 상황이 발생함
- 가해자 등의 대상이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강제성이 필요함

저희 기관으로 의뢰가 와도... 거부적이고 서비스 종료를 강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서비스가 중단될 수밖에요... 저희가 민간기관으로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강요할 수가 없더라고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서비스를 받고자 찾아오는 대상자들만 대하다가 아보전의 의뢰로 들어오는 대상자들은,,, 본인 자신이 서비스 받기를 싫어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강요할 수만은 없지요...

제4절 소 결

- 본 절에서는 먼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매년 발간하는 전국아동학대현황 보고서 및 전북도 내의 3개 권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내부 통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한 전라북도의 아동학대 발생현황과 특성을 검토함
- 다음으로 아동학대 전반적인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대상 개별심층면접조사 및 조기발견과 사후관리 단계에서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하는 신고의무자와 아동학대 서비스를 협조·지원해 줄 수 있는 유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로 전북도의 높은 아동학대 발생배경, 현행의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아동학대 관련정책의 한계와 개선 방안 등을 파악함
- 이상으로 전북도 아동학대 전반적인 통계 현황과 면접조사에 대한 내용 요약과 더불어 검토결과 나타나는 몇몇 정책적 시사점과 사안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가. 전라북도 아동학대 발생 현황 및 특성

- 첫째, 전라북도 아동인구 수 대비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즉 2016년 기준 전북 아동학대는 1,466건으로 경기도, 서울 다음으로 많고, 신고접수는 2006건으로 경기도, 서울, 인천 다음으로 많았으며, 아동 천 명당 피해아동 발견율은 4.66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음. 재학대 비율 또한 13.6으로 전국 평균(8.5)보다 5.1p나 더 높음. 지역별로 살펴보면 익산시와 군산시의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상당히 높음 이에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요인과 지역적 특성 등을 지속적으로 찾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둘째, 전라북도는 정서적 학대와 방임을 기반으로 한 중복학대가 많고 지속 증가 추세에 있음. 전북 아동학대 유형은 중복학대가 가장 많고 다음

로 정서학대가 많음. 연도별 아동학대 유형 추이를 살펴보면 정서학대와 방임을 기반으로 한 중복학대,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이 급격히 상승하고 피해아동의 7-9세에서 방임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 등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사례 건수를 살펴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소재한 지역(전주, 익산, 남원)과 그 외 군산, 완주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함. 전주, 익산, 남원 및 군산, 완주에 비해 아동인구가 낮다는 측면을 고려한다고 해도 고창 같은 경우는 1년에 딱 2건의 신고접수가 있었고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전혀 없었음. 이에 수면 밑에 잠재되어 있는 아동학대 사례를 수면 위로 끌어 올릴 수 있는 예방 및 조기발견 체계, 인식개선 등을 위한 대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신고의무자 직군 종사자에 의한 신고율이 32.9%로 비신고의무자에 비해 여전히 저조하고, 신고접수 경로를 살펴보면 전국평균 및 타 시도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한 신고접수가 112번을 통한 신고접수가 월등히 많음. 이에 신고의무자 대상 및 일반시민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의무교육이 내실화되어질 방안과 신고가 저조한 원인 분석 및 신고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결정 시 약 75% 이상이 원가정보호였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도 약 63%가 지속관찰로 나타나 가해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이 어렵고 피해아동과 가해자 대상 사례관리에도 한계가 있으며, 무엇보다 재학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남. 이에 현행의 피해아동과 가해자에 대한 일반적인 소극적 조치에서 가해자는 임시조치, 교육과 상담을 의무화하고 강제성을 띠도록 하는 처벌적 조치 등의 보다 적극적으로 높은 수위의 조치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가해자는 많은 이유들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요인으로 양육태도 및 양육방법의 부족, 스트레스 및 고립 등으로 아동을 학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와 양육방법을 제시하

고 안내해줄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의 스트레스 등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방법이 부모교육 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음

나.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유관기관 종사자 대상 면접결과

- 첫째, 전북도 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추가적 증설 필요와 인력 충원 필요. 2016년 기준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당 담당해야하는 아동 수는 103,496명으로 전국 평균 147,372명보다 낮지만, 아동학대 발생건수 1,446명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고, 재학대 비율도 가장 높으며, 피학대아동발견율 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 이래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추가적인 증설은 계획조차 없었음. 무엇보다 전북도 3개 권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최소 4개에서 최대 5개 지역을 관할하기에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로 현장조사, 일시보호, 상담 및 치료, 사례관리 등에서 어려움이 많음. 이에 학대피해아동 보호·치료를 위한 접근성 개선과 향후 전북도내의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이 꼭 필요함
- 둘째, 피해아동을 위한 일시보호시설 부족 및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 부재. 현장조사 시 응급과 임시조치로 가해자와 학대피해아동을 분리하여 피해아동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일시보호시설(전용쉼터)이 부족함. 전북도 내에 학대피해아동 전용쉼터가 총 3개(전주, 익산, 남원) 있지만 정원이 7명씩 총 21명이나 2016년 총 보호 인원은 351명으로 학대피해 아동을 격리·보호할 수 있는 일시보호(전용쉼터)가 필요함. 더 나아가 피해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에는 전북 내에 서는 시설이 부재하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 셋째,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 및 강화 필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이직률은 기타 사회복지전문기관 종사자의 이직률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이유는 과중한 업무와 가해자로부터의 위협, 협박, 언어폭력 등과 같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심리적·신체적 소진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 어떤 사회복지

기관보다도 전문성을 요구하는 아동학대 종사자의 업무가 잦은 이직률로 지속성이 중단되고 업무인계 및 적응기간 등으로 업무의 전문성이 저하됨. 또한 과중한 업무로 인해 신체적·심리적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의 부재와 함께 전문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 기회도 갖기 힘든 상황임.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전문성을 확보·확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함

- 넷째, 신고의무자 대상 실효성 있는 교육 실시와 미신고 시 처벌 강화.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이 의무적·형식적 이어서 그 실효성에 문제가 많음. 신고의무자 직군에 맞춘 실제적·사례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고 아동학대 처리과정 절차도 꼼꼼히 제시되어야 함. 무엇보다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미신고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부과관련 처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을 보다 엄중하게 실시한다면 신고의무자의 신고의식과 아동학대 관련 인식개선이 높아질 것 임
- 마지막으로, 유관기관 연계 및 종합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필요. 즉 학대피해아동 분리 이후 보호시설 연계 과정에서 어려움 발생, 학대피해 아동과 가해자 대상 필요 서비스 제공 시 유관기관과의 연계 과정에서 어려움 발생. 이에 학대피해아동 및 가해자 대상 서비스 제공 시 유관기관과의 연계와 관리 감독해주고 종합적으로 상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함. 무엇보다 피해아동과 가해자 대상 사례관리와 사후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 시 서비스 중복과 반복, 사각지대 없는 실효성 있는 기관과 서비스 연계를 위해서도 컨트롤타워가 필요함

5

장

전북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방안

Jeonbuk Institute

제 1 절 주요결과 및 논의

제 2 절 아동학대 예방·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및 세부사업

제5장 전북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방안

- 본 연구는 전라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첫째, 아동학대 관련 법률·제도·정책동향 파악과 국내외 사례분석, 둘째, 전북지역 아동학대 관련 자원현황 및 지역사회·환경 분석, 셋째, 전북 아동학대 발생 현황 분석과 더불어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및 신고의무자·유관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함
- 이에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주요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나타난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전북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과 세부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제1절 주요결과 및 논의

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출처 전환 필요

- 가장 근본적으로 전라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아동학대 관련 사업 운영 예산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될 필요 있음. 아동학대 관련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지만 현재까지 예산재원은 보건복지부 예산(일반회계)이 아닌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무부)과 복권기금(기획재정부)에서 충당하고 있음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기타 많은 부처에서 나누어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관련 사업에 더 큰 확보가 어렵고, 범죄자들의 벌금 등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목표액에 도달하기도 쉽지 않음
- 이에 아동학대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구조가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로 전환되어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효율적인 재정 운용 및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며, 나아가 심각해지는 아동학대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임

나.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관련 물적·인적 인프라 부족

- 2016년 기준 전북도 내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 기관이 담당해야하는 아동 수는 103,496명으로 전국 평균 147,372명보다 낮음. 그렇지만, 아동학대 발생건수 1,446명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고, 재학대 비율은 가장 높으며, 피학대아동발견율 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 이래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추가적 증설 및 인력 충원은 거의 없었음
- 업무량 대비 부족한 인력으로 복잡하고 전문적이며 시급성을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다보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들은 야근이 잦고, 심리적·신체적 과도한 스트레스와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이직률이 높음. 이러한 이직률로 인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처리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지고 있음
- 무엇보다 전북도 3개 권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최소 4개에서 최대 5개 지역을 관할하기에 제한적인 지리적 접근성으로 현장조사, 일시보호, 상담 및 치료, 사례관리 등에 어려움이 많음. 게다가 심리치료시설의 부족으로 군 단위 지역의 피해아동과 가해자에 대한 서비스에 한계가 있고 접근성의 제한으로 관리하고 제공하기에도 어려움이 많음
- 또한 현장조사 시 응급과 임시조치로 가해자와 학대피해아동을 분리하여 피해아동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일시보호시설(전용쉼터)도 부족하고, 피해아동이 장애 아동일 경우에는 시설의 부재로 전국 단위에서 시설을 알아보는 상황임
- 마지막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뿐 만 아니라 기관 내 1명씩 배치되어 있는 임상심리치료사의 업무도 과중하여 피해아동 및 가해자에 대한 임상심리치료에 대해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개입이 힘든 상황임. 이에 전라북도의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운영하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추가적인 증설 및 인력 충원이 필수적임. 지리적 접근성, 아동인구의 수 및 아동학대 신고와 사례건수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수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전문 인력의 충원이 무엇보다 가장 시급함

다.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신속 대응의 취약

- 아동학대 신고 및 학대사례 건수를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소재한 지역(전주, 익산, 남원)과 그 외 군산, 완주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함. 특히 고창의 경우는 1년에 딱 2건의 신고접수가 있었고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전혀 없었음
- 신고의무자 직군의 신고율은 32.9%로 비신고의무자에 비해 여전히 저조하고, 신고접수 경로를 살펴보면 112번을 통한 신고접수 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한 신고접수가 전국평균 및 타 시도보다 월등히 많음
-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개념에 대한 부재로 아동학대 판정에 대한 관점이 기관마다 다르며, 아동학대 업무관련 협력 기관간의 역할 및 범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한계로 유관기관간의 아동학대 업무 처리 방법과 범위, 역할이 제 각각이어서 사건 수사과정에서 갈등과 불화가 발생하는 등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 처리에 많은 제약이 나타남
-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일시보호시설과 정원의 부족으로 가해자와의 응급적 분리 시 일반양육시설 등을 힘겹게 알아봐야 하는 상황. 이로 인해 적절한 개입의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결과 발생
-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재지 이외 접근성이 취약한 관할지역 내, 수면 아래에 잠재되어 있는 아동학대 사례를 수면 위로 끌어 올릴 수 있는 예방 및 조기발견 체계와 신고의무자 대상의 아동학대 관련 의무교육이 내실화되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더불어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일시보호시설과 정원 확대 및 아동학대 협력기관과의 아동학대 개념, 각 기관의 업무 역할과 범위 등을 협의 조정 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라. 다각적 측면에서의 경제적 지원 요구

- 먼저 전북도 내 아동보호전문기관 건물의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환경 개선을 요구함. 무엇보다 먼저 화장실의 개보수가 필요하였고 월 임대료 지출로 인해 아동학대 관련 사업 운영에 큰 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월 임대료에 대한 지원금 및 월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없앨 수 있도록 시·도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 내로 이사할 수 있기를 희망함
- 학대피해아동의 경우 신체적·심리적 손상에 대해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병원비, 검사비, 치료비 등의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 운영에 차질이 생기기에 이에 대한 지원도 필요로 함
- 무엇보다 권역별로 아동보호전문기관 내에 1명씩 배치되어 있는 임상심리치료사는 거의 부재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사업운영비로 인해 심리치료비 및 심리검사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과중한 업무 내에서도 공모사업의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야만 하는 상황임. 이에 도·시·군비로 학대피해아동 및 가해자와 그 가정에 대한 임상심리치료비에 대한 지원을 요구함
- 법원의 수강명령 조치로 가해자 대상 부모교육과 심리·상담 치료를 추진하는데 있어 법원은 물론 중앙과 시·도 어느 곳에서도 수강명령 가해자 대상으로 교육비·심리상담비 및 인력을 지원해주지 않고 있음. 이에 기타 많은 아동학대 사업을 운영하면서 수강명령 가해자 대상 교육과 심리치료까지 맡아 사업을 운영하기에는 많은 고충이 있음. 또한 향후 수강명령이라는 법적인 조치가 증가할 추세임을 감안할 때, 법원 혹은 시·도에서 부모교육과 상담·치료비에 대한 예산마련 및 인력에 대한 충원이 필요함

마.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서비스의 제약

- 학대피해아동 및 가해자 대상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리적 접근성 한계에 대한 제약들을 제거하고 개인 중심에서 가족의 기능과 역량 강화 중심의 서비스로 방향이 전환되어야 할 것임
- 전북도 내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권역별 담당 관할지역이 최소 3개에서 최대 5곳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소재지와 지리적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될 경우, 현장조사 및 학대사례 관리에는 시간과 에너지 소진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제약을 받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소재지에서 편도 최소 1시간에서 최대 3시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지 못한 곳으로의 현장조사 및 사례관리, 임상심리치료를 위해서는 하루라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다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수준의 업무 추진이 어려워짐. 무엇보다 사례관리 시, 인적·물적 인프라의 절대 부족으로 서비스 연계도 힘든 상황임
- 게다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조차 턱 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는 과중한 업무에 업무를 보태는 상황으로 종사자들의 이직률을 증가시키는 상황임. 이에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함
- 다음으로 아동학대 80%가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됨.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들은 일반상담 혹은 일시보호서비스로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에 머물러 있음. 심리치료 서비스가 제공되더라도 아동 개인 혹은 가해자 개인을 대상으로 각각이 다른 전문가에게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역기능적인 가족을 순기능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족강화 서비스는 부재한 실정임
- 피해아동과 가해자의 최종 사례관리의 목적은 원가정 복귀 후 원활한 가족 기능으로 가정 내에서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이라 할 때, 가족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 가족의 기능과 역량 강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 충원과 함께 보다 전문성을 지닌 인력이 필요함. 무엇보다 가족기능과 역량을 강화시키고 다각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인프라 또한 갖춰져야 하고 이 기관들 간의 연계·협조도 필요함

바. 아동학대 관련 기관간의 연계·협력체계 형성 및 조정 기능 필요

- 전라북도의 아동학대 예방, 아동학대 위험군 발굴, 조기발견과 함께 아동학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가해자의 아동학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이외 지역사회 내 다양한 유관기관간의 연계·협력체계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 특히 사례종결 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재학대 건수를 고려할 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노력만으로 사후관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임
- 또한, 전북 도내에 아동학대 발생 시 신고접수 후 초기조치 및 신속한 보호, 서비스 제공이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개입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함. 아동보호전문기관 뿐만 아니라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일시보호시설, 아동양육시설 및 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등 포함한 지역사회 유관기관간의 통합지원체계의 구축도 필요함
- 무엇보다 행정기관 특히 도와 시·군구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거점기능을 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필요함

사. 아동학대 인식개선 제고

-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며 재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과 부모교육이라는 주장이 강함. 현재까지 부모교육은 의무가 아니며 부모교육을 이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패널티를 받지 않기 때문에 부모교육 실시함에 있어 많은 제약이 따름
- 가해자 특성 중 아동학대 원인으로 가장 큰 요인이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 사회경제적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와 고립을 경험하는 경우, 부부갈등으로 나타남. 즉 실업, 무직 등 낮은 경제적 수준과 이혼 및 이혼위기, 재혼, 한부모, 부부불화 등 가족 구조상의 문제를 지닌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 높은 고위군 가정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부모교육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단순한 부모교육에서 더 나아가 상담과 심리치료 등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 또한, 일반인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캠페인, 광고, 아동학대 관련 홍보기간 등을 만들고 포럼과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제고하기 위한 기회들을 마련해야 함

제2절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및 세부사업

- 전북도 아동학대 발생 현황과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관련 연구결과 및 논의들을 토대로 전라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크게 4개 영역으로 구분함
- 전북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으로 첫째, 아동학대 조기발견 체계 강화, 둘째,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 셋째, 아동학대 서비스 전문성 강화, 넷째, 통합관리지원체계 구축으로 나누어 살펴봄. 정책방향을 근거로 총 13개의 세부 정책을 제시하면 <표 5-1>과 같음

<표 5-1> 전라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 방안 제시

정책방향	세부 사업	추진기관
아동학대 조기발견 체계 강화	부모교육 실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북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북육아종합지원센터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신고의무불이행 시 과태료 실제 부과	시·군·구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 증설 및 인력 충원	전라북도
	요보호 아동(학대피해아동 등)을 위한 일시보호 전담시설 전환 및 확충	전라북도
	권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내에 임상심리치료사 추가 배치	전라북도
아동학대 서비스 전문성 강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소진예방 프로그램	전라북도
	이동식 사례·사후관리 및 심리·상담치료 버스 도입	전라북도 전북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학대전담 경찰관 파견 배치 및 상주	전라북도, 전북경찰청
	상담·심리치료 및 수감명령 교육·상담 예산 보조지원	전라북도, 전주지방법원
통합관리지원 체계 구축	거점기능 전담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전라북도
	공공중심의 아동보호서비스 컨트롤타워 마련 및 기능 강화	전라북도
	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강화	전라북도, 지역유관기관

가. 아동학대 조기발견 체계 강화

-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발견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 제고가 우선적으로 필요함. 아동학대는 80% 이상이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에 부모 대상의 자녀양육 및 상담 관련 교육이 필요함
- 그 외 유아에서부터 일반 성인까지의 아동학대 예방교육·부모교육 및 24개 직군의 특성을 반영한 신고의무자 대상 아동학대 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실질될 필요가 있음. 또한 아동학대 관련 캠페인, 광고, 홍보기간 및 포럼, 세미나,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제고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기회들을 정례적으로 마련해야 함

1-1

부모교육 실시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아동학대 가해자 80% 이상이 부모이며 부모 중 父에 의한 경우가 46.7%, 母에 의한 경우가 33.4%로 父에 의한 아동학대가 13.3%정도 더 많음
- 부모가 아동을 학대하는 주요 원인은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과 기술 부족 이거나 부모로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즉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기술·정보를 제공해주고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교육 등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큼. 이에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는 부모 교육 기회가 확대될 필요 있음
- 한편, 부모교육이란 권유할 수는 있지만 강제성 및 의무적이지 않아서 대상 모집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음. 특히 부모교육 시 어머니 대상보다는 아버지 대상 혹은 부부를 대상으로 교육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어려움
- 이에 부모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혼인신고단계, 출산 전 고운맘 카드

발급단계, 태아 검진을 위한 산부인과 진료단계, 산후조리 단계, 출생신고와 양육수당·출산장려금 등의 가정양육수당 지급단계, 아이행복카드 발급 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첫 등원 시, 초등학교 입학 시, 중학교 입학 시 등 각 단계마다 부모교육 수료증을 제출하도록 하여 부모교육이 의무적·반강제적으로 필히 선행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함

- 그리고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이나 고위험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모색 필요함

□ 사업내용

- 목 적 : 부모교육 실시로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학대 관련 인식개선 제고
- 주요내용
 - 사업주체 : 전라북도
 - 사업주관 : 아동보호전문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센터 등 적정 전문기관에 위탁
 - 의무·강제성 부여할 수 있는 단계 : 혼인신고단계, 출산 전 고운맘카드 발급단계, 태아 검진을 위한 산부인과 진료단계, 출생신고 및 산후조리 단계, 양육수당·출산장려금 등의 가정양육수당 지급단계, 아이행복카드 발급 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첫 등원 시, 초등학교 입학 시, 중학교 입학 시 등 각 단계마다에 부모교육 수료증을 제출하도록 하는 체계 마련
 - 지원대상 : 아동학대 발생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부모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그 외 중고등학생, 대학생, 예비부모, 일반부모 등
 - 사업내용 :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실습과 체험이 있는 부모교육, 부모교육과 함께 심리치료도 겸할 수 있는 교육 등을 상시적으로 운영
 - 예산 : 50백만원(도비 100%)

□ 기대효과

-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학대 인식개선 제고
- 부모-자녀 관계 증진 및 부부관계 증진으로 원활한 가족의 기능 회복

1-2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전라북도 3개 권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재지(전주, 익산, 남원 및 군산과 완주) 중심으로 아동학대 신고 및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 외의 전북지역 아동학대 신고 및 발생 건수는 상대적으로 저조함
- 신고의무자 직군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해야 하지만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 중 신고의무자의 비율은 약 30% 정도로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비율이 높음
-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위치한 소재지 이외 지역의 일반시민, 부모, 아동, 학생 및 신고의무자 대상 아동학대 인식개선 제고를 위해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필요함

□ 사업내용

- 목적 :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 제고 및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조기 발굴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
 - 사업비 : 9백만원(9개 시군 당 1백만원)

- 지원대상 :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인 전주, 익산, 남원 및 군산, 완주를 제외한 9개 시군구의 유아, 초등 교육기관 아동, 일반시민 및 신고의무자
- 사업내용 :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권리 증진교육, 아동학대 예방 홍보
- 추진체계 :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신고의무자 직군 해당기관 등에서의 교육 신청 → 권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신청접수 → 선착순 접수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현장교육
- 사업주체 : 전북도 및 중부·서부·동부의 아동보호전문기관

□ 기대효과

- 아동학대 인식개선이 낮은 지역의 아동학대 인식개선 제고
-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통한 유아 및 아동의 아동학대 인지 및 자기보호 능력 향상
- 신고의무자 직군의 종사자 아동학대 인식 개선 및 신고의무 책임 증진

1-3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신고의무불이행 시 과태료 실제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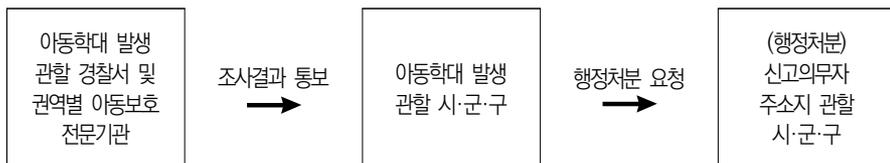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신고의무자 직군에 해당되는 사람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함(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 그러나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 중 신고의무자의 비율은 약 30%정도로 비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비율이 높음

- 이에 신고의무자 대상 아동학대 인식개선 제고를 위해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교육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신고의무자 직군별 해당 사례중심의 내실 있는 교육이 실시 후 신고 불이행 시에는 과태료 처벌 등 신고 의무 이행을 강화해야함

□ 사업내용

- 목적 :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인식개선과 신고의무 시행 강화
- 사업근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조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최고 500만원)
- 과태료 부과주체 : 신고의무자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과태료 부과대상
 - 신고의무자 직군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되었음에도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 특히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사실이 인정되어 형의 선고(유예포함) 또는 보호처분(감호위탁,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이 확정된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보다 철저히 시행
- 부과절차 : 의견청취, 이의제기, 과태료 부과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 및 행정절차 법령에 준용



○ 과태료 선정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기준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위반
법 제62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단, 불이행 행위가 13.1.24~14.9.28에 발생한 경우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단, 불이행 행위가 12.8.4~13.1.23에 발생한 경우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단, 불이행 행위가 12.8.3 이전에 발생한 경우	미부과	미부과	미부과

□ 기대효과

- 신고의무자 대상 아동학대 인식 제고
- 아동학대 사례 조기 발굴 체계 강화

나.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

- 현재 전북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3개소로 2006년 이래 동일하나 아동학대 신고 건수 및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상대적으로 급증하고 있음. 이에 원활한 아동학대 업무를 추진시키기 위해서는 3개 권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이외에 적어도 2개 이상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이 필요하고, 지금의 각 기관마다의 인력보다 2배 많은 인력 확충을 요구함
- 무엇보다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일시보호시설도 부족하여 다시 원가족으로 복귀하는 상황까지 발생함
- 이에 전북지역의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업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 증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내의 충분한 인력 확보와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일시보호전담시설이 필요함

2-1

전북도 내 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 증설 및 인력 총원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그 지역의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를 담당하는 중요한 핵심기관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관련 사업은 2005년 지방이양 사업으로 분류되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예산지원에 따라 격차가 심함.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소 수, 종사자 인원, 인건비와 사업비 지원,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등에서 지역의 차이가 심하게 나타남.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관심의 차이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운영과 예산 크기 및 서비스의 질을 좌우됨
- 「아동복지법(제45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

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 이상 두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2018년 2월) 전북에는 3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고, 2월 이후에는 군산시 자체 부담으로 군산에 분소가 마련될 예정이나 여전히 전북지역 내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소수와 종사자의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임
- 전북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개소수의 적정성에 대해 3개 권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에게 의견을 조사한 결과, 기관과 종사자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3개소를 포함한 전북지역의 적절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소 수는 5~6개로 나타남
- 2017년 말 현재 3개 권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종사자는 총 39명으로 한 기관당 약 10명~15명이 근무하고 있음. 2014년 특례법 이전에도 적은 인원으로 업무량을 감당하지 못해 사례관리의 버거움, 사례종결의 어려움, 사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과 그 외 기타 부모교육, 인식개선교육 등 과중한 업무로 종사자들의 소진과 이직이 잦았음
- 과중한 업무에 대한 종사자들의 소진과 이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 인원의 충원이 무엇보다 시급함

□ 전북지역 적정 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 증설(안)

- 목적 : 전라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
- 주요내용
 - 현 3개 권역 중심으로 취약한 지리적 접근성 고려하여 종사자 파견근무
 - 14개 시군의 지리적 여건과 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소재지 및 지역의 아동 인구 수 고려하여 기관 추가 증설, 5개소와 6개소
 - 시·군의 재정자립도, 지자체장의 시군정 운영, 아동정책(아동친화도시) 관심도 등 고려하여 분소 추진 요구

〈참고〉 전북 시군별 대비 아동 수(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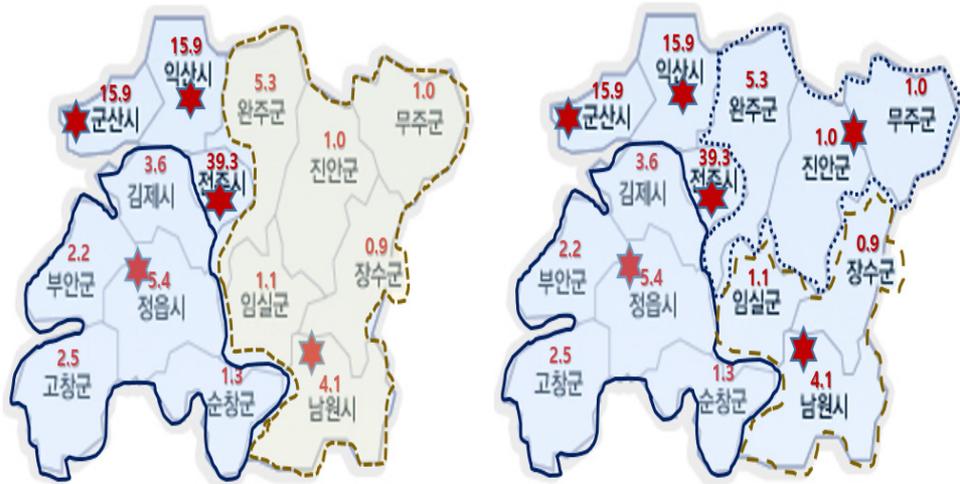
구 분	전체인구(명)	아동인구(명)			아동인구 비율(%)
		계	남아	여아	
전체	1,847,461	308,590(100.0)	159,418	149,172	16.7
전주	647,204	121,410 (39.3)	62,509	58,902	18.8
군산	273,893	49,183 (15.9)	25,336	23,847	18.0
익산	298,310	50,202 (16.3)	25,771	24,431	16.8
정읍	113,348	16,797 (5.4)	8,789	8,008	14.8
남원	83,284	12,653 (4.1)	6,564	6,089	15.2
김제	86,515	11,080 (3.6)	5,696	5,384	12.8
완주	95,163	16,346 (5.3)	8,494	7,853	17.2
진안	25,978	3,113 (1.0)	1,613	1,500	12.0
무주	24,775	3,084 (1.0)	1,601	1,484	12.4
장수	23,202	2,956 (0.9)	1,511	1,445	12.7
임실	29,999	3,466 (1.1)	1,862	1,604	11.6
순창	29,652	3,935 (1.3)	2,020	1,915	13.3
고창	60,087	7,602 (2.5)	4,099	3,503	12.7
부안	56,053	6,765 (2.2)	3,556	3,209	12.1

주 : 주민등록연앙인구 기준임.,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그림 5-1〉 3개 권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기반 파견근무(안)

- 현 전북도 내 3개 권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기반으로 신고건수와 아동 학대 발생건수가 많지 않으나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내에서 아동 학대가 발생한 경우 아동학대 신속대응이 어렵고 아동학대 문제가 깊어서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가 있음
 - 지역의 인프라 부재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한계 등으로 이동거리가 멀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관할지역 곧 군 단위의 지역에는 아동학대 인식이 낮다보니 신고건수가 떨어지고 잠재 대상이 많으나 신고건수만 대응하기에도 바쁜 상황
 - 이에 주요한 관리는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행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실무자 1-2인이 직접 파견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고려
 - 파견된 종사자가 근무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경찰서, 드림스타트 등 공공의 성격을 띤 기관에 임시공간을 마련하여 파견된 실무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운영비 등의 예산 비용을 보조해 줄 필요 있음



〈그림 5-2〉 증설(안) 아동보호전문기관 5개소

증설(안) 아동보호전문기관 6개소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추가적 증설 5개소 및 6개소 : 전북지역 14개 시·군의 지리적 여건과 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소재지 및 아동안원 등 고려
- 분소 설치 : 일반적으로 타 시도를 살펴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할지역이 4곳, 5곳으로 넓은 지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분소를 따로 두어 운영하고 있음
 - 전북지역 14개 시군의 재정자립도와 지자체장의 시·군정 운영 및 아동정책(아동친화도시) 관심도 등을 고려하여 시·군에서 관리하는 공간을 분소로 사용하여 임대료를 지원받고, 지자체의 특별운영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이 완주군, 전주시, 고창군으로 나타남
 - 완주군, 전주시, 고창군의 행정기관과 협의 통해 도와 시·군의 예산 매칭을 통해 향후 2개 정도의 분소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전북지역 3개 권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적정 인력 총원(안)

- 목적 : 전라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
- 주요내용

- 2017년 기준 전북지역 3개 권역별 관할 지역 및 종사자 인원

기관	소재지	관할구역	직원	신고건수	
				2015년	2016년
중부	전주	전주, 정읍, 진안, 완주	14명	514건	855건
서부	익산	익산, 군산, 김제, 부안, 고창	15명	555건	811건
동부	남원	남원, 순창, 임실, 장수, 무주	10명	259건	340건
소계			39명		

- 2016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바탕으로 전북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업무량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전북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담원 적정인원은 약 75명, 임상 심리치료 전문 인력의 경우 약 17명이 업무 수행에 필요했던 것으로 나타남
- 즉, 종사자는 44명,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은 14명이 부족한 실정

〈참고〉 전북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업무량

	상담원 수	상담원 총 업무량 (시간)	상담원 1인당 실질 가용시간	상담원 표준모형 적정 인원수	상근 임상심리치료 인력수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총 업무량(시간)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인당 실질 가용시간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표준모형 적정인원수
전북중부	12	35,491	1,961	18.1	1	11,663	1,852	6.3
전북서부	11	47,106	1,961	24.0	1	11,675	1,852	6.3
전북동부	8	65,553	1,961	33.4	1	8,422	1,852	4.5
소계	31	148,150		75.6	3	31,759		17.1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사업주체 : 전라북도 지방비 및 시비(전주/익산/남원) 매칭(5:5)
- 사업내용
 -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 충원을 위한 인건비 지원
 - 3개 권역별 종사자 2명씩 총 6명
- 예산 현황 : 1인당 연 30백만원 , 6명 총 120백만원
(1인 당 30백만원 : 사회복지기관 인건비표 참고)

□ 기대효과

- 전북도 내 보다 촘촘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관련 강화지원
- 아동학대 신고 및 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전문적 대응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아동학대가 신고 접수되면 현장조사 과정에서 응급과 임시조치로 가해자와 학대피해아동을 분리하여 재학대 위험 노출을 방지하고 피해아동 심리적 안전을 보호 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함. 그러나 학대피해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일시보호시설의 부족으로 가정으로 다시 돌려보내지는 경우도 많음
- 전북도 내에 학대피해아동 전용쉼터가 총 3개(전주: 여아, 익산: 남아, 남원: 남아) 있지만 정원이 7명씩 총 21명으로 2016년 총 보호 인원인 351명을 감당하기 벅찰 정도임. 따라서 학대피해 아동을 격리·보호할 수 있는 일시보호(전용쉼터)시설이 반드시 확충될 필요가 있음
- 더 나아가 피해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전북 내 시설 부재로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전국 단위로 수소문하여 시설을 알아보는 상황임
- 이에 학대 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 대상 전담 일시보호시설 증설 필요

□ 사업내용

- 목적 : 신속하게 학대피해아동가해자와 분리하여 심리적·신체적으로 전담하여 안전보호
- 주요내용
 - 운영기관 : 전북도와 유희공간이 있는 아동(양육)시설이 위치해 있는 市
 - 지원대상 : 학대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 총 10명
 - 주요기능
 -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제공

- 의복 등 생필품 등 피해아동 생활지원
 -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심리치료, 건강검진 및 병원치료 등
 - 교육 및 정서지원 : 학업지도, 문화체험 등
- 운영내용 : 학대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 발생 시 신속하게 일시보호 전담 시설로 보내져서 심리적·정신적 보호 및 안정적인 환경 제공, 일시보호하면서 피해아동과 요보호아동이 장기보호로 가야할지 원가정으로 복귀해야 할지에 대한 상황 판단 이후 퇴소
 - 설치기준 :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 안내에 따라 전용면적 100m² 이상의 주택형 기숙사(방 4개 이상)의 일부를 심리치료실로 활용
 - 예산운영 : 도비 50%, 시비 50%(종사자 보육교사 3명, 임상심리치료사 1명)

□ 기대효과

- 학대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에 대한 일시적으로 전문 보호함으로써 신체적·심리적 안정적 환경 제공
-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가해자 심리·정신적 문제와 피해아동의 심각한 학대후유증을 고려하여 아동 보호전문기관 내에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를 위한 임상심리치료 전문 인력을 1명씩 배치하고 있음
-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1명의 임상심리치료사는 가해자의 심리치료, 전체 사례에 대한 심리치료 진행과정 관리·감독 및 20여명의 시간제 심리치료사 관리와 함께 사례연계, 슈퍼비전, 행정업무, 국가전산통계자료 입력까지 수행하고 있음. 임상심리치료사는 대략 1개월 당 약 100건의 학대사례를 관할하고 감독 진행하기에 상황적으로 매우 역부족이고 열악함

□ 사업내용

- 목적 : 학대피해 아동과 가해자 및 취약가족 대상 심리·정신적 치료, 심리 상담, 가족치료, 심리검사 등을 통한 건강한 성인으로서의 성장과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가정으로서의 회복 도모
- 주요내용
 - 사업주체 : 전라북도 지방비 100%
 - 지원대상 : 학대피해아동 및 가해자와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대가족원
- 사업내용
 - 3개 권역별(중부, 서부, 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내에 임상심리치료사 1명씩 추가 배치
 - 임상심리치료사 인건비 지원 (3명)

○ 예산 현황 : 1인당 연 30백만원 , 3명 총 90백만원

(1인 당 30백만원 : 사회복지기관 인건비표 참고)

□ 기대효과

○ 학대 피해아동 및 가해자와 기능을 상실한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치료를 지원해 줌으로써 심리·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 환경 제공 및 원활한 가족의 기능 및 역할 강화 도모

□ 타 지자체 추진 현황 사례

○ 전라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에 임상심리상담원 1인씩 추가 배치

- 3개 권역별 임상심리상담원 인건비 지원

- 1인당 30백만원, 총 3인 90백만원 지원(지방비 100%)

- 2014년부터 시작된 사업

다. 아동학대 관련 서비스 전문성 강화

- 아동학대 업무를 보다 집중해서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의 운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들의 소진예방과 전문적인 역량강화가 필요함
- 다음으로 지리적 접근성의 제한으로 사례관리, 모니터링 및 심리치료 등을 보다 전문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예산의 부재 및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서비스 제공의 한계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이 필요함

3-1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소진예방 프로그램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2016년 기준 전국의 아동학대 발생건수 1,446명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고, 재학대 비율과 피학대아동발견을 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 이래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추가적 증설 및 인원 충원은 거의 없었음
- 과도한 업무량 대비 부족한 인력으로 복잡하고 전문적이며 시급성을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다보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들은 야근이 잦고 심리적·신체적 과도한 스트레스와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이직률이 높음.
- 무엇보다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로 현장조사, 사례관리, 상담 및 심리치료 등에 어려움이 많음.
- 무엇보다 가해자로부터 위협, 협박, 강도 높은 언어폭력 등으로 인한 많은 민원상담은 정신적 충격과 동시에 심리적 스트레스를 야기시키고 있음.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대상 정신적·신체적 소진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 실시로 이

직률을 낮추고 전문성을 강화시키며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사업내용

○ 목적 :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신체적·정신적 소진 예방과 스트레스 관리 및 전문성 강화

○ 주요내용

- 사업주체 : 전라북도
- 사업주관 : 적정 전문기관과 위탁(심리치료운영 센터 등)
- 대상 : 전북지역 3개 권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관장 및 피해 아동전용쉼터 종사자 포함)

○ 사업내용

- 힐링캠프 : 전북지역의 수련원·휴양림 등 시설 이용
- 종사자 처우개선비 : 정신적·신체적 위험수당 성격의 처우개선비 지원을 통해 종사자 전문성 광화 및 사기진작 유도
- 아동학대 관련 선진 국외기관 방문 지원 : 근무연수 3년, 5년 단위로 실시

○ 예산 현황

- 힐링캠프 : 3개소, 18백만원
- 종사자 처우개선비 : 정규직 종사자 1인당 10만원 선
(2017년 기준 정규직 종사자 39명 × 10만원 × 12개월 = 46,800천원)
- 선진 국외기관 방문 지원 : 1인당 200만원 지원

□ 기대효과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의 사기 진작 및 전문성 강화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 이직률 감소 및 효율적인 업무 처리

3-2

이동식 사례·사후관리 및 심리·상담치료 버스 도입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전북도 내 3개 권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소재한 위치에서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들, 즉 동부권에서는 장수, 무주, 서부권에서는 부안과 고창, 중부권에서는 정읍과 진안 지역에서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한 경우 취약한 지리적 접근성으로 인해 학대피해아동 및 가해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상담·심리 치료 진행에 어려움이 많음
- 또한, 이 지역의 인프라 부재로 사례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상담·심리치료 기관의 부재로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관리 및 상담치료가 어려움 상황
- 이에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직접 찾아가 학대피해아동 및 가해자 대상 사례·사후관리를 위한 서비스 연계에서부터 상담·임상심리 치료까지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함

□ 사업내용

- 목적 : 지리적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의 아동학대 사례인 경우 보다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사례관리 및 상담·심리치료 실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 주요내용

- 사업주체 : 전라북도 및 전북육아종합지원센터
- 사업주관 : 중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신규 종사자 2명 채용
- 지원대상 :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의 학대피해아동 및 가해자를 위한 사례·사후관리

○ 사업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여성가족부 지원 전북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식 놀이교실 버스' 사업과 협업을 통한 사례관리 및 상담·심리치료 실행
-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며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제공 및 피해아동과 가해자 대상 상담 및 심리치료 실시
- 아동학대 인식개선 제고 및 홍보

○ 예산 현황

- 종사자 1인당 연 30,000천원 , 2명 총 60,000천원
- 상담·심리치료비 및 차량 유류비 등 : 1,000천원

□ 기대효과

-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적절한 사례관리 및 상담·심리치료 지원
-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학대 가해자의 근본적 문제 해결과 재발방지 및 원활한 가족기능 회복을 위해 가해자가 교육, 상담 및 치료 등을 집중적으로 받아야 함
- 그러나 대부분의 가해자의 성향은 언어적 및 신체적 폭력성이 높고, 교육 및 상담·치료에 거부적이며, 비협조적이고, 형식적으로 임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가해자의 폭력성과 거부적·비협조적 성향은 상담원의 신변 및 심리적 안전에 위협적이며 상담원의 심리적 소진 및 교육과 상담·치료의 효과를 저하시키고 더 나아가 상담원의 전문성 저하 및 이직률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함
-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학대전담 경찰관이 배치되어 상주한다면 거부적이고 비협조적이며 폭력성이 강한 가해자를 제압할 수 있고, 이와 동시에 가해자 대상 교육 및 상담·치료에 보다 집중할 수 있으며 그 효과성도 높아질 것으로 사료됨
- 무엇보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신변 안전을 강화시킬 수 있고, 상담원의 심리적 소진 및 이직 예방 강화시킬 수 있음

□ 사업내용

- 목적 : 거부적·비협조적·폭력성 강한 가해자 대상 교육·상담·심리치료 시 보다 강압적이고 의무적으로 시행 가능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신변안전 보호 등
- 주요내용
 - 사업주체 : 전라북도, 전북지방경찰청

○ 지원내용

- 사업주관 : 3개 권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학대전담 경찰관 배치
- 거부적·비협조적인 학대 가해 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 상담·심리치료, 심리검사 시 공권력 행사 가능

□ 기대효과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신체적·심리적 신변안전 보호 및 이직 방지
- 거부적·비협조적·폭력성 강한 가해자에게 교육 및 상담·치료에 대한 강제성 부여 가능

3-4

상담·심리치료비 및 수강명령 교육·상담 예산 보조지원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아동학대 문제 원인을 제거하고 재발방지 및 가족기능 회복 등 보다 효과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피해아동에 대한 접근과 가해자에 대한 접근이 개별적으로 집중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 피해아동의 학대 후유증을 변화시키고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병원검사 및 상담·심리치료, 심리검사 등을 실시해야 함. 사업비로는 피해아동의 학대 후유증을 변화시키기에는 매우 부족하여 이에 별도 예산으로 피해아동의 상담·심리치료, 심리검사비 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함
- 거부성향이 강하고 비참여적인 가해자를 위해 법원에서는 상담 수강명령 등이 부여됨. 수강명령을 통해 부모교육과 아동학대 인식개선 및 심리상담 관리로 아동학대 재발과 훈육과 학대의 인식 등을 알려주고자 함

- 2017년 기준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수강명령으로 90사례의 가해자에 대한 교육과 프로그램, 상담·심리치료와 심리검사 등을 진행했음. 그러나 교육, 프로그램, 상담 및 심리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 지원은 전혀 없었음. 또한, 법원의 수강명령으로 인해 발생된 업무이나 법원에서의 예산과 인력 지원은 없고, 관할부서인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원리에 따라서도 인력과 예산 지원은 없었음
- 결국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이 부족한 인력에서 담당자를 정해서 없는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또 다른 공모사업의 계획을 작성한 상황임.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들의 업무는 보다 과중되어져 심적·신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
- 아동학대 관련 업무이기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해 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예산조차 편성되어 있지 못해 직원들에 부담과 업무에 대한 과중을 더욱 부추이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전북도 및 기초지자체 차원 혹은 도의회 차원에서의 특별예산 편성이 필요함

□ 사업내용

- 목적 : 피해아동 학대 후유증 제거 및 거부적 가해자 대상 교육·상담·심리치료 등
- 주요내용
 - 사업주체 : 전라북도, 각 시·군 및 법원
 - 사업주관 : 3개 권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 지원대상 : 학대피해 아동 및 수강명령 받은 가해자
- 지원내용
 - 피해아동의 학대 후유증위한 병원검사, 상담·심리치료, 심리검사비 등 지원
 - 수강명령 받은 가해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상담·심리치료, 심리검사비 등 지원, 가해자 대상 교육·프로그램·상담 및 심리치료 등은 아동보

호전문기관의 종사자가 법원으로 파견되어 실시

○ 예산현황

- 전북도 및 시군에서 피해아동 대상 상담·심리치료, 검사비 등 지원보조 약 9,000천원 지원
- 수강명령 가해자 대상 교육·프로그램·상담 및 심리치료비 등을 법원예산 보조 지원, 약 9,000천원

□ 기대효과

- 학대피해아동의 신체적·정신적·심리적 안정
- 수강명령 가해자의 아동학대 인식개선 제고

라. 통합관리지원체계 구축

- 아동학대특례법 이후 아동학대 신고건수와 학대피해아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를 촘촘하게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임. 지역사회의 아동복지기관, 아동시설, 사회복지 단체, 민간단체간의 연계·협조를 강화하여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아동보호서비스의 제공이 요청됨
-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사회 아동학대 관련 유관기관들 간의 연계·협조체계 구축 및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 감독조정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아동학대의 예방과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4-1

거점기능 전담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전북지역 내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가 각기 행정기관, 특히 도와 소통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서로간의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됨.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중 도와 및 기타 행정기관과 소통하며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모두 전담하는 거점기관이 운영될 필요가 있음
- 도와 및 여타 시·군의 행정기관과 3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전북도 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와 관련한 다차원적인 현안과 중앙·지방의 동향 발생 시 그에 대한 대응을 즉각적인 실행할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임
- 거점기능을 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은 행정에서도 아동학대 관련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이고, 필요로 한 자원현황 및 지원을 보다 수월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거점기능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선정되면 그 역할을 전담할 수 있는 담당자가 필요함. 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 충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거점기능을 전담하는 인원까지 마련하기에는 역부족임

□ 사업내용

- 목적 : 3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과 道 및 기타 시군의 행정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전북지역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
- 운영내용
 - 사업주체 : 전라북도
 - 거점기능 역할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 1명 배치
- 거점 전담 기관의 주요역할
 - 道 및 기타 시군의 행정기관과의 원활하고 밀접한 소통 창구 역할
 - 행정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 정리 및 취합 전달
 - 전북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업 지원, 지도·감독·관리 기능
 -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총괄하여 필요한 예방교육 매뉴얼, 자료집 작성,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등
 - 아동학대와 관련된 현안문제에 대한 즉각적이 대응을 위한 간담회 마련, 도의 이슈나 프로그램 진행. 지역사회와의 협업 필요 시 지원
 - 아동학대 관련 세미나·포럼 실무진행 및 종사자 등의 워크샵 개최 등
- 예산 현황 : 1명 / 연 30백만원

□ 기대효과

- 즉각적이고 효율적이며 집중적으로 아동보호 예방 및 보호체계 관리
- 도 행정과의 연계·협조 강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아동학대 관련 사업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 여러 부처에서 시행하고 예산 또한 지원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도 및 시·군의 아동행복과/여성청소년과 등의 부서에서 행정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교육청, 지방경찰서, 어린이집, 법원 등에서 아동학대 관련 사업들을 각기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각각이 분담하고 있는 아동학대 관련 사업 대한 연계와 협조에 있어서 통합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의 부재로 학대피해아동 및 요보호 아동에 대한 서비스 지원이 중복·누락 및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이에 전북지역에서 발생하는 학대피해 아동 및 요보호 아동 등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전북도 이외 14개 시·군 지역을 아우르는 네트워크와 인프라 발굴 및 연계·협력·지원해주는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공중심의 아동(복지) 정책 전담인력이 필요함
- 응급 및 임시로 가해 부모와 분리하는 학대 피해아동을 일시보호시설에 신속하게 입소시키고 적극적이고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인프라 부재와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가 있는 지역의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여러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로 역할분담 및 공유로 효율적인 예산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사업내용

- 목적 : 공공중심의 전북지역 요보호아동을 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지원

○ 운영내용

- 사업주체 : 전라북도
- 컨트롤타워 기능을 전담할 수 있는 아동복지전담 전문가 인력(1명) 배치 (계약직, 아동(복지)관련 전공 석사학위 이상)

○ 컨트롤타워의 주요역할

- 통합사례회의 주관, 지역의 유관기관들과 네트워크 지속적·주기적 관리, 지역 내 자원 발굴하여 적재적소에 분류·공급
- 아동학대에 대처하기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청, 검찰청, 법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동업무수행지침 제작,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를 위한 유관기관별 역할 분담 명시 및 사례 단계별 역할을 상세히 규정, 이로 인해 아동학대에 대한 일관된 인식 공유로 아동학대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 강화
- 전북도내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쉼터 등의 정원 및 현원 DB관리
- 지역 사회 내 인적·물적 자원 발굴 및 연계·통합·관리망 구축
-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연구사업(실태조사) 총괄
- 기관 종사자 역량 교육 실시(직무연수, 지도자 양성교육 등)
- 전북도 시·군의 아동학대 관련 유관기관들 사업 지도·감독 및 지원
- 예방 및 사후 서비스 강화(서비스의 유기적 결합 및 조정)
- 특히 학교, 행정, 복지서비스 기관 간의 연계 강화

○ 예산 현황 : 1명 / 연 30백만원

□ 기대효과

- 아동학대 관련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 강화 및 예방과 보호체계 구축
-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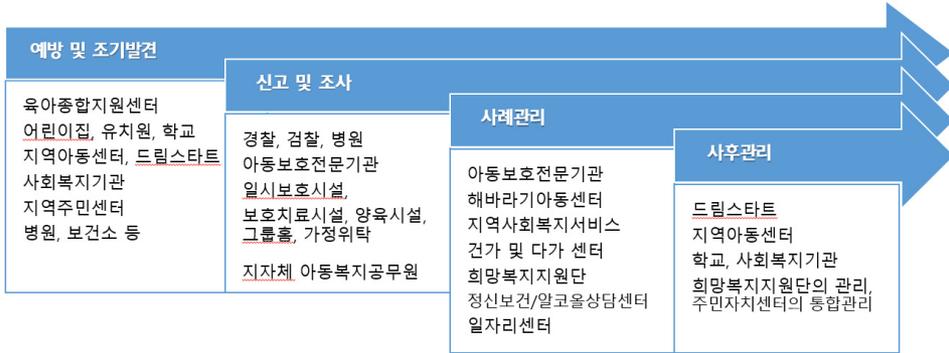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아동학대 가해자 및 피해아동에 대해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자원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이 마련되어야 하고 구축된 지역자원 연계·협력체계가 보다 강화되어야 함
- 즉 아동학대 예방, 조기발견, 신고 및 현장조사, 사례관리, 사후관리 등 각 단계마다의 필요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자원 연계와 더불어 학대사태에 대한 신속대응 및 재발방지 등을 위한 협력체계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까지 협의되어 시행되어야 함
- 특히 전북지역은 아동학대 중 방임이 상대적으로 높고, 군 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동학대 방임을 막을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협력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함. 또한 지역사회 자원(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지역주민센터 등) 연계를 통한 사례 및 사후관리 단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강화도 필요함
- 한편, 전북도는 이러한 연계 및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보다 실효성과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보다 강력한 권한을 갖기 위한 방안 및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모색도 필요함

□ 사업내용

- 목적 : 아동학대 예방부터 대응까지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함
- 운영내용
 - 사업주체 : 전라북도
- 주요역할
 - 14개 시군의 지역사회 자원 리스트 업,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회의 및 협의, 업무 조정, 업무지원 등

○ 예산 현황 : 연 3백만원



〈그림 5-3〉 아동학대 단계에 따라 연계·협력이 필요한 유관기관



〈그림 5-4〉 지역자원 연계·협력체계 구축

□ 기대효과

- 분절 및 파편화된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 공급자 중심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아동학대 통합관리 대응체계 마련

참고문헌

참고문헌

- 강은영, 김희균(2015). 아동학대의 실태와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고보혜(2014). 아동이 안전한 광주지역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학대피해아동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광주여성재단.
- 김광혁, 김정석(2012). 가족빈곤 및 지역사회환경과 아동학대, 그리고 아동발달.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총, 28(1), 45-64
- 김미숙, 배화옥, 정익중, 조성호, 박명숙, 김지민(2016). 아동학대 피해아동 지원 체계 구축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선숙, 유민상(2012). OECD 국가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아동학대 발생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아동과 권리, 16(4), 591-617.
- 민소담(2015). 강원도 아동학대 중단을 위한 전략과제 개발 : 가족 내 발생을 중심으로.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 박명숙(2002). 아동학대 유발요인으로서 장애아동부모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1. 311-327.
- 배상균(2015). 일본의 아동학대방지 대응에 관한 검토 - 일본 후생노동성의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28(4): 59-96.
- 배화옥(2015). 아동학대 발생추이에 미치는 부부폭력의 영향에 대한 연구. 아동과 권리, 19(2), 139-162.
- 보건복지부(2016). 전국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 보고서.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 보건복지부·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2011). 아동학대 실태 조사.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엄미선, 전동일(2006).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양육부담과 사회적지지. 사회복지 리뷰. 11. 75-108.
- 오미희(2015). 한국과 일본의 아동학대 예방관련 법제도에 관한 연구, 「일어일문학」, 68: 359-383.
- 오승환(2001). 아동 학대와 아동의 생태학적 환경과의 관계. 아동과 권리, 5(2), 47-60.
- 오승환(2003). 빈곤 지역 거주 아동의 학대에 대한 생태체계적 영향요인. 아동과 권리, 7(3),

1-18.

- 이봉주, 김선숙, 안재진, 유조안, 유민상, 최창용, 이주연, 김윤지, 박호준(2016). 한국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 세이브더칠드런,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이재연, 한지숙(2003). 아동과 부모, 가족환경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실태 연구. 아동학회지. 24(2). 63-78.
- 이주연(2016). 미국의 학대아동보호를 위한 차등적 대응체계와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현기(2005). 아동학대 유형별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23, 77-108.
- 임동호(2008). 요보호아동의 가정위탁보호 활성화 방안 고찰. 아동복지연구, 6(2), 99-119.
- 전경숙(2014). 경기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체계 구축 방안 : 특례법 시행에 따른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전라북도(2016). 「2016 전라북도 사회조사」. 전북연구원.
- 전민경(2017).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정선영(2016). 아동학대의심사례 발생율과 지역사회 특성의 관계. 사회과학연구. 49(4). 1-19.
- 정용석(201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의의 및 향후과제. 피해자학연구. 22(1), 189-214.
- 조경욱, 정유리(2017). 2017 전북 성인지 통계. 전북연구원.
- 조범근, 김준영, 배귀희, 문명재(2017). 아동학대 보호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지방정부 연구, 20(4), 269-298.
- 조주은(2018).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 한미현(2006). 아동보호 서비스의 실제: 아동학대의 사정 및 사례 판정. 파주: 집문당.

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04). California's title IV-B child and family services plan. Retrieved from <http://www.cdss.ca.gov/cdssweb/PG73.htm>.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3). Preventing child abuse and neglect.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hildren's Bureau.

Fuller, T. L., Paceley, M. S., and Schreiber, J. C. (2015). Differential Response family assessments: Listening to what parents say about service helpfulness. Child abuse and neglect, 39, p.717.

Sedlak, J., Mettenburg, J., Basena, M., Petta, I., McPherson, K., Greene, A. & Li, S. (2010). Fourth National Incidence Study of Child Abuse and Neglect (NIS-4): Report to Congress. Washington, D.C.: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Thomas, D., Leicht, C., Hughes, C., Madigan, A., & Dowell, K. (2004). Emerging practices: In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neglect.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혼인·이혼통계」.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보건복지부, 「2016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보건복지부드림스타트 홈페이지(<https://www.dreamstart.go.kr/>)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familynet.or.kr/index.jsp>)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홈페이지

(<https://www.liveinkorea.kr/portal/KOR/centerIntro/centerList.do>)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홈페이지(<http://child.seoul.go.kr/>)

부산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bnc1391.or.kr>).

정책연구 2018-02

전북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 방안

발행인 | 김 선 기

발행일 | 2018년 4월 30일

발행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221-9 9333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